

2019년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춘계학술회의

일시 : 2019년 5월 25일(토) 14:00-17:30
장소 :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연구동 104호



주최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협찬 :  서울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모시는 말씀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회원 선생님들께

회원 선생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1월 연례학술회의로 시작된 우리 학회의 학술활동이 이제 5월의 상춘에 이르는 시기에 접어들어 더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번 춘계 정기학술회의는 2019년도 첫 연구 발표의 자리입니다.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실 네 분의 연구자를 모셨습니다.

아래의 일정을 참조하시어 주말 오후이지만, 여름을 눈앞에 두고 왕성한 성장을 하듯이 우리 학회와 연구자들의 왕성한 학술활동을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5월 일

회장 박병석

프로그램

- 일 시 : 2019년 5월 25일(토) 14:00-17:40
- 장 소 :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연구동 B104호
- 주 최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협 찬 : 서울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 개 회 사 14:00-14:10
회장 박병석(서울사이버대)

- 제 1 세션: 14:10-15:40

- 사 회: 이택선(한국외대)

- 제 1 발 표:

이경미(서울대) < 각축장으로서의 신간회: 생존운동과 비(非)결정이라는 자기결정 >

이재호(진주교대) < ‘인권’의 정치를 위한 공화주의 >

- 토 론: 김인수(전국대) / 이병택(동북아역사재단)

Coffee Break(15:40-16:00)

- 제 2 세션: 16:00-17:30

- 사 회: 남광규(고려대)

- 제 2 발 표:

정영훈(한중연) < 정치와 사상사에 대한 비교 공공성 접근 >

박병석(서울사이버대) < 국호(國號) 및 국가승계에 대한 한·중 비교 분석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가·정부 논쟁 해명 >

- 토 론: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전세영(부산교육대)

- 연구윤리 교육: 17:30-17:40

- 진 행: 편집위원장

- 폐 회 17:40

목 차

각축장으로서의 신간회: 생존운동과 비(非)결정이라는 자기결정·····
·····이경미 01

‘인권’의 정치를 위한 공화주의 ·····이재호 23

정치와 사상사에 대한 비교 공공성 접근 ·····정영훈 49

국호(國號) 및 국가승계에 대한 한·중 비교분석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
가·정부 논쟁 해명 ·····박병석 65

각축장으로서의 신간회 : 생존운동과 비(非)결정이라는 자기결정

이경미(李慶美)
서울대학교

【목차】

1. 머리말
2. 합법적 정치공간의 형성
 - (1) 합법적 운동을 둘러싼 합의
 - (2) 합법적 운동의 정치화
 - (3) 통치층의 정치화와 자치운동
 - (4) 사회주의층의 정치화와 정우회선언
3. 각축장으로서의 신간회
 - (1) 합법성의 안과 밖
 - (2) 생존운동이라는 제안
 - (3) 비(非)결정이라는 자기결정
4. 맺으며

1. 머리말

제국식민지기 정치사상사 연구를 생각할 때 ‘민족주의’와의 관계를 빼놓을 수는 없다. 그것은 ‘민족주의 사상사’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제국식민지기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분야에서 ‘민족주의의 극복’이 과제로 인식되었으며 그에 따른 성과도 제법 축적되었다. 그렇다면 정치사상사 연구에서도 그러한 변화는 진행되었을까. 본고의 문제의식은 그렇지 않다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제국의 지배에 신음하여 그로부터 탈출을 꿈꾸는 것 자체는 식민지 곳곳에서 늘 꿈틀거렸던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을 인식하는 것과 그러한 현실만을 인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제 정치사상사 연구에 대해서도 민족주의적 관점의 극복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영역에 대한 해체와 재구성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구영역의 하나로 ‘신간회’를 들 수 있다. 신간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협동전선’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¹⁾ 그것은 신간회가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 간의 협동

1) 대표적 연구로金森襄作, 「論争を通じて見た新幹会-新幹会をめぐる民族主義と階級主義の対立」, 『朝鮮学報』 93集(1979); 水野直樹, 「新幹会東京支会の活動について」, 『朝鮮史叢』 1号(1979); 朴慶植, 「朝鮮民族解放運動と民族統一戦線」, 『ファシズム期の国家と社会 8卷 運動と抵抗(下)』(東京大学出版会, 1980); 水野直樹, 「新幹会の創立をめぐる」, 『近代朝鮮の社会と思想』(未来社, 1981).

으로 결성되었다는 사실에는 부합하지만, 특정한 세력을 대변하는 관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그러한 관점이 신간회에 민족주의 정통을 대표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신간회를 그러한 관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있는데, 이를 위해 ‘각축장’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국식민지의 역사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 거기서 전개된 운동을 평가하는 기준은 ‘독립’에 있게 된다. 즉 신간회를 협동전선으로 바라볼 경우 그것은 제국에 대항하여 끝까지 독립의 성취를 추구한 입장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제국과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설정하고 스스로를 ‘저항적’인 입장으로 정립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상이한 입장을 ‘타협적’ 운동으로 규정하면서 스스로를 ‘비타협적’ 운동으로 정립하는데, 이러한 관계설정이 스스로를 제국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전개된 운동과 상반된 존재로 만든다.

요컨대 ‘협동전선’으로서의 신간회는 스스로를 ‘합법성’과 상반된 존재로 묘사하는데, 그 근원에는 ‘독립’을 평가기준으로 바라보는 ‘민족주의적’ 관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협동전선의 관점은 신간회를 ‘주권국가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간회 또한 ‘식민지조선’에서, 그러한 의미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전개된 운동이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결코 ‘합법성’과 상반된 존재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요구되는 것은 기존의 ‘독립=주권국가적’ 관점을 넘어 역으로 ‘합법적=비주권적’ 관점에서 신간회를 재조명하는 작업일 것이다.

신간회 역시 ‘합법성’이라는 틀 속에서 전개된 운동이었다면, 제국과의 관계도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상관적’인 패러다임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탄압’과 ‘교섭’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양상이 포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타협적’ 운동과의 관계도 독립에 대한 진실성을 갈림점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제국이 설정한 ‘합법적’인 틀 속에서 서로 ‘경합’했던 관계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신간회를 ‘각축장’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처럼 새로운 관계설정 속에서 그 전개를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각축장으로서의 신간회가 형성되는 역사적 맥락을 개관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치자’, ‘민족주의’, ‘사회주의’ 각각 세력이 어떠한 인식과 의도로 ‘합법적 정치운동’을 추구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다. 각축장으로서의 신간회는 ‘합법적 정치공간’이 형성된 결과로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알기 위해서는 각 세력이 언제 어떠한 계기로 합법적 정치운동을 추구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져야 한다.

다음으로 각축장으로서의 신간회에서 이루어진 교섭의 전개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특히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 간의 협동, 즉 ‘협동전선’으로 불리는 입장에 주목하여 살펴볼 것이다. 물론 이때의 의도는 기존의 민족주의적 서술을 반복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같은 세력의 전개를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다른 이야기가 가능한지, 즉 해체와 재구성이 여기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치당국과 신간회 본부, 그리고 지회 간의 갈등양상을 통해 민족주의 좌파세력이 추구했던 운동의 성격을 밝혀낼 것이며 또한 그들이 수행했던 행위의 의미를 성찰하고자 한다.

2. 합법적 정치공간의 형성

(1) 합법적 운동을 둘러싼 합의

각측장으로서의 신간회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3.1운동 이후에 ‘합법성’이라는 틀이 만들어지는 맥락과 ‘정치’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이해하는 일이다. 그 결과로서 ‘합법적 정치공간’이 만들어졌는데, 각측장으로서의 신간회는 이 공간에서 운동을 추구하는 움직임, 다시 말해 ‘합법적 정치운동’을 향한 움직임이 통치자, 민족주의, 사회주의 각 세력에서 나타난 결과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법성’의 틀이 만들어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역시 제국의 통치자였다. 1920년 8월 총독 사이트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총독부에서는 ‘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했다.²⁾ 그 전문에서는 최근 운동론이 ‘독립’에서 ‘실력양성’으로 기울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경향을 무작정 ‘탄압’하는 것보다는 ‘육성’하는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이때의 육성은 민족운동을 제국의 ‘기반이탈’(羈絆離脫)과 ‘독립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운동으로 회유하는 것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주권’에 저촉되지 않는 ‘비주권적’ 운동으로 탈바꿈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이때 ‘비주권성’의 경계를 틀짓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합법성’이었다. 요컨대 총독부에서는 민족운동을 ‘비주권적=합법적’ 운동으로 유인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었는데, 1920년대 초반에 나타난 ‘문화운동’이란 통치자에게 바로 그러한 운동을 가리켰다. 즉 그 핵심은 ‘비주권성=합법성’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기에 민족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던 인물이 바로 이광수였다. 2.8선언 이후 상해로 건너갔던 이광수는 1920년 가을부터 귀국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안창호가 이끌었던 홍사단의 실력양성운동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 1921년 봄 이광수는 마침내 조선을 향하게 되는데, 그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³⁾

(홍사단의 취지는-필자) 민족의 독립은 독립을 운동함으로 된 것이 아니요, 민족이 독립의 실력을 갖추므로만 이뤄진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민족의 실력을 기르는 길은 민족 각 개인의 실력을 기르고 이러한 개인들이 단결함으로 독립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이렇게 깨닫고 보니 나는 동포들이 많이 사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제 주권이 있는 나라의 혁명운동은 국외에서 하는 것이 편하고 제 주권이 없이 남의 식민지가 된 나라의 독립운동은 국내에서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인도의 독립을 보면 간디를 비롯하여 모두 국내에서 하고 있었고 국내에서 하므로 대부분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었다. 합법적으로 동지의 결속을 많이 하면 기회를 얻어서 각지에서 일제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었다.⁴⁾

인용문은 이광수가 민족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실력양성운동은 실력을 갖춘 개개인의 단결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을 깨달은 그는 많은 동포들이 사는 조선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의 조선은 바로 ‘주권이 없는 식민지’를 의미했는데, 따라서 그 속에서 전개되는 운동은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광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귀국 후 통치자와 접촉을 시도했다. 그때 중개자가 되어

2) 「朝鮮民族運動に対する対策」 『齋藤実関係文書』 書類の部1, No.95-10.

3) 귀국의 배경에 관해서는 이광수, 「나의 고백」, 『이광수전집』 7권(三中堂, 1976), pp.251~268; 김운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솔출판사, 1999), pp.648~737; 波田野節子, 『李光洙·『無情』の研究』(白帝社, 2008), pp.434~438.

4) 「나의 고백」, p.264.

준 것이 바로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였다.⁵⁾ 일본의 『국민신문』의 고문으로 『경성일보』의 사장도 지낸 아베는 3.1운동 이후 그 인연으로 총독 사이토의 비공식 브레인이 되었다. 이미 1916년부터 아베와 친분을 쌓았던⁶⁾ 이광수는 귀국 후 민족운동에 대한 복안(腹案)을 들고 아베를 만났는데, 이를 통해 통치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 사전 합의를 얻어내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의도가 관철된 사실은 1921년 12월 29일에 사이토 앞으로 보내진 아베의 서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리석은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전에 이광수라는 자의 안(案)에서 보여드렸던 조선인 개조의 문화운동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을 암시받았습니다.⁷⁾

이를 통해 이광수가 아베를 만나 생각을 알린 사실과 아베가 그것을 사이토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위에서 아베는 ‘이광수의 안’을 근거로 ‘문화운동’의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아베는 ‘문화운동’에 대한 총독부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베는 ‘합법성’이라는 틀에 반대했던 것은 아니다. 그의 문제의식은 그러한 운동을 담당하는 ‘주체’에 있었다.

총독부가 문화운동의 주체로 지목했던 것은 바로 ‘친일세력’이었다. 전문에서 ‘비주권성=합법성’이라는 틀을 설정한 다음 본문에서는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우선 ‘반일인지 친일인지’를 분명히 가려낸 다음에 전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태도로 임하는 한편 후자에 대해서는 각 사회층에서 중심인물을 골라 단체를 조직하도록 지시했다. 이처럼 총독부의 대책안은 ‘친일육성론’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에 아베는 운동의 주체를 전환할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아베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예컨대 “민원식 및 선우적 운동으로는 도저히 일대 세력을 지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⁸⁾ 여기서 ‘선우’는 선우순, 선우갑 형제를 가리키는 말로, 이들은 당시 평양을 중심으로 <대동동지회>를 이끌고 있었다. 민원식은 주지하다시피 <국민협회>를 이끌었던 인물로, 두 단체 모두 한일병합을 찬양하는 ‘친일단체’로 알려져 있었다. 아베는 이들 친일세력이 운동을 이끄는 주체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민원식이나 선우 세력으로는 전도(全道)의 민심을 수렴하는 일은 도저히 바랄 수가 없”기 때문이다.⁹⁾ 즉 조선의 민심에 대한 호소력으로 볼 때 친일세력은 아무런 역량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아베의 문제의식이었다.

‘인심수렴’(人心收攬)은 아베에게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 3.1운동 이후 조선통치가

5) 아베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언급은 되었지만, 기초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심원섭,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의 생애 기초 연구』 『한국학연구』 25집(2001); 심원섭, 『아베 미쓰이에와 조선』 (소명출판, 2017); 이형식, 『메이지·다이쇼 초기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의 귀적』, 『일본역사연구』 42호(2015.12); 이형식, 『경성일보, 매일신보 사장 시절(1914.8-1918.6)의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 『사총』 87권(2016); 이형식, 『‘제국의 브로커’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와 문화통치』, 『역사문제연구』 37호(2017.4); 이형식, 『1920년대 중후반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의 조선에서의 정치 행보』, 『민족문화연구』 제78호(2018.2).

6) 둘이 만난 경위에 관해서는 李光洙, 『無佛翁의憶出-私が翁を知った前後のこと』, 大村益夫·布袋敏博編, 『近代朝鮮文学作品集』(1939~1945) 評論·隨筆篇 3(綠蔭書房, 2002); 波田野節子, 『李光洙が出会った四人の日本人』, 『朝鮮史研究会論文集』 第50号(2017.10).

7) 『齋藤実関係文書』 書翰の部1, No.283-28.

8) 『齋藤実関係文書』 書翰の部1, No.283-28.

9) 『齋藤実関係文書』 書翰の部1, No.283-30.

이루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았기 때문이다.¹⁰⁾ 3.1운동의 충격으로 흔들린 제국의 체제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치에 대한 합의조달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민중에게 호소력을 갖는 세력을 운동의 주체로 설정하는 일은 바로 이 점에서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아베는 ‘이광수의 안’을 보고 그 근거가 되는 주체를 찾았던 것이다.

‘이광수의 안’에 대해서는 1921년 11월에 탈고된 「민족개조론」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1922년 2월에 조직된 <수양동맹회>를 의미한다는 견해로 나누어진다.¹¹⁾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쪽 모두 이광수가 상해를 떠날 때 결심했던 운동의 방향을 구체화시킨 결과로 ‘합법적’ 운동을 지향했다는 점이다. 아베의 입장에서 보면 3.1운동을 이끌었던 ‘민족주의’ 세력으로부터 그러한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했다. 친일세력과는 비교도 안 되는 호소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베는 ‘합법적 문화운동’의 주체를 ‘민족주의’ 세력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즉 그의 주장은 인심수렴론에 입각한 ‘민족육성론’에 기초하고 있었다.

총독부(사이트)-아베-이광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 중요한 것은 ‘합법적 운동’에 대한 합의가 통치자와 민족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은 물의를 더 일으켰지 마냥 호응을 받았다고 보기는 힘든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를 전후하여 민족운동의 방향은 분명히 ‘문화운동’으로 향했다.

(2) 합법적 운동의 정치화

앞 절에서는 총독부(사이트)-아베-이광수의 관계를 통해 ‘합법적 운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 운동의 성격은 ‘문화’에 한정되어 있었다. 요컨대 ‘합법적 문화운동’을 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지 ‘정치운동’은 여전히 급기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민족개조론」에서 ‘비정치주의’가 강조되는 맥락이다.

世界思潮의 影響을 입어 近來 朝鮮思想界의 民族이나 社會에 대한 思想分類의 範疇가 흔히 民主主義 對 帝國主義, 資本主義 對 勞農主義의 二雙에 分한 듯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民族改造主義는 이 範疇中에 어느 것에 屬한 것도 아니요, 또 어느 것을 特히 排斥하는 것도 아니외다. 이 改造主義者中에는 帝國主義者, 資本主義者도 있을 수 있는 同時에 民主主義者, 勞農主義者도 있을 수 있는 것이외다. 이런 것은 政治組織에 관한 것이니 改造主義에는 아무 相關이 없는 것이외다. …改造主義는 政治에 對하여 아무 干涉이 없습니다. …改造主義의 團體自身은 永遠히 政治에 參與할 것이 아니외다.¹²⁾

조선의 사상계는 ‘민주주의 대 제국주의’ 혹은 ‘자본주의 대 노농주의’로 분열되고 있는데, ‘민족개조주의’는 그 어느 것에 속하지도 않으며 또 배척하지도 않는다. 이들 주의는 모두 ‘정치조직에 관한 것’으로, 개조주의는 ‘정치’에 상관하지도 간섭하지도 참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즉 어디까지나 ‘비정치주의’를 고수한다는 주장이다.

10) 「阿部充家意見」(No.104-20), 「朝鮮統治意見」(No.104-21) 『齋藤實關係文書』書類の部1.

11) 전자의 견해로, 趙聖九, 『朝鮮民族運動と副島道正』(研文出版, 1998). 후자의 견해로, 姜東鎭, 『日本の朝鮮支配政策史研究-1920年代を中心として』(東京大学出版会, 1978).

12) 「민족개조론」, 『이광수전집』 10권(三中堂, 1976), pp.136~137.

이러한 주장은 「민족개조론」 곳곳에 나타나는데, 예컨대 “동화를 하거나 자치를 하거나 독립을 하거나, 또 세계적 의의를 가진 대혁명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 조선민족의 정치적 운명은 “문명한 생활을 경영할 만한 실력을 가지게 된 후에야” 결정할 수 있다든지,¹³⁾ 개조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제국주의, 민주주의, 또는 독립주의, 자치주의, 동화주의, 어느 것에도 속한 것이 아니”며 “정치적 색채가 있을 리가 만무”하다 등의 주장이 그것이다.¹⁴⁾

한편 이광수는 「민족개조론」의 실천으로서 <수양동맹회>를 조직했는데, ‘비정치주의’ 원칙은 거기서도 강조되었다. 예컨대 「규약」에 따르면, 수양동맹회는 “자기수양과 문화사업을 통해 조선인에게 고상한 덕과 필요한 지식과 건강과 부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절대로 시사 또는 정치에 간여하지 않는 주의”를 고수해야 했다.¹⁵⁾

이러한 주장에 조선의 민족운동이 처해있던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다. 즉 ‘식민지’에서 ‘정치’를 주장한다는 것은 곧바로 ‘주권’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주장한다면 그만한 논리적 작업이 필요했는데, 1924년 1월에 발표된 「민족적 경륜」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대한 변화를 의미했다.

「민족적 경륜」은 당시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이었던 이광수의 집필로 발표되었는데, 「민족개조론」에 비하면 훨씬 간결한 글이었다. 내용은 정치, 산업, 교육 각 분야에서 결사를 조직할 필요성과 결사들 간의 관계에 대해 논한 것이었는데, 이때 ‘정치’를 하나의 분야로 설정했던 점이 이전과 달라진 결정적인 변화였다.

산업이나 교육과 같은 ‘비정치적’ 분야에 한정된 ‘합법적 문화운동’은 이미 조선물산장려회(1923.1)나 민립대학기성준비회(1922.11)를 통해 실천되고 있었다. 「민족적 경륜」은 이러한 ‘문화’의 틀을 깨고 ‘정치’의 분야에서도 단체를 조직할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합법적 문화운동의 정치화’를 의도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에 대한 재해석 또한 수행해야 했다.

<정치적 결사와 운동>이라는 항목은 식민지조선에서 ‘정치’가 놓인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한다. 본래 정치는 자유사상이 보급될수록 민중화되는데, 조선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자유사상이 침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 생활이 만무한 상황이다. 그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첫째로 일본은 조선을 병합한 이래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해왔다. 둘째로 조선인 또한 “일본의 통치권을 승인하는 조건 밑에서 하는 모든 정치적 활동”을 부정해왔다. “참정권 자치권의 운동”은 물론 “일본정부를 대수(對手)로 하는 독립운동조차도” 부정하는 태도로 “일본을 적국시하는 운동”만을 인정해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생활은 사라지고 정치운동은 “해외에서나” 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方法으로나 朝鮮內에서 全民族的인 政治運動을 하도록 新生面을 打開할 必要가 있다. 우리는 朝鮮內에서 許하는 範圍內에서 一大政治的 結社를 組織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主張이다.¹⁶⁾

상해를 떠날 때부터 ‘주권이 없는 식민지’ 조선에서는 ‘합법적’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광수에게 ‘조선 내에서 허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는 새로운 주장은 아니었다. 게다가 그러한 운동은 이미 ‘문화운동’으로 실천되고 있었다. 달랐던 것은 단 하나, 그것

13) 「민족개조론」, p.132.

14) 「민족개조론」, p.147.

15) 『齋藤實關係文書』書翰の部2, No.2166-1.

16) 「民族的經綸」, 『이광수전집』 10권(1976), p.184.

을 ‘정치적’ 차원에서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 즉 ‘합법적 문화운동의 정치화’에 있었다.

이 경우의 정치운동은 ‘합법적’인 틀 속에 들어온다는 점, 즉 ‘해외에서나’ 가능한 정치운동과는 다르다는 점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했는데, 1월 29일에 발표된 「정치적 결사와 운동에 대하여」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논설은 “정치적 결사”라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쓰여졌는데, 거기서는 특히 “생활운동”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생활을 리(離)하여 정치가 없으며 또한 정치를 리하여 생활을 향상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전개되는 ‘정치운동’이란 곧 ‘생활운동’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와 ‘생활’을 엮어서 설명하는 이면에서는 ‘정치’를 ‘주권’으로부터 탈각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럼으로 當初부터 主權組織의 政治的 方面에는 言及치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設畵 우리의 最高한 政治的 理想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到底히 論議할 自由가 없는 것을 熟考치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만일 吾人의 提唱하는 『政治的 結社와 運動』이라는 論旨를 一人이라도 다른 意味로 誤解한다 하면…決코 論文의 主旨가 아닌 것을 茲에 一言하며…¹⁷⁾

정치운동이 생활운동을 의미한다는 것은 그것이 ‘주권’과 결부된 의미의 정치운동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권’과 결부된 정치운동이란 바로 ‘독립’이나 ‘혁명’과 연루된 의미의 정치운동이다. 이것과 연계된 순간 정치운동은 ‘해외에서나’ 가능한 일이 될 것이었다.

이상 보았듯이 「민족적 경륜」은 ‘합법적 문화운동의 정치화’를 의도한 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여기에 이르러 ‘정치운동’에 대한 의도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것은 ‘합법적’인 틀 속에서 전개되는 운동이어야 했다.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 동원된 것이 ‘생활운동’이라는 관점이었다. ‘정치’를 ‘주권’과 결부된 의미로부터 탈각(≠)시키기 위해 ‘생활’과 연결(=)시켰던 것이다. 이리하여 ‘합법적 정치운동=생활운동’이라는 도식이 성립되는데, 하지만 실제 운동으로는 실패했다.

「민족적 경륜」의 발표를 전후하여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연정회(研政會) 조직계획이 진행되었다. 이것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는데, 스스로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조선인은 “일본의 통치권을 승인하는 조건 밑에서 하는 모든 정치적 활동”을 부정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¹⁸⁾ 당시의 신문에서 연정회는 ‘참정권운동’을 주장했던 친일단체와 동일노선으로 비난을 받았는데, 지금은 ‘자치운동’을 추구했던 단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는 사후적인 평가에 불과한데, 적어도 「민족적 경륜」이 발표되었던 당시에는 참정권운동은 물론 자치운동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때의 운동이란 무엇을 목표로 삼았을까. 1월 29일의 논설에서는 “우리 민족의 정치적 최고이상”이란 “민족 자체의 결정으로부터 해결될 것”에 있다는 점이 천명된다.¹⁹⁾ 즉 민족의 ‘자기결정’이 정치운동에서 추구하는 목표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민족적 경륜」에서도 강조되었는데, 제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결사를 조직한다는 주장에 이어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었다.

그 政治的 結社의 最高 또는 最後의 目的이 무엇인가. 다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 政治的

17) 「政治的 結社와 運動에 對하여」, 『동아일보』 1924년 1월 29일.

18) 「民族的 經綸」, p.184. 논설위원으로 글 쓴 이광수는 퇴사까지 물렸으며 동아일보 자체에 대한 비난으로 불거졌다. 1월 29일의 논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명을 위해 발표된 것이기도 했다.

19) 「政治的 結社와 運動에 對하여」, 『동아일보』 1924년 1월 29일.

結社가 生長하기를 기다려 그 結社自身으로 하여금 모든 問題를 스스로 決定케 할 것이라고.²⁰⁾

(3) 통치 측의 정치화와 자치운동

이상에서는 ‘합법적’ 운동에 대한 주장이 어떻게 ‘문화’를 경계를 깨고 ‘정치’로 진입했는지, 거기서 ‘정치’에 대한 재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족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보았듯이 ‘문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통치측과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정치운동’에 대해서는 어땠을까.

「민족적 경륜」이 발표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통치측에서 이를 의도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에 명확하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1925년을 경유하면서부터인데, 여기서 앞서 살펴본 아베의 인식을 통해 통치측의 ‘정치화’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추적하고자 한다. 특히 통치측의 정치화는 ‘자치운동’을 출현시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중개자로 나선 것 역시 아베였다. 이하에서는 세 가지 측면을 통해 그 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아베-이광수-안창호’ 루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광수가 합법적 운동으로 나가는 배경에는 안창호의 영향이 있었는데, 둘의 관계는 이광수의 귀국한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예컨대 이광수는 「민족개조론」을 완성시킨 직후 상해에 가서 안창호를 만났는데, 이때 흥사단의 국내지부로서 수양동맹회를 결성하도록 지시받았다.²¹⁾ 또한 1923년 10월에도 베이징에 가서 안창호를 만났는데, 이때 「민족적 경륜」과 연정회 계획에 대한 양해를 얻었다.²²⁾

이러한 둘의 관계를 숙지했던 아베는 이광수를 통해 안창호와 연락관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조금 내려가지만 1926년 7월 당시 안창호가 공산주의에 접근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이광수에게 진상파악을 타진하고 그 결과를 사이토에게 보고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경위를 보더라도 ‘아베-이광수-안창호’ 루트가 형성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25년 당시 안창호의 동향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었을까. 이에 관해서는 관련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데, 먼저 1921년 당시 안창호는 조선의 독립은 “일본을 적대시해서”는 불가능하며 “일본에 기대[倚]”야만 가능하다는 속마음을 측근에게 토로했다는 기록이 있다.²³⁾ 이 전에 안창호의 입장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노선으로 알려져 있었는데,²⁴⁾ 이것이 ‘일본을 상대로’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인식된 것이다. 이것이 1925년에 들어가면 상대로 하는 수준을 넘어 ‘자치운동’을 도모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인식된다. 즉 당국은 당시 김성수, 송진우, 최린, 이종린, 최남선 등 국내의 민족주의 세력이 회합을 거듭하는 이유를 “안창호 일파가 품고 있는 자치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움직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²⁵⁾ 이러한 인식을 안창호의 동향에 민감했던 아베가 놓았을 리는 없

20) 「民族的經綸」, p.184.

21) 姜東鎮(1978), p. 416; 河かおる, 「植民地朝鮮における同友会-植民地下ナショナリズムについての考察」, 『朝鮮史研究会論文集』 第36輯(1998).

22) 「獨立運動終息後に於ける民族運動の梗概」(1927.1), 『齋藤実関係文書』 書類の部1, No.95-16[이하 「梗概」]; 「勞農總同盟臨時大会」, 『조선일보』 1924년 4월 22일.

23) 「梗概」(1927.1)

24) 「朝特報第四十一号」, 「朝特報第七十九号」, 「朝特報第八号」,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6卷 朝鮮2 (みすず書房, 2004).

25) 「梗概」(1927.1); 『治安概況』(1928.5).

을 것이다.

두 번째는 ‘아베-송진우-이승만-서재필’ 루트이다. 1925년 7월 하와이에서 <태평양문제 조사회>가 열렸는데, 이에 참석했던 송진우는 현지에서 이승만과 서재필을 만나 ‘자치운동’에 호의적인 대답을 듣고 돌아온 것이다.

<태평양문제조사회>에 대해서는 연일 보도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는데, ‘국제회의’에 ‘조선대표’가 참석한다는 사실 자체가 큰일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이를 맞이한 재미한인들의 대표격이었으며 당시 필라델피아에 있던 서재필은 이들의 초청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대표들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고통받는 조선의 현실을 알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것이 일본대표들과 갈등을 야기하여 ‘참가자격’을 둘러싼 논쟁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참가자격을 ‘국가단위’로 한정하는 제안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조선대표들은 반발했지만 ‘독립적 단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다. 참가자격은 후일 결정되었는데, 결국 ‘주권국과 자치국’을 국가단위로 인정하고 ‘식민지와 속령’은 본국의 승인이 의무화되었다.²⁶⁾

송진우, 이승만, 서재필의 회합은 이러한 일을 겪고 난 후에 있었던 일로 거기에는 ‘자치’가 거론될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다. 송진우에 따르면 이승만과 서재필은 ‘공산주의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자치운동’으로 민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을 지지했다. 그들은 송진우가 조선의회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의 뜻을 밝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식을 들은 아베의 인식인데, 그는 송진우의 이야기를 사이토에게 보고하면서 향후 조선의 운동이 ‘무단파→노국파→과격파→공산파’와 ‘문치파→미국파→온화파→자치파’로 분해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승만과 서재필의 귀국을 건의하기까지 했다.²⁷⁾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주의 세력의 확대’이다. 아베는 3.1운동 직후부터 이미 조선의 ‘사회주의화’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의 예상대로 사회주의는 꾸준히 영향력을 확대했다. 특히 1925년에 들어서 동경에서는 일월회가 결성되었다. 이는 재동경 사회주의 단체를 총괄하는 지도단체의 탄생을 의미했다는 점,²⁸⁾ 그리고 1926년 11월의 「정우회선언」의 모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아베는 일월회의 결성과 관련하여 사회주의에 감화된 청년들이 합동동작을 일으킬 위험성을 지적했는데, 그런 한편으로 사회주의 세력의 확대가 도리어 반대세력의 형성에 기회를 준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즉 사회주의화의 경향을 역으로 이용하여 민족주의 세력을 규합하고자 했는데, 이를 위해 조만간 “조선으로 건너가 최린 등과 면회하여 깊이 마음속을 두드려볼 각오”라고 밝혔다.²⁹⁾

아래 서한은 8월 17일에 작성되었는데, 이를 통해 앞서 본 세 가지 측면이 조선행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가 중국을 통해 조선에 손을 뻗치지 않을까 우심(憂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에 대

26) 片桐庸夫, 「太平洋問題調査会(IPR)と朝鮮代表権問題 - 朝鮮グループの脱退, 1925-1931」, 『法学研究』59卷 4号(1986), pp.51~58; 고정휴,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선지회와 조선사정연구회」, 『역사와현실』 제6호(1991), pp.317~318.; 外村大, 「太平洋問題調査会朝鮮支会に関する一考察」, 『戦間期のアジア太平洋地域』(早稲田大学社会科学研究所, 1996), p.188.

27) 『齋藤実関係文書』書翰の部1, No.283-86.

28) 박종린, 「1920년대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일월회」, 『한국근현대사연구』 40(2007).

29) 『齋藤実関係文書』書翰の部1, No.283-79.

해서는 소생이 평소부터 주장해왔듯이 길항하는 하나의 세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린, 김성수, 송진우 등을 연합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자 고려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1월경에 조선에 건너가 그들과 의논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호의 의향이 공산주의 등 과격주의를 반대하는 데 있다는 의견은 이광수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송진우를 통해 이승만과 서재필 등 영수자(領袖者)의 의견 또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이번 일을 고려하는 데 큰 참고자료가 되었습니다.³⁰⁾

아베의 조선행은 11월에 이루어졌다. 그 목적은 “우경적 단체의 출현을 촉진”하는 데 있었는데,³¹⁾ 그가 접촉을 시도한 인물 중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최린이었다.³²⁾ 아베는 최린과 대담했던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사이토에게 보고했는데, 그것은 ‘자치운동’을 적극 표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³³⁾

이상 보았듯이 조선의 민족운동을 ‘합법적’인 틀 속에서 키우려고 했던 통치자의 의도는 1925년에 이르러 ‘문화운동’의 범위를 넘어 ‘정치운동’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때 정치운동의 형태로 설정된 것이 ‘자치운동’이었다. 물론 합법적인 정치운동의 형태가 자치운동에만 한정되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참정권운동 또한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민족주의’ 세력을 주체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전자의 맥락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베는 이 맥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통치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연결거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4) 사회주의 측의 정치화와 정우회선언

이상에서는 조선의 민족운동에 대해 ‘합법성’이라는 틀이 만들어지는 맥락과 그것이 ‘정치화’하는 맥락을 통치자와 민족주의 양쪽에서 나타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합법적인 정치공간’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해 사회주의 측에서는 어떠한 대응이 있었을까. 이하에서는 사회주의 측의 정치화를 상징하는 사건으로서 「정우회선언」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우회선언」은 전문과 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전문에서는 분열된 사회주의와 대조적으로 나날이 강화되는 “민족주의적 정치운동”에 대한 위기의식이 강조되는데, 4개의 조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침으로 제시되었다. 첫 번째로 모든 전위분자들이 정우회로 통합하는 “사상단체의 통일”이 주장되었다. 두 번째로 “대중”을 조직해서 계급의식을 각성시키는 동시에 “교육”을 통해 계급의식의 자연생장성을 극복하는 방침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로 “민족주의적 정치운동”에 대한 구체적 방침이 제시되었는데, 여기서 ‘방향전환’과 ‘협동전선’이 주장되었다. 사회주의운동은 “경제적 투쟁의 형태”를 벗어나 “정치적 형태로 비약하지 아니면 아니 될 전환기”에 접어들었는데, 이를 위해 민족주의적 정치운동과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때의 투쟁은 “타락한 형태로 출현”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를 위해 강조된 것이 네 번째 “이론적 투쟁”이었다. “타협

30) 『齋藤実関係文書』書翰の部1, No.283-88.

31) 『齋藤実関係文書』書翰の部1, No.283-130.

32) 아베의 서한에서 직접 언급된 사람은 최린과 송진우였지만, 미쓰야 미야나쓰(三矢宮松) 경무국장의 서한에 따르면 아베의 환영회에는 김성수, 신석우, 방태영, 진학문도 참석했다(『齋藤実関係文書』書翰の部2, No.1470-2).

33) 『齋藤実関係文書』書翰の部1, No.283-93.

만에 그치는 타협, 개량만에 그치는 개량은 분명히 타락”을 초래하는데, 이론적 투쟁은 “타협과 항투” 혹은 “개량과 XX(혁명-인용자)”을 양립시키는 방법으로서 제시된 것이다.³⁴⁾

이상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특히 세 번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정우회선언」은 ‘민족주의적 정치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전환’과 ‘협동’ 역시 이를 향한 주장이었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합법적 정치운동’을 향한 전환이자 협동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의 ‘정치투쟁’이란 어떠한 성격을 가졌을까.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의 전환은 ‘계급운동에서 대중운동’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³⁵⁾ 즉 ‘정치투쟁’이란 곧 ‘대중운동’을 의미했는데, 여기에는 야마카와이즘의 영향이 있었다.³⁶⁾ 야마카와는 일본의 무산계급운동이 전위적 소수자의 사상운동을 벗어나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³⁷⁾ 이때의 ‘대중운동’ 또한 ‘정치투쟁’을 의미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정치투쟁의 핵심은 대중의 ‘현실적인 요구’에 있다고 보았던 점이다. 정치투쟁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철폐에 있지만, 만약 대중이 눈앞의 ‘생활’에 관한 요구를 드러낸다면 이에 마땅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⁸⁾ 이처럼 야마카와이즘에서 ‘정치투쟁’이란 바로 ‘생활’에 입각한 운동을 의미했다.

여기서 ‘정치투쟁=대중운동=생활운동’이라는 도식이 떠오르게 된다. 앞서 보았듯이 ‘정치투쟁’으로의 전환은 민족주의적 ‘정치운동’과의 협동을 의미했다면, ‘민족주의적 정치운동’은 바로 ‘생활운동’을 의미했다. 「정우회선언」 역시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는데, 여기서도 ‘정치’는 ‘생활’과 연계된 의미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우회선언」은 사회주의운동을 ‘합법적 정치공간’으로 향하게 하는 동시에 ‘생활’과 연계된 정치운동으로 탈바꿈시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회주의 측의 정치화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로써 합법적 정치공간에는 통치자, 민족주의, 사회주의 모두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 끝에 바로 ‘각축장으로서의 신간회’가 탄생한 것이다.

3. 각축장으로서의 신간회

(1) 합법성의 안과 밖

34) 「正友會의 新陣營」, 『조선일보』 1926.11.17.

35) 「戰線이 整理되는 朝鮮의 無産運動, 經濟鬭爭으로 政治鬭爭에 正友會는 昨日解體」, 『조선일보』 1927년 2월 22일.

36) 「정우회선언」에 관한 연구로, 조지훈, 「신간회의 창립과 해소」, 스칼라피노 외, 『신간회연구』(동북, 1983); 徐大肅, 『朝鮮共產主義運動史, 1918~1948』(코리아評論社, 1970);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제3권(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梶村秀樹, 「新幹會研究のためのノート」, 『労働運動史研究』 49号(1968); 梶村秀樹, 「朝鮮の社会状況と民族解放鬭爭」, 『岩波講座 世界歴史27 世界恐慌期』(岩波書店, 1971); 강만길,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신간회운동」, 『한국사연구입문』(지식산업사, 1981); 김명구, 「코민테른의 대한정책과 신간회」, 『신간회연구』(1983); 이균영, 『신간회연구』(역사비평사, 1993); 水野直樹, 「新幹會運動に関する若干の問題」, 『朝鮮史研究会論文集』 第14集(1977); 김석근, 「후쿠모토이즘과 식민지하 한국사회주의운동」, 『아세아연구』 통권94호(1995).

37) 山川均, 「無産階級運動の方向轉換」, 『前衛』 1922年7·8月合併号[『山川均全集』 4卷(勁草書房, 1982)에서 재인용].

38) 山川均, 「政治の否定と政治の対抗」 『社会主義研究』 1922年7月号[『山川均全集』(1982)]; 山川均, 「無産階級運動の方向轉換」 『山川均全集』(1982).

신간회는 확실히 ‘협동전선’의 결과로 나타난 단체였다. 「정우회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민족주의 측에서는 연정회 조직계획이 다시 추진되고 있었다. 앞서 보았듯이 1차계획 당시 연정회는 ‘자기결정’을 목표로 내세운 외에 구체적 운동형태를 밝히지 않았는데, 2차계획 당시에는 ‘자치운동’을 추진할 의사를 관계자들에게 밝히고 있었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계획을 무산시키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신간회였다.³⁹⁾ 여기에 이르러 우파와 좌파 혹은 타협과 비타협의 분열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 간의 협동으로 결성된 신간회는 ‘합법성’과 무관한 단체였을까. 앞서도 강조했듯이 ‘식민지조선’에서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합법성’의 틀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문제는 ‘비타협적’ 운동에 ‘저항성’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신간회를 ‘합법적 정치공간’에서 탄생한 단체로 보는 데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간회가 탄생했을 당시 통치자, 민족주의, 사회주의 세력은 모두가 ‘합법적 정치운동’에 저마다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신간회는 이러한 의도들이 얽힌 ‘각축장’으로서 탄생했던 것으로, 거기에는 탄압과 저항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섭과 경합, 그리고 협동이 복합적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특히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 간의 협동, 즉 ‘협동전선’이라 불리는 세력에 주목하여 그것이 통치당국 사이에서 어떠한 탄압과 교섭의 과정을 겪었는지, 한편으로 자치운동 세력과 어떠한 경합관계를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이 추구한 운동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무엇을 함의했는지 밝히고자 한다.

먼저 결성 당시에 신간회 주도자들과 통치당국 사이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를 통해 탄압과 교섭이 교차하는 상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확인해야 할 것은 신간회에 대한 통치층의 인식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로 ‘탄압’의 측면에서만 이해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질문이 던져지는 일이 없었다. 물론 탄압은 있었지만, 그것은 제국이 설정한 ‘합법성=비주권성’이라는 경계를 넘었을 경우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 틀 속에서는 오히려 팽팽한 ‘교섭’의 역학이 작동했다. 그렇다면 통치층에서는 신간회에 어떠한 의도를 가졌는지 그 인식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신간회의 결성이 진행되던 1925년 12월 15일 아베는 조선의 상황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조선은 지금 “분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 “분해작용”에 당국은 “간섭”하는 것보다는 “방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지금까지 조선의 운동은 “총독정치에 반항하는 것을 유일한 방침으로” 해왔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매국 변절 등 온갖 악명”을 씌워서 “단결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극좌적 경향을 전환하고 우경적 방면을 취하기 시작”했다. 즉 “혁명운동이 정책적 운동으로 전환하면서 분해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방임이 도리어 우경적 단체의 출현으로 귀결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베가 신간회를 ‘우경적 단체’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경적 단체에 관한 언급은 1925년 11월오에 조선행을 감행했을 당시에도 나타났는데, 이때의 목적은 조선에서 자치운동을 이끄는 우경적 단체를 출현시키는 데 있었다. 즉 아베에게 우경적 단체란 ‘합법적 정치운동’, 나아가 ‘자치운동’을 담당해주는 단체를 의미했는데, 중요한 것은 ‘신간회’ 또한 그 일환으로 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베는 조선행을 앞두고 10월에 만난 다카쓰 마사미치(高津正道)와의 대화에서도 우경적 단체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바 있었다. 아베를 만나기 전에 조선을 다녀온 다카쓰는 최근에 우경적 단체를 설립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알리면서 조선일보의 안재홍과 나눈 대화

39) 「梗概」(1927.1); 『京高秘第八〇三六号』(1928.10.27)

에서 그러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보고했다.⁴⁰⁾ 아베는 이를 “송진우의 귀국선물의 일단이 벌써 열매”를 맺은 결과로 보았는데, 즉 ‘자치운동’을 받쳐주는 세력의 형성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했던 것이다. 이때 다카쓰가 언급했던 단체는 9월에 결성되었고 안재홍도 관여했던 <조선사정연구회>로 보이는데, 아베는 11월에 최린과 나눈 대화를 보고했던 서한에 조선사정연구회의 명단을 첨부했었다.

조선사정연구회는 아직 그 성격이 불투명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에 반대했던 민족주의 단체로 자치운동을 추구했던 연정회와는 구별된다. 즉 ‘비타협적’인 맥락에서 이해되는 단체로, 신간회로 귀착된다. 아베의 인식은 이러한 이해와 차이를 보이는데, 그에게는 조선사정연구회도, 심지어 신간회도, 자신이 자치운동을 이끌게 하려고 했던 ‘우경적 단체’라는 범위 내에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에게는 연정회와 신간회를 타협과 비타협으로 구별짓는 인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정보통으로 알려진 아베가 현실적인 대립을 몰랐을 리는 없다. 다만 그에게는 ‘공산파’와 ‘자치파’의 분해작용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제국의 틀을 깨뜨리는 방향이 아니라면 그것은 분해되는 과정에 나타난 ‘우경적 단체’에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연정회도, 조선사정연구회도, 신간회도 모두 ‘합법적’ 운동이라는 점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신간회를 ‘합법성’이라는 틀 속에 위치시키는 인식은 실제 결성과정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신간회 주도자들이 만든 ‘강령’을 둘러싼 갈등은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를 둘러싼 교섭과정으로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연정회 2차계획이 자치운동을 모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홍명희, 안재홍, 신석우는 이를 무산시키는 계획을 진행했는데, 그런 한편으로 “순진한 민족당”을 결성하는 데 합의했다. 세 사람은 곧 「강령」을 만들어 각 신문에 돌렸는데, 모두가 게재를 주저하는 형편이었다. 이에 “당국의 양해”를 얻을 필요성을 실감한 세 사람은 “당국과 접근성을 갖는 신석우를 중개로” 교섭을 시작했는데, 종로경찰서를 찾아간 신석우에게 당국은 「강령」에 대한 수정을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⁴¹⁾

[표1] 강령의 수정 내역⁴²⁾

수정 전	수정 후
1. 조선민족으로서 정치경제의 구경적(究竟的) 해결을 도모한다	1.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2. 민족적 단결을 공고히 한다	2.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3. 타협주의를 부인한다	3.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절 부인함

첫째로 ‘민족’이라는 말이 ‘우리’라는 표현으로 수정되었다. 둘째로 제3항에서 ‘타협주의’라는 말이 ‘기회주의’로 수정되었다. 이는 ‘자치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수정은 그 반대의사를 모호하게 만드는 조치였다고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제1항에서 ‘구경적 해결’이라는 말이 삭제되었다. 이는 ‘해방’을 연상시키는 말로, 바로 ‘합법성’에 저촉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민족’과 ‘타협주의’에 대해서는 ‘우리’와 ‘기회주의’로 수정하는 ‘교섭’이 이루어졌다면, ‘합법성’

40) 『齋藤実関係文書』 書翰の部1, No.283-91. 서한에는 ‘동아일보 안재형(安在衡)’이라고 적혀있는데, ‘조선일보 안재홍’을 잘못 쓴 것으로 판단했다.

41) 「梗概」(1927.1); 『京高秘第八〇三六号』(1928.10.27)

42) 수정 전은 「梗概」(1927.1), 수정 후는 「劃時期的 會合이 될 新幹會 創立準備」, 『조선일보』 1927년 1월 20일.

의 경계를 넘은 ‘구경적 해결’에 대해서는 바로 삭제하는 ‘탄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진행된 일로 흥미로운 것이 신석우와 전진회 간부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기록이다. 기록에 따르면 신석우는 “우리가 조직하고자 하는 단체는 좌경단체”라고 설명했는데, 이를 들은 전진회 간부는 “그렇다면 우리와 제휴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신석우는 이를 거절하는데, “우리는 민족주의자 중의 우경파를 배척하고 좌익전선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산주의적 좌경운동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⁴³⁾

전진회는 「정우회선언」이 발표되었을 당시 이를 ‘개량주의적 우경화’로 반대했던 단체였다. 즉 사회주의운동이 ‘합법적 정치운동’과 연계되는 방향에 부정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를 좌익전선으로 자칭하면서도 전진회와의 제휴를 거절했던 신석우의 의도는 신간회가 공산주의적 좌경운동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해 ‘합법성’을 추구하는 ‘협동전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더구나 이러한 대화가 관헌자료에 기록되었던 사실을 통해 통치자들이 무엇을 확인하려고 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강령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합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교섭의 초점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당국의 이러한 시각은 다른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합법적 및 온건한 방법으로 조선민족의 복리증진과 장래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나왔다는 점, “제국의 조선통치를 부인하거나 이에 항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차 확인하고 있었다.⁴⁴⁾

(2) 생존운동이라는 제안

이상에서는 신간회 결성 당시에 어떠한 교섭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합법성’이라는 점에 일정한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그 속에서 전개되는 ‘정치운동’의 방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 다음으로는 이를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이루어진 교섭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신간회는 결성과 동시에 폭발적인 속도로 확대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갈등 요소 또한 안게 되었다. 우선 ‘협동전선’을 표방했던 신간회에는 ‘사회주의 세력’이 대거로 들어오게 되었다. 당시 조선공산당의 방침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⁴⁵⁾ 한편 결성 당시 배제되었던 ‘민족주의 우파’도 세력부식 방침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간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1927년 12월 평양지회가 설립되자 김성수의 이름이 간부 명단에 올라왔고, 1928년 1월에는 좌파세력의 중심이었던 경성지회에 송진우가 가입하는 일이 벌어졌다.⁴⁶⁾ 이에 신간회 본부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자치운동’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었지만,⁴⁷⁾ 갈등은 예상과 달리 ‘사회주의 세력’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 배경이 된 것이 정기대회 문제였다. 신간회에서는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정기대회를 계획했는데, 이는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대회로서 기대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개최를 앞둔 어느 날 당국으로부터 금지를 당하게 된 것이다. 이후 북대표대회(1929.6)가 허가될 때까지 금지조치는 계속되었는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본부’와 ‘지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이

43) 「梗概」(1927.1).

44) 『治安狀況』(1930.10)

45) 『京高秘第八〇三六号』(1928.10.27.); 『治安狀況』(1929.5).

46) 『治安概況』(1928.5) 당시 가입요건은 ‘강령을 승인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기회주의자’로 알려졌던 송진우는 이를 통과하기 위해 원로 윤치호의 양해를 얻고 회장을 설득시켰다.

47) 『京高秘第八〇三六号』(1928.10.27)

다. 먼저 당국이 제시한 금지사유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新幹會는 昨年 봄에 組織되었는마 此에 對하여 同會가 참으로 朝鮮人의 健全한 自覺을 促進하고 穩健 合法的으로 行動함이 明白함에는 구태여 甚히 干涉 取締를 加할 必要를 認定치 않으나, ②그러나 組織 以來에 觀望함에 同會는 單히 比較的 空漠한 綱領 三綱을 揚揚한 外에 組織의 目的 實施事項 等이 那邊에 在한지 此에 對한 具體的 發表를 아직 볼 수 없으며 ③兼하여 各地에 組織되어 있는 支會 中에는 恒常 着實을 缺하여 徒然히 激越한 行動에 나아가는 事例가 적지 않으므로 ④如此히 目的이 不明하고 더구나 此等 不穩當한 支會를 가진 本會를 容認하는 것 같은 것은 쓸데없이 事端을 惹起하고 社會의 秩序를 害하는 念慮가 있다고 認定함으로 治安維持 上 此의 開會를 禁止하기로 함.(번호는 필자)⁴⁸⁾

먼저 ①은 당국의 입장에서 신간회의 의의를 밝힌 대목인데, 그것은 조선인에게 ‘건전한 자각’을 촉진하여 ‘합법적’으로 행동하게끔 만드는 데 있었다. 이때 ‘자각의 촉진’이라는 말은 강령 제1항을 의식한 표현으로 이해되는데, ‘정치적 경제적 각성의 촉진’을 내걸었던 그 조항이 ‘구경적 해결’(=해방)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합법적 운동’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을 역으로 읽으면 정기대회의 금지는 무엇보다도 ‘합법성’에 의혹을 야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②와 ③은 그러한 의혹을 야기한 사례를 제시한 대목으로 읽히는데, 먼저 ③에서는 ‘지회의 행동’이 지적된다. 당시 조선에서는 공산당에 대한 검거가 있었는데, 이때 체포된 당원 중 절반 가까이가 신간회 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회에 대한 지적은 이를 가리킨 것으로, 당국의 입장에서 ‘합법성’을 침범한 행동에 다름없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②에서 ‘강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 논점은 ‘공막(空漠)한 강령’을 내세운 외에 구체적인 ‘목적’이나 ‘실시사항’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그리하여 마지막 ④에서 ‘불명한 목적’과 ‘불온한 지회’ 두 가지를 이유로 금지를 내렸던 것이다.

이상 보았듯이 당국이 강령의 모호성을 지적하여 목적의 제시를 요구했던 근본에는 ‘해방’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 그렇다면 당국은 신간회를 ‘합법적’인 틀 속에 묶어두기 위해 어떠한 ‘교섭’을 진행했을까. 만약 제1항에 제시된 ‘각성의 촉진’이 ‘구경적 해결’(=해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전한 자각’(=합법)을 의미한다면, 그 뜻을 ‘강령’에 반영하여 ‘명확한 목적’을 제시하라는 것이 교섭의 요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3항에 제시된 ‘기회주의의 부인’, 즉 ‘반(反)자치주의’ 이상의 목적을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한편 강령에 대해서는 ‘지회’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정기대회를 앞두고 각 지회에서는 결의안이 작성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강령에 대한 개정이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동경지회를 예로 개정의 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⁴⁹⁾

1. 우리는 조선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해방의 실현을 기함
2. 우리는 전민족적 충역량을 집중하여 민족적 대표기관이 되기를 기함
3. 우리는 일체의 개량주의운동을 배척하고 전민족의 현실적 공동이익을 위하여 투쟁하기를 기함

‘민족’이라는 말을 사용한 점이나 ‘반개량주의’를 표명한 점 등도 충분히 문제적이었지만,

48) 「萬人矚目的 二月十五日!-新幹大會突然禁止」, 『조선일보』 1928년 2월 8일.

49) 마산지회, 김제지회 등에서도 개정안이 제시되었는데, 검열에 의해 글씨의 대부분이 삭제된 상태로 실렸다. 「新幹會各地消息」, 『조선일보』 1927년 2월 4일 및 2월 9일.

무엇보다도 ‘해방’을 내세운 점이 간과할 수 없는 불온성을 의미했다. 그것은 제국이 설정한 ‘합법성’을 깨뜨리는 위반행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회’의 개정안은 당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본부’에 대한 요구로서 제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본부는 당국과 지회 사이에서 어떻게 대응했을까. 먼저 당국에 대해서는 금지가 통보된 바로 다음날부터 논설을 통해 해명이 시도되었다. 먼저 ‘불온한 지회’와 관련해서는 공산당 검거사건이 대회금지에 영향을 미친 점에 대해서는 일정한 납득을 표시하면서도, 신간회운동이 공산당과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다.⁵⁰⁾ ‘합법성’에 저촉되는 의혹은 무엇보다도 불식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한편 ‘강령’과 관련해서는 반론을 제기했다. 정기대회를 통해 “목적과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개회도 되기 전에 이때까지의 발표가 충분치 못하였다”는 이유로 금지를 당했다. 이는 앞뒤가 안 맞는 조치로 “도리어 ‘그 목적이 나변(那邊)에 있는지’를 의아하게” 만든다. 즉 ‘공막한 강령’이란 결국 “금지하기를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신간회의 존립을 허락한 방침과 크게 모순”되는데, 신간회가 “조선인의 건전한 자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실은 “당국으로서도 이미 인정”했기 때문이다.⁵¹⁾ 이는 결성 당시의 강령으로 인가받았던 점을 지적함으로써 그 이상의 목적을 요구하는 당국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대목으로 이해된다.

요컨대 신간회가 ‘구경적 해결’이 아니라 ‘건전한 자각’을 촉진한다는 점, 다시 말해 ‘해방’과 연루된 운동이 아니라 ‘합법적 운동’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강령에 ‘반자치주의’ 이상의 목적을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성을 허락한 원점’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는 ‘합법성’이라는 점에서는 당국과 합의를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운동형태에 대해서는 당국의 의도를 거절하는 양면성을 가진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방운동’을 요구하는 지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정기대회를 금지당한 본부는 그 대안으로 창립기념식을 거행했는데, 그 소식을 알리는 글에서 신간회가 “생존운동의 장원한 도정에 있”음을 언급했다.⁵²⁾ 즉 스스로를 ‘생존운동’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앞 장에서 보았듯이 정치운동을 ‘주권이 없는 식민지’, 즉 ‘합법적 공간’에서 전개할 때에 선택되었던 개념 또한 ‘생활운동’이었다. 그것은 ‘독립’이나 ‘혁명’ 등 ‘주권’과 연루된 의미로부터 ‘정치’를 탈각시키기 위해 선택된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신간회의 주도자들이 스스로를 ‘생존운동’으로 규정했던 것 또한 이 맥락과 무관하지 않는다. ‘생존운동’을 논하는데 무엇보다 강조된 것이 그것이 “조선에 머물러서” 전개된다는 점이었다.⁵³⁾ 이 점에서 ‘생존운동’ 또한 자신의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택된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자치운동’으로까지 나아간 세력이 ‘생활’을 자칭하는 상황에서 차별성이 추구된 결과가 ‘생존’이었다고 이해된다.

그렇다면 생존운동은 ‘해방운동’과 어떠한 관계를 가졌을까. ‘생활’이 ‘독립 혁명’으로부터 탈각되었듯이 ‘생존’ 또한 ‘해방’과 단순히 연루될 수 없었는데, 그렇다고 지회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갈등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래 구절이다. 이 논설은 생존운동이 해방운동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해명을 제시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50) 「新幹大會禁止」, 『조선일보』 1928년 2월 8일.

51) 「新幹支會와 地方警察」, 『조선일보』 1928년 2월 11일.

52) 「新幹會의 創立記念」, 『조선일보』 1928년 2월 15일.

53) 「조선에 머물러서-朝鮮人の 生存運動」, 『조선일보』 1926년 12월 13일.

①朝鮮人は 그동안에 表面에 나서서 第一線에서 기 쓰고 싸우려는 것 외에 그의 뒷골목에서 차근차근하게 또 끈덕지게 힘들이는 살 길을 찾는 운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生存運動의 뒤골목! 앞 大門에서 고함치고 내닫는 것 외에 뒷골목에서 꾸준꾸준히 힘쓰는 것이 얼마나 또 尊重한 일인 것을 責任 있는 先驅者들은 깨닫고 承認하고 또 協成하여야 한다. ②이것은 알기 쉽게 말하자면 技術과 産業과 其他 生活上 必要한 일에 對하여 人間的 道德的의 努力을 等閑히 하지 않고 게을리 하지 않는 運動이다. …③(이러한 운동이-필자) 어느 點으로든지 우리의 解放運動을 間接으로 돌지라도 棼 助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한다.(번호는 필자)⁵⁴⁾

먼저 ①에서 운동은 두 계통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표면에 나서서 제일선에서 기 쓰고 싸우는 운동’ 혹은 ‘대문에서 고함치고 내닫는 운동’이다. 다른 하나는 ‘그 뒷골목에서 차근차근하게 꾸준히 살 길을 찾는 운동’이다. 생존운동은 바로 후자의 경우를 의미했다. 그리고 ③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생존운동에 간접적으로 힘을 받는 것이 ‘해방운동’인데, 그것은 ①에서 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운동이었다. 요컨대 앞에 나서 싸우는 해방운동과 뒤에 물러나 힘주는 생존운동이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양자 사이에는 시간적인 ‘서열관계’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생존운동은 해방운동에 앞서 추구할 운동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생존운동의 내용은 ②에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생활상 필요한 일’에 관계되는 것이었다. 이는 신간회의 당면과제를 제시한 논설과 연계되는데, 이는 당국이 요구한 구체적 ‘실시사항’을 제시한 논설이기도 했다. 거기서는 “첫째 농민교양에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둘째 경작권의 확보 및 외래이민의 방지”, “셋째 조선인 본위의 교육의 확립”이 제시되었는데,⁵⁵⁾ 이처럼 조선인의 ‘생활’에 직결된 ‘정치운동’이 바로 ‘생존운동’이 추구하는 바였다.

(3) 비(非)결정이라는 자기결정

앞 절에서는 정기대회를 둘러싼 당국, 본부, 지회 간의 갈등을 통해 본부에서 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생존운동’이라는 제안에 나타나듯이 당국이 설정한 ‘합법성’이라는 틀을 준수하는 운동을 추구했는데, 하지만 ‘반자치주의’ 이상의 목적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로 일관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 해에도 반복되었는데, 당국은 2주면 정기대회에 대해서도 금지조치를 내리면서 기왕의 사유를 반복했다.

다만 강령에 대한 수정요구는 한층 더 강화되는데, 종로경찰서의 고등주임 미와 와사부로(三輪和三郎)는 작년의 금지 이후 강령에 대해 “하등 수정한바”가 없다며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강령의 수정은 이제 명시적인 과제로 제시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계속되는 금지조치에 지회 측의 반발도 한층 더 거세졌다. 이에 본부에서는 당국의 요구를 넘기면서 지회에 “자중”을 요구하는 기왕의 입장으로 대응했다.⁵⁶⁾

삼자 간의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본부에서는 대안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1929년 6월에 열린 북대표대회였다.⁵⁷⁾ 이로써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열렸는데, 그 결과는

54) 「大變動이 오는 날까지-生存運動의 뒤골목」, 『조선일보』 1927년 3월 23일.

55) 「實際運動의 當面問題-新幹會는 무엇을 할까(1)~(2)」, 『조선일보』 1928년 3월 27~28일.

56) 「準備完成된 新幹會大會 昨日에 突然禁止」, 『조선일보』 1929년 3월 12일.

57) 3월 28일 대회금지에 대한 임시간사회가 열려 지회의 의견을 수합할 방침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4월 11일 경성지회에서 북대표대회에 대한 제안이 제기된 것이다.

‘사회주의’ 세력이 주축이 된 허헌 중앙집행부의 탄생으로 귀결되었다. 결성 당시의 본부는 ‘민족주의 좌파’ 세력이 주도권을 잡는 형태로 사회주의 세력이 참여했는데, 복대표대회의 결과는 세력의 역전을, 다시 말해 지회 측의 승리를 의미했던 것이다. 이는 지회 측의 행동을 주시해온 당국에게도 간과할 수 없는 결과였다.

그 영향은 곧바로 나타났는데, 광주학생운동을 계기로 민중대회사건이 일어난 것이다.⁵⁸⁾ 이때 작성된 결의문에 따르면 연설회의 개최와 그것이 금지된 경우에 바로 시위운동으로 이행할 것, 지방지회에 대해서도 행동을 요구할 것, 뼈라의 배포, 호외 보도 등 그것은 ‘3.1운동’을 방불케 하는 계획이었다. 여기에 이르러 신간회는 ‘해방운동’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제국의 임계점, 즉 ‘합법성’의 틀을 침범하는 행위로 바로 ‘탄압’이 들어왔던 것이다.

민중대회사건 이후 신간회는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탄압 후에 재조직된 김병로 본부는 반대로 ‘우경화’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이는 민족주의 우파 측에서 ‘자치운동’의 움직임이 개시된 시기와 일치하는 변화였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우파’ 간에 ‘협동’이 이루어진 순간이기도 했다. 동시에 당국, 본부, 지회 간의 갈등은 ‘자치’를 둘러싼 양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본부의 우경화 경향을 결정지었던 것은 박문희 사건이었다. 간부 중 한 명이었던 박문희는 1930년 봄 『대중공론』에 “자치문제에 관한 원고”를 발표할 계획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지방위원들에게도 “운동방침의 전환에 관한 의견”을 보냈다.⁵⁹⁾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일어났는데, 그 선두에 섰던 것이 바로 경성지회였다. 경성지회는 박문희 사건이 알려지자 건의안을 결의하여 본부에 처분을 요구했는데, 이에 본부는 “내사한 결과 우리 회의 지도정신에 위반된 점”이 없다는 답변을 제시했다.⁶⁰⁾ 여기서 지도정신이란 바로 ‘반자치주의’를 내걸었던 강령 제3항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박문희에 대해서는 결국 11월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했다.⁶¹⁾ 더구나 이때 「규약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거기에는 “지도정신에 배치되는 단체라도 당면이익을 위하여 협동투쟁을 요하는 경우에는 호상연락”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즉 ‘반자치주의에 배치되는 세력=자치운동’과의 협동이 명문화된 것이다.⁶²⁾

이에 경성지회는 본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협의하기 위해 정기대회를 열려고 했지만, 당국에 의해 금지되었다. “본부의 합법운동에 대항하여 비합법운동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온당한 대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사유였다. 여기에는 자치운동과 협동을 주장하는 본부를 ‘합법운동’으로, 이에 반대하는 경성지회를 ‘비합법운동’으로 규정하는 시각이 나타나 있는데, 결성 당시 ‘반자치주의’를 내걸었던 신간회를 ‘합법적’ 운동으로 인가했던 시각과는 확실히 달라진 것이었다. 즉 당국은 여기에 이르러 ‘자치운동’을 후원하는 입장을 명백하게 드

정기대회는 지회마다 비례대표제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었다면, 복대표대회는 여러 지회를 합쳐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수정된 것이었다. 이균영(1993), pp.161~201.

58) 10월 나주(羅州)의 한일학생 간에 붙은 시비를 계기로 일어난 시위운동은 12월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공산당 당원이자 광주지회 간부였던 인물들의 지도가 있었다. 한편 운동이 알려지자 신간회에서도 진상파악을 위한 조사단을 파견했는데, 이후 민중대회가 계획되었다.

59) 『治安狀況』(1931.7); 『新幹京城支會-通議文全文(一)』, 『조선일보』 1931년 1월 19일. 『대중공론』은 『조선강단(朝鮮講壇)』의 후신으로 발간된 종합잡지로 1930년 3월부터 6월까지 간행되었다.

60) 『新幹京城支會-通議文全文(二)』, 『조선일보』 1931년 1월 20일.

61) 견책처분이 결정되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선출된 김병로 집행부에서 위원을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62) 『新幹京城支會-通議文全文(二)』, 『조선일보』 1931년 1월 20일.

러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당시 총독부에서 본격적으로 자치를 검토하게 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이토는 신간회가 결성된 즈음부터 자치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고 있었다. 먼저 1927년 3월에 관방 문서과장 나카무라 도라노스케(中村寅之助)에게 정치적 권리 부여 문제에 관한 검토를 지시했는데, 작성된 방안을 본국에 가져가 원로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와 수상 와카쓰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郎)에게 회람시키기도 했다.⁶³⁾ 이러한 움직임은 사이토가 해임되면서 일시 정지되었지만, 1929년 8월 재임이 결정되자 재개되었다. 사이토는 이번에는 내무국장 이쿠타 기요사부로(生田清三郎)에게 검토를 맡겼는데, 이때 작성된 방안은 자치에 보다 호의적인 내용이었다.⁶⁴⁾ 사이토는 이를 다시 본국에 가져가 교섭을 벌였는데, 이러한 시도는 이듬해 봄까지 거듭되었다.⁶⁵⁾ 교섭은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일은 신문에 언급될 정도로 공언한 사실이었다.

당국의 변화, 나아가 본부의 우경화나 자치운동과의 협동까지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의 금지사유를 들은 경성지회는 “모종 운동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각 지회에 공표”하도록 요구했는데,⁶⁶⁾ 이에 본부는 「운동정세에 관한 지시의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이를 둘러싸고 경성지회에서는 ‘화해파’와 ‘반대파’의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다.

화해파는 공문에서 “수립한 강령과 기본인 정신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이에 용훼(容喙)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암암리에 사죄한 것”으로 받아들여 불신임안의 취소를 주장했다. 앞서 보았듯이 강령과 기본정신, 즉 ‘반자치주의’를 준수한다면 더 이상 문제 삼을 것이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대파는 이와 다른 문장을 문제 삼고 있었다.

公文에는 아래와 같은 句節이 있다. “元來 新幹會의 組織自體를 보아서 民族的 各層派 各의 鬭爭 要求를 通하여 當面利益을 爲하여 鬭爭의 可能한 最大限度의 戰畧을 가질 뿐이요!” 民族의 當面利益이란 大體 무엇인가? 우리 會는 적어도 一定한 目標를 爲하여 鬭爭하는 團體요 決코 當面의 利益만을 爲하여 鬭爭하는 團體가 아니다. 可能한 最大限度의 戰畧이란 무엇인가? 우리 會는 오직 우리의 目標를 爲하여 突進하여야 할 것이요, 決코 可能 不可能을 標準치 않는다. 이러한 公文으로써 解消運動을 反對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만일에 新幹會가 本部公文의 規定과 같다면 우리로도 解消運動의 先鋒됨을 어찌 주저하라?⁶⁷⁾

반대파가 문제 삼았던 것은 ‘당면이익’을 위해 ‘가능한 최대한의 전략’으로 투쟁한다는 문

63) 「朝鮮在住者の國政並地方行政參與に關する意見」 『齋藤實關係文書』 書類の部 1, No.71-13; 齋藤子爵記念會 編, 『子爵齋藤實傳』 第2卷(齋藤子爵記念會, 1942).

64) 「朝鮮に於ける參政に關する制度の方案」, 『齋藤實關係文書』 書類の部 1, No.75-5. 검토는 ‘제국의 회’ 참여안과 ‘조선의회’ 설립안을 놓고 장단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65) 1929년 12월에 상경했을 때 만난 인물은 수상 하마구치 오사치(浜口雄幸), 적무대신 아쓰다 겐지(松田源治), 내무대신 아다치 긴쥬(安達謙蔵), 농임대신 마치다 추지(町田忠治), 육군대신 우가키 가즈나리(宇垣一成), 경시총감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 추밀원 서기관장 후타가미 효지(二上兵治),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 등이다. 1930년 2월에도 수정방안을 가지고 상경했는데, 이때에는 의회설치를 권장하되 내지연장주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는 등의 수정이 이루어졌지만, 본국의 반응은 여전히 신중하여 결국 지방자치에 대한 개정만 받아들여졌다. 교섭의 경위에 대해서는 李炯植(2013), p. 239. 수정방안은 「參政權問題 朝鮮に於ける參政に關する制度の方案」, 『齋藤實關係文書』 書類の部 1, No.75-7.

66) 「新幹京城支會-通議文全文(三)」, 『조선일보』 1931년 1월 21일.

67) 「新幹京城支會-通議文全文(三)」, 『조선일보』 1931년 1월 21일.

구였다. 앞 절에서 보았듯이 ‘생존운동’은 ‘생활상 필요한 일’을 위해 투쟁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위의 문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파의 입장은 ‘생존운동’과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그들은 공문에 반대하여 ‘해소운동’을 주장했다. 그렇다면 해소운동의 ‘목표’란 무엇인가.

이는 공산당 재건운동에서 나타난 해소론과 관련이 있는데, 이 경우의 목표란 바로 상실된 ‘혁명성’을 회복하는 데 있었다.⁶⁸⁾ 즉 해소론은 또다시 ‘해방운동’이 등장했음을 의미했는데, 이번에는 신간회의 방향을 주도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소멸시키는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다시 말해 ‘합법적 정치공간’의 소멸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은 처음으로 전체대회의 개최를 허락하게 된다.

합법운동에 대한 본부의 전향과 각 지회의 찬반론의 대립은 점차 내부적 통제를 잃어 본 대회를 용인해도 치안상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회를 조종하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본 대회를 개최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얻는 바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용인하기로 했다.⁶⁹⁾

신간회 자체가 해방운동으로 몽칠 수 있었던 이전의 상황과는 달리 자치와 반자치, 그리고 해소 사이의 갈등이 신간회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체대회를 열어도 치안상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전제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 당국의 숨은 의도가 드러난 문장으로 이해된다. 즉 전체대회를 통해 신간회가 당국에 유익한 방향으로 조종될 가능성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 방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적혀있지 않지만, “당초 비해소파의 거두 김병로는 대회를 자파에 유리하게 이끌 자신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다고 기록된다.⁷⁰⁾ 하지만 결국 결과는 해소파의 승리로 끝나 신간회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상 보았듯이 복대표대회와 민중대회사건 이후 신간회에서는 ‘자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간회 본부의 우경화와 민족주의 우파 측에서 재개된 자치운동의 움직임은 총독부에서 본격적으로 자치안이 검토되고 본국 정부와 교섭을 벌이는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결성 당시의 협동전선을 궁지에 몰리게 하는데, 특히 해방운동을 요구했던 흐름이 해소운동으로 변모하면서 생존운동의 역량은 더욱더 협소해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주의 좌파세력이 추구했던 생존운동이란 어떤 함의를 가졌을까.

생존운동을 둘러싸고는 ①해방운동에 대한 의혹을 근거로 보다 온건한 목적-자치운동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당국, ②목적은 자치운동에서 찾아 준비를 진행하는 세력, ③어디까지나 해방운동을 요구하고 해소까지 나아가는 세력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생존운동의 대응은 먼저 ③에 대해서는 운동에 시간적인 서열을 설정함으로써 생존운동의 우위성을 주장했으며 ②에 대해서는 늘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조짐이 보일 때마다 항의와 함께 ‘반자치주의’ 원칙을 확인시켰다.

그리고 ①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해방운동’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도 강령을 수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반자치주의’를 준수하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요컨대 생존운동이란 제국이 설정한 합법성이라는 틀 속에 스스로 포섭되면서도 제국이 요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계

68) 공산당재건운동과 해소론에 대해서는 이균영(1993), pp. 444~461.

69) 『治安狀況』(1931.7)

70) 『治安狀況』(1931.7). 김병로파는 지회에서 올라온 대표들에게 자격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비해소파를 다수로 만드는 계획을 세웠지만, 해소파의 반발로 실패했다.

속해서 결정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그것은 결코 소극적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대응은 아니었다. 2장에서 보았듯이 ‘합법적 정치운동’이 처음으로 시도되었을 때, 다시 말해 1차 연정회 계획에서 ‘생존운동’이 천명되었을 때, 그것이 목표로 내세웠던 것은 ‘자기결정’이었다. 생존운동이 결정을 회피함으로써, 다시 말해 비(非)결정을 통해 고수했던 것 또한 ‘반자치주의’라는 운동형태상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자기결정’의 영역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맺으며

본고에서는 종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그 존재의의를 인정받았던 ‘신간회’를 비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중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신간회를 ‘협동전선’이 아니라 ‘각축장’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의 유용성을 논증했다. 신간회가 갖는 각축장으로서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민지조선에서 ‘합법적인 정치공간’이 형성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합법성’은 흔히 친일적인 운동이나 타협적인 운동과 친화적인 말로 이해되며, 그 이면에서 비타협적인 운동에 대한 ‘저항성’이 강조되었다. 즉 합법성과 저항성은 친일과 반일, 혹은 타협과 비타협의 관계만큼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이러한 인식 자체가 민족주의적 정통성을 인정받은 특정 세력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했다. 바로 신간회도 이러한 인식에서 그동안 합법성을 면제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식민지조선에서 전개된 운동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합법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간회 또한 합법적인 정치운동으로서 전개되었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신간회의 ‘타협성’을 역으로 주장하는 수준의 논의로 그칠 것인가. 본고의 의도는 어디까지나 기존의 대립적인 관계인식을 극복하는 데 있다. 합법적 정치공간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합법성이란 결코 통치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틀은 분명히 통치자에 의해 설정되었다. 3.1운동의 충격으로 흔들리는 제국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선의 민족운동을 ‘주권’에 저촉되지 않는 형태로 탈바꿈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합법성을 ‘주권’에 대한 ‘탄압’과 ‘비주권’에 대한 ‘교섭’을 겸비한 틀이었다.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 운동을 추구하는 측에서도 ‘비주권’의 맥락에 들어와 ‘합법적’ 운동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은 식민지 상황에서 ‘정치적 세력화’를 모색한 움직임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스스로를 ‘정치적 주체’로 존립시키는 시도였다고 이해된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비주권성’이 이미 전제된 주체로, 오히려 ‘비주권적’인 맥락에 들어와야지만 ‘주체화’될 수 있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시도는 ‘민족주의’로 불리는 세력에서부터 나타났다. 「민족개조론」(1922), 그리고 「민족적 경륜」(1924)은 그러한 흐름을 잘 보여주는 분기점으로서 의의를 갖는데, 전자는 ‘합법적 운동’을 둘러싸고 합의되는 지점을 보여줬다면, 후자는 합법적 운동이 ‘정치화’되는 지점을 보여줬다.

한편 ‘사회주의’ 측에서 합법성을 향한 움직임은 「정우회선언」(1926)을 분기점으로 나타났다. 이 시점에 민족주의 세력에서는 통치 측의 정치화(1925)와 맞물려 ‘자치운동’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신간회는 이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세력과 합법적 정치운동을 향한 방향전환에 동의하는 사회주의 세력이 합동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단체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분명히 ‘협동전선’이었지만, 신간회를 둘러싸고는 합법적 정치공간에 이미 들어와 있던 세력들이 저마다의 의도를 가지고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것이 본고에서 신간회를 특정한 세력에 점유된 ‘협동전선’으로서가 아니라 여러 세력들의 의도가 뒤섞인 ‘각축장’으로서 파악하는 중요성을 주장했던 까닭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각축장’으로서의 신간회에서 ‘협동전선’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어떠한 운동을 전개했는지를 추적했다. 그것을 통치자, 민족주의, 사회주의 각 세력 간에서 형성된 복합적인 갈등양상을 통해 밝혔는데, 협동전선을 주도했던 민족주의 좌파세력에서 강조했던 것은 바로 신간회를 ‘생존운동’으로서 이끄는 방향이었다. 이는 ‘주권’에 저촉되는 ‘해방운동’을 견제하는 제안이었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제국이 설정한 ‘합법성’의 틀 속에 위치시키는 주장이었지만, 그런 한편으로 통치 당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결성 당시의 ‘반자치주의’를 고수하는 대응으로 일관했다. 그것은 ‘자치운동’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루는 형태로 거부권을 발동하는 행위로, 그러한 의미에서 비(非)결정을 통해 ‘자기결정’을 수행했던 것이다.

신간회에서 ‘협동전선’을 주도했던 세력이 ‘생존운동’을 주장하면서 ‘자기결정’을 수행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함의를 갖는다. 합법적 운동이 정치화되는 맥락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생활운동’을 주장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연정회’라는 단체로 나타났다 더구나 후일에 ‘자치운동’을 모색하게 되었기 때문에 ‘신간회’와 상반된 움직임으로 이해되어왔다. 하지만 ‘주권’에 저촉되는 개념들—독립, 혁명, 해방—로부터 ‘정치’를 탈각시키는 맥락, 그 대안으로 ‘생’(生)과 관련된 개념들—생활, 생존—과 연계되는 맥락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치운동을 ‘비주권적=합법적’인 맥락에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었다면, 거기서 추구된 것 또한 ‘자기결정’이라는 점에서 동일했다.

이처럼 ‘주권’이 아니라 ‘삶’을 대안으로 식민주의적 폭력에 대항하는 것이 합법적 정치운동의 핵심이었다면, ‘민족주의적’ 의미로부터 해방된 ‘저항’의 가능성이란 바로 여기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본고가 이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그러나 구체적인 제안이 되었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의 정치를 위한 공화주의

이재호

진주교육대학교

<목 차>	
I. 머리말	2. 인권정치의 공간적 지점들 3. 인민주권과 비지배로서의 공화주의의 실천가능성
II. 인권의 지형과 공화주의 1. 인권이 정치다 2. 공화주의의 재개념화	IV. 한국에서 인권의 정치를 위한 공화주의 1. 한국에서 민주공화주의 2. 한국 인권의 정치 지형과 실천
III. 인권의 정치와 공화주의의 상호성 1. 인권의 정치에 대한 시각과 원리	V. 맺음말

I. 서론

1. 연구주제와 문제제기

이 글은 자의적 지배가 없는 공화주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인민이 차별 없이 개입할 수 있는 인권의 정치에서 발원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한국은 사회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기업군들과 보수적 매체, 냉전적 보수의 의회와 사법체계는 민주공화와는 유리된 사회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의 경제적 상황은 OECD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선진국이다. 그러나 정치사회적인 조건과 불평등은 결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는 ‘인간 조건’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실존’은 너무도 불안하고 불공정한 현실이다. 또한, 민주화 이후 정부교체와 민주정부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념적 사회경제적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갈등의 제도화를 통한 사회문제·인간 문제의 해결수준 역시 더욱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대표체계와 사적 지배관계의 제어가 상호 규정력을 가질 필요성은 이제 긴급하다. 모든 문제의 해결에 있어 이미 규정된 범주에 적용함으로써 담을 쌓는 것은 주된 기능적 지식과 원리들의 한계다. 기본의 제도와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모든 정치적 사유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사유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경쟁과 이윤 논리가 시장 영역을 넘어 한국사회 전 영역을 조직하는 규제적 원리가 되면서 빈곤과 실업 같은 경제적 불평등의 시작은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연대와 민주정의 훼손 문제 역시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인권에 대한 논의는 규범적 차원에서 인권의 정당성과 수용에 대한 보편성의 문제, 그리고 법적 제도화의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려는 방안 등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최근에는 인권이 규범적인 법·제도 등의 영역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려는 논의 범위가 점차 넓혀지고 있다. 즉 이제 인권의 문제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와 욕구, 그리고 인간과 관계되는 물질적 조건 등을 포함하는 전체와 관계되는 것이다. 이제 인권은 특정 유형이나 목록화된 내용을 갖는 것이 아니며, 인권의 발전도 제한된 몇 가지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인권은 동태적으로 인권목록을 가지며 위정자의 시혜에 의해서 보장되지 않는 각자와 법과 제도, 그리고 인권정치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 논문이 전제로 하는 인권정치는 인권영역의 현실인식과 인권신장을 위한 실천의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인권의 근대적 전개 과정은 필연적으로 정치체를 형성하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 양상을 둘러싸고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즉 인권정치는 특정한 인권상황이나 조건 속에서 전개되는 주체들의 행위와 이와 연관된 사회적·정치적 관계의 총합이다. 한국에서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거듭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만 있으려고 하는 미국학계의 공화주의적 수정주의만 편향되게 수입하거나 논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인권을 위한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하는 공화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규범에 대한 해석을 독점하거나 중립화하는 작업은 특정 시공간에서 특정한 태도를 승인하는 은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사상이나 철학은 전통이 주는 권위를 무조건적 수용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운 경험, 혹은 진정한 정치적 경험을 담은 새로운 범주와 개념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인권영역의 동태성을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인권정치가 기획해야 할 정치형태를 공화주의에 의존하고자 한다. 정치공동체의 규범이 억압 기제가 아닌 공공선과 개체성이 실현되는, 정치적 능력과 행사의 동등성과 참여와 비지배가 핵심인 공화주의는 엘리트주의와 대표와 책임성에서 유리된 대의제를 대체 및 보완할 수 있는 정치형태다. 한국에서 공화주의의 논의는 미국학계와 미국정치의 로크식 원칙이 개입된 ‘공화주의적 수정주의’와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의 소개와 적실성만을 부여하려는 무리에서 활발한 삶의 현장에서 논의되지도 못하고 말았다. 즉 인권을 위한 정치와 제도의 논의가 아닌 주어진 규범을 어떻게 정당화하느냐에 논의인 ‘자유민주주의’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실패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었다.

현재 한국사회는 국내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를 둘러싼 이념 갈등,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빈부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등에 의해 전사회적으로 분열 과잉현상에 당면하고 있다. 인권은 20세기 문제이자 현재적 삶의 지향점을 향하는 인간들의 자기 발견이다. 국가는 사람들의 권리보호 주체이자 객체이기에 형태와 행태는 삶의 질과 방향에 본론적인 의미가 있다. 절차적/제도적 민주주의가 성숙된 국가에서도 특정한 가치와 이념에 의해서 개인들은 권리의 주체로 있지 못하거나, 20세기 후반에 진입된 경제에 경도된 자본주의의 정치적 표현에 불과한 자유주의에 의해 여전히 의사결정과 정치적 태도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인권은 인간 존엄성이라는 추상적이고 본원적인 권능에 의해서, 공화주의는 여전히 귀족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대의제, 그리고 교환과 참여에 독점성을 보이는 사적·공적영

역에 대한 논의를 공개와 덕성을 함양함으로써 추상적인 전망보다는 실질적인 예측이 가능한 가치와 제도를 추구함에 이 연구의 목표가 있다.

서구사회는 다양한 갈등을 수용함과 동시에 이에 적실성을 갖는 이론을 섭렵하려고 한다. 그러나 정치·경제적으로 상이한 경로를 걸어온 한국 사회에 서구의 이론과 분석을 ‘문제의 진단과 처방, 그리고 치료과정’까지 서구의 경험과 이념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실수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더 큰 오류다. 또한, 한국사회의 빛과 그늘, 밝음과 어둠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엘리트와 대중, 집단과 집단, 지역과 지역 간의 극히 상반되는 현실 모습은, 인간적인 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좀 더 발본적인 해법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사회의 문제를 사실적 객관성과 실현 가능성의 범주로 접근할 때 개혁과 혁명,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제도요인에 주목하게 된다.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의 주체성과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권에 기초한 공화주의를 강조하고자 한다.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논의함에 공공선을 우선하는 권리의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학계 일각에서 강조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심화’나 합리화, 즉 ‘민주주의의 민주화’ 등을 통한 접근방식은 그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개체는 존엄하고 이 존엄한 개인은 결코 공동체와 분리된 개체가 아닌 상호성을 갖는 개체여야 한다는 것, 인류의 역사는 인권과 이에 대한 반응으로 법의 갈등이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시공간의 장이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개인화된 삶의 방식에서 개인의 책임으로 치환된 공공의 과제에서 부상되는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에서 그 바람직한 인간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인권의 정치에서 구해서 그 실현 이념은 공화주의에서 그 실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민주주의의 원칙은 개인의 자격은 인권에 의해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고 운영은 법치에 의해서 모두가 참여하는 해법을 공화주의에서 채택함으로써 자유주의의 편협한 작동을 변경한다는 기획이다. 새로운 갈등과 가치의 충돌과 공존은 인권의 정치에서 그 가능성과 실현성이 모색된다. 공화주의의 이상은 공허한 당위론도 아니며, 현실에서 무력하지도 않다.

본 글에서는 민주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를 대립개념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시대와 상황에 따른 긴장 또는 결합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본다. 또한, 인권의 상황은 종결적이지 아닌 현재진행형이나 미래에 출현할 가능성이 큰 영역이기에 이를 실현할 공화주의에 대한 정치적 원칙을 고민하고자 한다. 그래서 공화주의는 다른 모든 원칙이 파생되고 그 내용이 좌우되는 이념적 좌표 또는 제1원칙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II. 인권의 지형과 공화주의

1. 인권이 곧 정치다

1) 인권의 개념과 실천

인권은 자연법적 토대에서 출발하든 정치적 투쟁의 결과물로서 인식하는 “인간은 자기 지배의 원리로 그 존재 차제로 인정되어야 하며 타자로부터 어떤 가치나 이념에 강제되지 않

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 인권은 정치 이후의 권리이며 공동체적 속성과 때론 대결적이지만 공동체 능력과 규범력의 영향 아래에 있게 된다. 또한, 사회계약론적 입장에서의 정치적 주권의 문제와 관련한다. 역사적 과정은 인권의 관념과 그 구체적 내용이 추상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면한 정치적 주권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변해왔기 때문이다. 자연권 사상에서 오는 도덕적 요청과 사회와 정치 관계의 발생에서의 인간의 자기 보존 욕구에서의 필요가 투영된 것이다.

인권은 자연성과 평등성, 그리고 보편성과 존엄성을 인간 각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다. 권리는 방어적이거나 배타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공적 토의의 행위를 통해 그 권리의 정당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또한 보편성은 어떤 기준이나 원리라는 실체가 아니라 서로 간의 논의 과정 자체에서 나온다...¹⁾ 권리투쟁이나 승인이 아닌 인간이 생존하는 것 자체가 제일의 과제가 될 때, 삶의 목표가 살아남는 것이 될 때, 타인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작아진다. 그리고 이 경우에 ‘너와 나’, 혹은 ‘우리’는 존재할 여지가 없게 된다. 정치사회는 붕괴되고 우리는 모두 ‘자연상태’로 되돌려진다. 어떤 책임이나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또한 자연상태에서 유도하는 인권은 신흥자본가들의 정치적 입장만을 축약한 이념으로 제한되는 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을 자연상태에서 자연권의 보장 때문에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임을 전제로 했지만, 이성적이고 자립적인 존재만을 그 대상으로 했다는 시대적 반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권을 인간의 물질적 존재 상황, 인간의 가치와 욕구, 그리고 여러 사회세력이 맺는 역학관계를 통해 구성되는 정치적·사회적 실천의 산물로 인식하도록 한다. 너와 내가 ‘거리’를 갖는 자율적 주체이면서도 내가 너에게 네가 내게 시민적, 인간적으로 힘이 되는 삶의 동료애를, 같은 정치공동체 안에 터 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적, 인간적 동료애를 갖고 있는가. 신자유주의 체제에 살고 있다.²⁾ 이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차별적 배제에 있다.

권리는 근본적으로 자치에 관한 것이다. 즉, 보편적, 자연적 권리, 또는 인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존중과 자치의 개념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그들이 받아 마땅한 존중을 수립하고 확보하는데 있어 능동적인 책임자들로서 여기는 것이다. 인권은 자기 결정권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이 동등하게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둘 모두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매우 잘 알고 있는 권리의 모든 그 불평등들을 발생시킨 것은 물론, 후자의 불완전한 발전이다. 우리가 생략하거나 의도적으로 방관하는 문제가 생존보다 자유의 도덕적 실천을 주장한다는 그것은 더욱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가 생존보다 더 선차적이거나 우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유권이 생존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비인간적이지 비논리적이다. 그래서 인권은 모든 사람에 대한 ‘보편적 존중’이라는 도덕 원칙에서 도출될 수 있다는 도덕적으로 실천적으로 자유나 자유권보다 근원적이지 더 상위이자 당위로 취급될 수 있다. 인권이 상위의 규범인 것이 그 핵심에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 그것도 사람들 스스로가 서로서로 주고받는 그런 존중의 원칙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1) 박주원, “인권의 ‘정치적’ 재구성,” 『현상과 인식』, 제37권 4호(통권 121호, 2013년 겨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p. 31.

2) 한국사회에서 ‘자유주의’(liberalism)는 반공주의, 시장주의와 결합함으로써, ‘보수’, ‘방중’, ‘기득권’, ‘승자독식’ 등 부정적 가치를 재생산해 온 것이 사실이다.(이나미,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책세상, 2001.) 그러므로 서구에서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경도는 부재한 셈이다. 또한, 자유경쟁만이 자유주의라는 주장도 사실과는 다르다. 그런 점에서 자유주의 특유의 자연권, 계약론, 공리 등은 서구와 유사하지만,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한 점이 한국의 자유주의 특징이다.

한국의 인권 보호와 침해는 양극단적이다. 우선, 인권침해가 이뤄지는 첫 번째 요인은 가부장적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개체성의 승인을 불가능한 구조임과 동시에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였다. 개체성이 부재한 조건에서 사회 관계적 승인과 존중은 어쩌면 당연했고 자신을 넘어서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조망할 원형질은 존재할 수 없었다. 두 번째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이 가져오는 인권에 친화적인 이념이 자리할 시공간은 불가능했다.³⁾ 또한, 친자본주의적 영향으로 자리한 시장주의는 결과와 효용의 극대화 원리만 강조할 뿐 노사 간의 조화와 거대기업군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은 불가능했다. 초극단적 경쟁이 사회발전과 인간발전의 효과성만을 기대했기 때문에 강자와 지배자의 논리만 남게 되는 사회 다원주의는 설 자리가 없었다.

이러한 구조적 폭력이 행해질 시공간을 해소할 인권 보호와 이를 보장할 사회적 의식이나 법률적 장치나 제도는 지극히 미비했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인권에 관한 인식들은 마련되었지만, 적대적 차별이나 편견에 대한 법률적, 윤리적 억제장치가 미흡한 상태다. 한국사회는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정치 문화적 엘리트중심주의가 갖는 구성상 특성은 인권친화적인 규범화로의 이행엔 미흡한 상태다. 형식적 평등의 한계원리에 실질적 평등이 포섭되어⁴⁾ 엄격히 그 한계 속에서만 기능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규범이 권위적일수록 사회적 약자나 인권에 대한 친화성은 감소할 것이다. 시민의식 수준과 사회제도의 민주성이 높다면 인권침해는 감소하고 인권은 신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사회경제적, 혹은 정치문화적 인식이나 제도적 틀 때문에 가능하다. 반면에 국가기구의 설치와 정치의 민주화와 시민의식의 성장과 이에 따른 사회적 다원화는 인권의식과 인권발전에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2) 인권의 보편성과 제도화

한국 사회는 동일한 언어와 민족, 그리고 엘리트주의적 사회체제와 가족주의에 기초한 집단성에 의해서 인권에 적대적이거나 소극적인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다. 권리는 단지 선언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배 대 해방, 소수의 자유 대 다수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쟁투의 동학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창조되고 인정된다. 한국의 정치사에서 민이 정치의 주체로 역할 했던 점이 부재하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민적 주체는 사익을 추구하는 소수의 특권과 기득권 세력의 지배체제에 대항하는 싸움을 통해서, 지배체제를 균열시키고 그 벽-그 균열된 지배체제의 벽-과 경계를 허무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 평등, 자유, 정의, 연대, 공동선은 이러한 쟁투의 과정을 통해 창출돼 왔다.

인권과 주권은 모든 정치적 행위들을 규율하는 “살아있는” 규범체제이다. 주권은 국가 내의 권력기관들 정당화하는 원리로 존재할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제하고 제어함으로써 국가이성과 국가 정당성의 범위 내에 존재케 하는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다. 국가권력이든 사적 권력이든 분산되고 분립되었을 때 또 사회조직이 수평적일 때 인권이 보호될 개연

3) 국가안보의 강조는 집단주의와 국가주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오늘날 ‘국가안보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신념체제가 되었다. 한국에서 반공주의와 결합한 국가안보주의는 그 어떤 이념보다 인권을 질식시켰다. 조효제, “한국의 반공주의와 인권,” 김동춘·기외르기 스켈·크리스토프 폴만(외), 『반공의 시대: 한국과 독일, 냉전의 정치』(서울: 돌베개, 2015)

4) 주류 정치철학들이 인간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이성적 존재로 전제하는 것이 허구적이며 이상적임을 설파해야 하며 오히려 사회구조 속에서 불완전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론적 실체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취약성을 매개로 주체개념을 재구성하여 차별금지라는 문서상의 형식적 평등의 차원을 넘어서는 실질적 평등을 평등의 진면목으로 간주해야 한다.

성은 커진다. 인권의식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당연시하는 현실을 적절히 문제화할 수 있는 눈을 길러 주고, 존재하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부적절한 상황과 조건을 직시하게 해주는 능력을 키워준다. 또한, 구조적 폭력의 피해자가 인권에 호소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모든 ‘인권’은 국가의 자기 억제 의무(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의무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상호 작용을 하면서 특정한 인권을 실현한다. 국가나 법은 인간의 권리를 지키고 인간의 행복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인권의 실현은 법률적 보호장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회구조의 전환을 위해서이어야 한다. 모든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하나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모든 권리를 연결시켜 모든 사람이 인권보호를 받아야 한다. 근대성/ (탈)식민성 기획의 학자들이 ‘무감각한 이성’이 ‘권력의 식민성’의 밑에 스며들어 식민주의가 끝났음에도 후기 식민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지배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인권의 제도화는 인권의식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척도가 되며, 공식적인 법률로 제정된 인권의 내용을 의미한다. 제도를 공식적인 법규범으로 보면 제도화는 결과물로서 입법뿐 아니라 결과물인 입법의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제도는 단지 법규범을 제정하는 과정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문화와 가치의 변동이나 변화를 견인하기 때문에 ‘제도’와 ‘제도화’는 사회변동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 인간이 의도치 않는 우연성에 의해서 제도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의도와 선호를 반영하는 의식적인 산물이 제도와 제도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제도는 조직과 사람들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유도해내는 함의를 갖지만 좋은 제도란 미리 설정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인권은 모두에게 법적 제도화를 도덕적 의무를 지우는 일이라 할 수 있다.

2. 공화주의의 재개념화

1) 공화주의는 어떤 것을 대표하는가?

공화주의는 특정 지배세력이나 이념에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의 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누구라고 해서 배제하고 억압하는 게 아닌 누구나 참여해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비지배적 속성’과 ‘비지배적 자유’를 핵심으로 한다. 그래서 공화주의에서는 인권을 위한 확정적인 인권의 보편성을 갖지만, 특수한 인권만을 승인하지도 않는다. 결국, 공화주의는 정치적 자유, 동등한 권리로서 정의, 우정, 법치, 공공선, 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더 핵심 쟁점으로 들어가 말하면 공화주의는 한편에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공의 일에 관심을 두고 공공선,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는 것을 기본가치로 삼는다. 또한, 공화주의의 또 다른 기본가치는 지배로부터 해방된 정치적 자유와 동등한 권한이다. 결국, 공화주의는 특정 국가의 구성원이 자의적인 지배에 예속되지 않고 동등하고 자유로운 주체들로서 공통의 공간을 구성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⁵⁾ 그러므로 정치체제에서 분리된 개체는 인간다움의 지

5) 공화주의에서는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의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키케로는 “...그렇지만 왕의 치하에 있는 인민들에게는 전체적으로 많은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데, 우선 자유가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의로운 주인이 있을 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아무도 없을 때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Marcus Tullius Cicero, De re publica, II 23.43 (번역은 Cicero, 국가론(김창성 옮김), 한길사, 2006, 186-187쪽 참조)

위를 갖지 못한다. 인간은 정치행위를 통해서 실천적 지혜와 탁월성을 발휘할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민주정과 공화주의를 적절하게 결합한 방식이 대의제인데, 대의제는 공화주의가 갖는 개인의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즉 대의제의 구조적이고 구성적인 한계는 대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세습이 아닌 선거를 통한 능력으로 인민들에게 선택된 ‘자연귀족’에 의한 통치를 승인하고, 탁월한 사람이 인지될 수 있는 자유와 공공선의 창출을 위한 양질의 심의를 보장받으려는 고전적 공화주의의 접근도 인민주권과 친화적이지 않다. 시민의 이해를 위해서 봉사하고 책임을 지며 통제를 받지만 책임과 반응성이 부재한 권력행사로만 대체되는 게 현재의 대의제다. 오늘날 대의제에서 대표자의 행위는 단순한 대행이 아니라 완전히 자율적이기에 시민과 분리된 의제와 의사결정과정을 갖는다. 게다가 선거로 당선되는 대표자들이 그들의 시민들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전제를 만족시켜주는 것도 아니다. 대의제의 전제는 대중들은 그들의 문제에 토론능력과 심의할 능력이 없다는 가정이라면 폐기되어야 한다. 대중들은 오늘날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되고 있으며 모든 의무에서 면제되는 항목이나 목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나 공간이 없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개념과 제도의 시원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정당성의 강제적인 승계일 수밖에 없다.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대의제의 목적은 사라지고 단지 국가권력을 통한 귀족제적인 요소로 상속적인 기득권의 이해만 보장되는 모습만 남아 있다. 결국 대의제는 비지배적 관념이나 시민자치와는 유리된 위임된 권력으로 시민을 억압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적 공화주의의 핵심인 ‘비지배적 상호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체화하면서 고전적 공화주의를 승계하는 동시에 새롭게 재개념화된다. 첫째,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라 자유로운 행위가 가능한 조건이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 집단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정원칙이다. 시민들 모두가 자의적 지배로부터 자유롭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 이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갈등상태에 있는 쌍방이 서로의 이해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기존의 힘의 불평등이 변경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때 드러나게 된다. 둘째, 비지배적 상호성은 국가로부터 동일한 대우를 보장받는 소극적 시민성에서 사회적 권리의 제도적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정치적 견제력을 보장받는 민주적 시민성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 비지배적 상호성에서 자유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은 상호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시민에게 부여될 때 확보된다. 셋째, 비지배적 상호성은 원칙의 반복된 적용을 통해 ‘타인의자의적 지배로부터의 자유’가 시민들의 행위의 준칙으로 내재화되는 과정을 또한 하나의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 대립하는 사회세력들이 헌정질서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대립상황에 있는 상대방을 자기와 동일하게 배려하는 자세이다. 이때 비지배적 상호성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개인 (또는 집단)과 국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관된 정치적·도덕적 판단근거로 전환된다.⁶⁾ 그러므로 오늘날 재개념화한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공화주의 국가에서 허용된 삶의 선택들을 조건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며, 비지배는 개인들과 공동체의 목적이 타인들의 삶에 임의적인 간섭 없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구상하는 것이다.

2) 자유주의와 대의제의 대안으로서 공화주의

엘리트들은 공화주의적 논의와 재구성이 가져오는 결과를 민주와 참여의 과잉이 가져올

6) 곽준혁,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3호, 한국정치학회, 2005, pp. 50~51.

위험을 경계한다. 특히 공화주의는 불평등을 통제하려는 의지를 갖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권의 보편성의 한계인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급적 차이가 인권의 보편성을 확보했고 오늘날 기본권과 법률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는 불균등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력의 불평등성이 그 출발지다. 그래서 인권을 자연법적 원리에 의존하는 무제약적인 것이 아닌, 사회 체제를 구성하는 중층성과 상이한 가치관에 따라 바라보아야 한다는 인식을 제기된다.

공화주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전반적 운영의 원리나 삶의 양식으로 이념이 공적 관념이 한국적 토양에 토착화되지 못한 것이 민주공화국이 일그러져 있는 원인이다. 또한 정태적 정치과정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부단한 구성의 정치로서 ‘공화주의화’(republicanization)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 영웅이나 지도자 1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다수가 모두 포함되는 사람들에 의해 특수한 맥락에서 무엇이 올바른 일인가를 판단할 때 이성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다른 원칙들을 심의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원칙이어야 한다. 우리가 사유적 삶의 틀 속에서 제기되어 온 핵심적인 문제가 ‘어떻게 다수의 인간이 각자의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일정한 틀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라면 다수와 개체, 그리고 자유도 공동체 범위에 있어야 한다. 이는 곧 정치이지 지배나 통치, 그리고 자비가 아니다.

국가공동체에서 제도는 단순히 강제적 힘에 의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이거나 때론 공식적으로 정당성을 바탕으로 지속된다. 그래서 제도는 정당성에 부합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렇지 않다면 부정되는 권위를 갖는다. 결국, 인권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이해를 처리하기 위한 규범을 만드는 데 최고의 범으로 기능할 것이다. 현실에서 인권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정치적 논쟁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인권의 자연법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담론을 도덕적 담론에 종속시키는 것도, 인권을 법과 제도의 틀로 제약하는 것도 시민의 자기결정권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못하다. 인권은 다양한 삶의 상호성에서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해석되고 수정된다. 동일하게 법은 그 법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동의와 합의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며, 법을 통해 부여되는 권력은 그 합의에서 나오는 힘이다. 법은 현실에 제도화되어 나타난 특정 조항을 넘어 사람들 사이에서 그 변화와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와 규범 및 관습을 통칭한다. 그러므로 삶의 조건이나 행태가 변하면 규범의 내용도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며 그 생명력을 갖게 된다. 오늘날 권력의 문제를 정치경제적 구조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가치, 해석, 정신적 지향, 문화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면 법은 현재성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인권의 제도화 주체는 국가였지만 공화주의 망 속에서 개인과 시민사회로 전환시켜야 한다.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단지 결과 중심의 법률적 제도가 아닌 정치과정 중심인 공화주의여야 한다. 인권을 증진시키는 문제는 법에 의한 제도화의 방법과 정치적 실천을 통한 운동의 방법이 긴밀한 연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는 구체적 인권상황, 제도화 주체의 의지, 인권운동의 세력의 역량 등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형이 항상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며, 전체 정치문화의 지형 속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을 통한 인권의 제도화는 인권 실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하나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⁷⁾ 인권의 제도화가 전체가 아니고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인권이 국민국가 단위의 특정 공간적 상황에서 항상 최우선의 가치로 현실화되지 않는 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 중심주의인 현재적 구조에서

7) 김기곤, “인권정치의 공간적 해석,” 『민주주의와 인권』(제10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0, p. 60.

인권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민주성의 강화인 공화주의가 답을 줄 수 있다.

강자의 아량으로 약자가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개성을 추구할 수 있는가? 정부 형태와 무관하게 자유의지와 실천을 보장받는가? 권리의 요구로서 ‘권리의 정치’는 주체화의 양식으로서 ‘정체성의 정치’와 결합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새로운 쟁점이 발생한다. ‘권리의 정치’가 정당성을 얻으면서 ‘보편적 인권’의 내용이 정치적 운동과 실천의 문제로 귀결될 때 등장할 수 있는 ‘권리들’ 간의 충돌이다.⁸⁾ 따라서 ‘윤리적인 것’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올바른 ‘존재방식’의 추구라는 의미의 윤리적인 것을 전제한다. 윤리란 원칙적으로 ‘타자에 대한 윤리’이며 ‘타자에 대한 열림’이다.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진정한 인간적 자유는 강자와 약자가 아량과 자비, 혹은 시혜라는 종속적 관계가 해결될 때 동등한 시민으로서 입법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정치적 참여 없이 보장받는 소극적 자유는 단순히 법적 보호일뿐 진정한 자유는 아니다.

공화주의가 지향하고자 하는 생활관계는 어떤 관념화되고 범주화된 권리의 실천이 아니라 개개의 삶의 과정 속에서 자유와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공동선의 실천이다. 서구의 갈등처리 과정과 행태에 대한 분석적 토대도 없이 한국에 이식 내지 적절성을 고민하지도 않는 채 합리화에 몰두하다 보니 서구사상은 한국에 체화되지 않고 이물질처럼 더부살이하고 있다. 정치적 관념이나 사상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그 시대 인간의 반응이라는 처방이기에 단순 연구로는 부족하다. 정치와 경제 및 사회의 언어는 그 시대의 특정한 국면을 해석하는 언어다. 따라서 권리와 자유는 생활이라는 실체를 가능케 하는 일련의 인간관계를 의미하게 되는 절차나 과정을 중시한다. 공화주의의 기본이념인 개인적 자율성이란 목표의 획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의 선택에 놓여있다.⁹⁾ 여기서 정치적 자유는 집단적 자기결정을 향한다.

정치는 개개인들의 신호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시공간에 따른 의제나 담론의 대화와 토론의 대상이며 부단히 변경되고 계발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여기서 정치적 토론은 시민적 덕을 지향한다. 토론과정에서 사적 이익은 중요한 요소로서 정치에 투입된다. 그러나 이 사적 이익은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치 이전이 아니라 또한 외생적인 것도 아닌 정치와 공동체의 비판적 성찰의 대상이다. 공화주의가 갖는 토론과 합의의 중요성은 상이한 정치적 견해들이나 공공선에 대한 상이한 개념들이 토론과 대화를 토론이 조정될 수 있다는 보편주의적 신념을 바탕으로 하며, 평등한 시민들이 심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념이다. 이때 토론의 원칙은 이성이다. 토론이나 합의가 사회적 혹은 정치적 규율로서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하여 뒷받침될 때, 즉 모든 대안에 관하여 토론이 가능한 것이다. 시민은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와 공동체를 자기 지배의 원리에 따른 정치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공화주의다.

공화주의는 국가 스스로 자의적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공적 지배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권력분산을 위해서 시민참여가 가능한 원리를 고려해야 한다. 공화주의의 준칙인 비지배적 자유는 “타인의 자의적 간섭에 비교적 견딜 수 있는 권리 확보와 사회적 관계에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상태”라면 이는 인권

8) 발리바르는 권리를 “권리들은 자기 혼자 소유한 특성들이나 성질들이 아니라, 개인들이 그들 자신의 행위들과 의견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공통의 세계’를 설립하자마자 서로에게 부여하는 성질들이다”라고 하고 있다. É. Balibar, “Hannah Arendt, the Right to have Rights, and Civic Disobedience,” *Equalliberty*, trans. J. Ingram(Durham, 2014), p. 171. 권리의 정치’에 대한 논의는 E. Balibar, 『대중들의 공포』, 서관모(공역)(서울: 도서출판b, 2007).

9) 민주공화정에 대한 논의는 한상희, “민주공화국의 의미-그 공화주의적 실천규범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학연구』, 제9권 제2호, 2003, pp. 27-91.

적 상황과 일치한다. 엘리트주의적 대의제 선호와 자유주의자들은 공공선, 공민적 덕에 시민을 묶어두려 한다. 또한, 갈등 회피적인 질서와 조화를 유독 강조한다. 더불어 합의와 비폭력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시민 배제적인 자유를 전면에 세운다.

우리가 타인의 불행에 가슴 아파하는 것에는 나와 타인 사이의 동일성이 전제되어 있다. 그와 내가 평등하다는 이 생각은 내가 인간으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타인도 동일한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타인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 권리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향유하고 있지 못할 때 우리는 타인의 그 불행에 슬퍼하는 것이다. 인도주의적 실천은 항상 ‘인간’의 이름으로 혹은 ‘인권’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인도주의자들은, 그가 인간인 한에서 그에게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고, 만약 현실에서 그러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 그것을 복원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인간답게 살 권리란 무엇인가? 어느 정도까지가 인간답게 사는 것이며, 어느 것이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것인가? 이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인권’은 특정한 테두리 내에서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주어진 사회의 법적 질서에 의해서 규정된다. 예를 들면, 주거권, 행복추구권 등의 권리는 정치적 법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한에서만 인정된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제한될 수 있다. 인도주의적 실천은 이 법적 질서의 한계 내에서,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적 차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이 구성하는 윤리와 정치는 정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존재하게 되는 불평등, 갈등, 위험 등을 관리하는 일로 환원된다.¹⁰⁾

Ⅲ. ‘인권의 정치’와 공화주의의 상호성

1. ‘인권의 정치’에 대한 시각과 원리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인민주권적 청구이자 국민주권적 청구이기도 하다. 국가의 지배적 가치가 지배계급을 위한 ‘이념적 틀’을 제공하고 실천하는 현대국가에서 인권은 곧 진정한 보편적 권리를 향한 걸음이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법체계가 부재할 때, 발생하는 위반을 표현하는 법적 인정이 부재한 곳에서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내면을 통제할 도덕적 열망은 사라지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이해관계, 타인과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사회 전반의 관계론적 구조 속에 깊이 심어져 있는 존재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위의 집단이 인권침해를 더 겪는 이유는 자원의 분배를 결정하는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자원 자체가 불평등하게 분배되기 쉽기 때문이다.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면 삶의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진다. 즉 오늘날 사회구성체는 사람이 갖는 통찰력(지혜, 지식, 기술)과 자원(수단, 재화, 역량)에 의해 인권침해와 구조적 폭력이 상존할 가능성이 높다. 인권침해와 구조적 폭력은 개인의 주체적 행위를 억압하는 기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 그 당사자는 법률상의 권리와 사실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10) 박기순, “인권의 정치와 인도주의,” 『월간 좌파』, 제18호(2014년, 10월호), 도서출판 박종철출판사, p. 90.

정치가 체제의 존립 근거로 세워야 하는 것은 현실에 팽배한 실질적인 불평등을 없애고 갈등을 최소화하게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른 정치적 사유는 단순히 기술적인 태도나 접근을 거부하고 바람직한 인간, 자유, 정치(행태, 국가(형태))가 무엇인가라는 규범적인 질문과 답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정치는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 수많은 의제에 대한 수많은 ‘의견들이 제기되고 수렴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단일의 이념적 관점에서 규범해석을 강제하는 것은 이념적 폭력이다. 동시에 헌법이나 규범에 대한 해석과 내용에 관한 토론은 이념적 대립의 장이자, 이는 내일에 대한 성찰과 충전작업이 될 것이다. 시대와 장소, 그리고 문제의 행태에 따라 어떤 것이 더 적실성을 갖는가는 달리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민주적 정치과정에서 선택될 문제다.

인권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인권의 정치를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인권의 정치’는 도덕적 열망이자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이다. 이는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을 자유와 평등의 행위 영역에서 가능하게 이론이자 실천이다. 인권의 정치는 담론과 행위의 영역 사이의 구분을 제거하는 것이자 모두를 위한 모두에 대한 자율성과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권은 합당한 정치적 의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적 조건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인권은 모든 인격체와 관계되고 그 정당화를 위해 오직 도덕적 논증에만 의존하는 한에서 도덕규범과 유사하다. 보편적 인권이 전제하는 인간관은 보편적 인간이지 다양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구체적 인간은 아니다. 즉 자신의 정치적 지위와 입장을 주장하면 빨갱이나 반역자가 아닌, 억압에 저항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자 도덕적 힘이다.

인권의 정치는 정치문화가 설정하는 경계선을 넘어서는 인권이 시민권으로 실현을 모색한다. 보편적 인권은 전(前)정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본래적인 정치화의 적실한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 내에서 속하는 개인의 권리다. 그래서 인권의 정치는 주체화의 양식으로서 정체성의 정치와 결합된다. 시민권이 없다면 인권이 없는 게 현실정치다. 그래서 인권 개념의 현주소는 국민국가와 국민주권이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공동체 내부의 사람이 그 대상이다. 인권이 부재하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국민국가가 상실되었다는 의미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없다면 자신이 지배를 받게 될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이 거주할 장소의 규범적 승인이 부재할 수밖에 없거나 투쟁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근대 이후 국민국가 상황에서는 국민국가를 갖지 못한 것은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인권이란 ‘권리를 가질 권리’인 정치적 삶의 범위와 수준과 일치한다.

인민들을 자유롭게 하거나 구속하는 권리들은 각 개인 사이의 상호호혜성을 전제할 때만이 권리획득이 가능하다. 이 상호호혜성의 가능성은 ‘보편적 진리’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 보편성은 ‘인간과 시민의 동일화’와 ‘평등과 자유’의 동일화이다.¹¹⁾ 또한 ‘인간의 권리(자연적 권리)’와 ‘시민의 권리’(실제적 권리)는 어떤 차이도 없는 동일성을 갖는다. 즉 인간은 국가의 성원인 시민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권리를 무한히 확장해가는 정치를 ‘인권정치’라 한다. 인권정치는 불평등과 부자유에 대항하여 인민이 자기 해방을 위해 일으키는 개별적이거나 집단적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인권정치 상황은 항상 반복되고 영속적 긴장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인권정치는 정치의 자율성¹²⁾이며, 정치를 정당화하는 자연적 권리를 인간들의 자기 해방의 권리로 전환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을 제한하

11) 에티엔 발리바르, “인권과 시민권: 평등과 자유의 현대적 변증법,” 에티엔느 발리바르(외), 『인권의 정치와 성적 차이』, 윤소영(번역), 공감, 2003, pp. 9~37.

12) 발리바르는 정치를 자율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라 하고 있으며 자유와 평등의 제한을 극복하는 것이라 했다. Étienne Balibar,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평등과 자유의 현대적 변증법,” 『‘인권의 정치’와 성적 차이』, 도서출판 공감, 2003, p. 24.

는 사항을 극복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인권정치에서 민주주의는 통치 형태나 사회적 삶의 방식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 주체들이 존재하기 위해 경과하는 주체화 양식이다. 즉, 기존 사회 질서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어가려는 주체들을 호명하는 장치인 것이다. 이는 곧 동의나 합의가 부재한 권력에 대한 권리의 우선성을 호출하는 것이며, 자신의 존재 양식의 공동체 내에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인간의 권리는 권력에 의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로부터 요구되는 것이기에 인간 존재로부터 출발한 권리의 정치가 권리를 만들게 된다. 정치과정은 인간을 '동일시'의 과정이 아니라 개별 주체들의 인간화와 주체화들의 연대와 상호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인권의 정치란 바로 인권을 현존하는 권력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인권의 현실적 형태인 '인권들'로 구체화해 가는 과정임과 동시에 그렇게 구체화된 권리의 형태들, 즉 '인권들'을 변형하고 개선해가는 과정 전체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의 구체적인 인권들은 항상 영속 혁명의 과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인권의 정치는 인권의 이념에 근거해서 그 현실적 형태들을 재구축해가는 영속적 과정을 인권의 정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인권의 정치는 결코 개인이라는 단자적 존재의 수준에서 이뤄질 수 없으며 연합체라는 '관계인적' 관계성의 차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접근이다.

결국, 인권의 정치는 인권의 문제 제기와 삶의 정치에 투영되는 것은 실천가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닌 '시민 아닌' 인간이 인권을 주장함으로써 기존 체제를 변혁하는 저항 주체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인권은 기존 체제에서 배제된 이들로 하여금 그저 '살아있게만 하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그 이상에 비추어 부당한 현실을 비판하고 변혁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주체화의 언어이다. 자유는 인간의 본능적 지향 때문에 확장과 심화되지만 평등은 이성의 법칙만이 실현되게 만드는 도덕적 당위를 넘어서는 정치과정이 요구된다. 그래서 인권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정치적 권리이기에 우리의 과제는 인권을 정치와 무관한 도덕적 규범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자유를 선언한 인권의 이상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인권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인권의 정치'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은 두 가지 시각과 원리를 갖는다. 첫째 제도정치 공간에서 대의되지 않는 주체들에 의하여 실천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다. 연대의 형식으로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반대'를 주장했던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의 해고자들은 모두 대의제라는 제도정치 공간의 합의 과정에서 대의 불가능하거나 대의되지 않는 자들이었고,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배제된 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주장하며 기존의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체가 형성되고 '민주제'라는 말의 본래 의미에 부합하는 정치가 발생한다.

둘째 민주정치를 기초로 하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리로서의 '인권'의 이념과 가치 확립이다. 한국 사회에서 대항적 실천으로서의 인권은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인권의 가치가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구성원리로 뿌리내리는 노력을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리로서의 인권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재구성하는 '내재적 비판'을 수행하고, 내재적 긴장과 갈등을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크게 기본권과 국가권력 구성원리로 이루어져 있는 헌법은 기본권과 국가권력 간의 적극적 연관을 읽어내는 해석방법을 취해야 한다. 그러한 해석에 따르면, 국가권력은 인권(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담지해야 하고, 이러한 원리는 정부, 국회, 법원 등 국가기구를 구성에 대한 지

배적인 원리가 되어야 한다.

2. 인권정치의 공간적 지점들

1) 인권과 정치의 경계와 동일성

정치 공간은 관계의 산물이자 물질적·비물질적 실천들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이는 공간이 인간의 존재를 물질적 상태만이 아니라 신체적·심리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시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¹³⁾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공간적 지점에 대한 인식적 전환은 모든 시공간에서 인권이 친화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제도와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회’와 ‘국가’ 혹은 ‘정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미였던 고대의 모습들이 오늘날 동일한 재현이 필요한 게 인권정치의 요청이다.¹⁴⁾ 한국정치에서 주체는 엘리트와 국회의원, 그리고 관료와 대통령이다. 그래서 시민은 권리는 박약하지만 따라야 할 의무는 강력하다. 이에 반해서 정치 주체들은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 의무 없는 정치행위로 인해서 자율이 제한된 시민은 통치대상화될 수밖에 없다.

정치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이면 누구나 정치적 주체인 동시에 개인적 삶의 자율적이고 존엄한 주체로서 평등한 참여자의 몫을 갖는 정치, 즉 누구든 동등한 정치적 주권을 보유하는 ‘공적 시민’으로서, 그리고 기본적 인권을 ‘사적 시민’으로서, 보편적이고 완전한 성원 지위를 갖는 정치, 인간답게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목록과 함께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을 갖는 정치다. 그러나 자유주의 사회에서 사회의 전체적인 부는 증가하지만 불평등하게 증가하고 있다. 결국, 자유주의 사회는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사적 자유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자연상태와 다름이 없음을 보여주는 있다. 그런데 이는 공적 영역이 소멸하면 사적 영역도 소멸한다는 사실을 자유주의자들, 또는 자유주의 사회가 간과하거나 애써 부정하기 때문이다.

권리는 별거벗은 자연상태에서, 또는 어떤 선한 인간성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정치적 지위, 즉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통치하는 특정한 역사적 정치공동체에 의존한다. 즉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권리는 조직화된 정치공동체에 성원권 또는 참여권을 가짐으로써, 그 속에서 서로 신세를 지며 서로 인정하고, 권리 쟁취를 위해, 정의와 연대를 위해 분투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창출되고 실효성을 가진 것으로 보장된다. 한국에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핍 내지 외부화되는 이유는 남북분단 구조에서 사회주의적 이념이나 복지담론에 대한 통제 내지 취급불가로 규정지은 점에서 기인한 사회주의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가 높지 않았던 점이 만들어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리의식이 미약하였고 정치적 민주화에 집중하느라 사회적 평등에 대한 세력화의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형식적 평등의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 실질적 평등이 기능한다는 것은 형식적 평등의 한계원리에 실질적 평등이 포섭되어¹⁵⁾ 엄격히 그 한계 속에서만 기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3) 김기곤, “인권정치의 공간적 해석,” 『민주주의와 인권』(제10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0, p. 68.

14) 그러나 자연법과 국가와의 관계는 통합된 개념이나 유기적인 것이 아닌 국가는 하나의 인위적인 권력실체를, 자연법은 보편적 규범을 의미하는 대립적인 개념이었다. M. Riedel, Materialien zu Hegels Rechtsphilosophie, 2 Bde. Frankfurt/M. 1974; 황태연(번역), 『헤겔의 사회철학』(서울: 한울, 1988), pp. 118-121.

15) 주류 정치철학들이 인간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이성적 존재로 전제하는 것이 허구적이며 이상적인 것임을 설파해야 하며 오히려 사회구조 속에서 불완전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것이 인간의 존

인권의 박탈(공적 영역의 상실)은 한 인간을 의견도 없고, 직업도 없고, 정체성도 없는, 순수한 인간, 즉 자연적인 차이(예를 들면, 인종)만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 우리는 서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결정의 힘에 기초하여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된다. “정치는 몫을 갖지 못한 자들의 몫을 창설함으로써 지배의 자연적 질서가 균열되고 있는 바로 그때 존재하는 것이다”¹⁶⁾ 인간적 기능의 전문화는 대중과 엘리트의 간격을 유지한다. 이는 대리인을 호출하여 전문가들에게 정부를 관리하게 하여 대중은 피동적으로 자기 영역에 집중케 한다는 효율성과 합리성이지만 사실 이는 대중을 의사결정에서 배제시켜 자치권을 삭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오늘날 민주정치의 과제는 파괴할 정언명령과 준수할 정언명령을 유형화해야 한다.

인권의 정치가 국가 역할의 강화를 요청하는 듯 보이지만, 고대나 근대의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자유권을(개인의 소유권이나 조건적 방어적 자유로서)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귀결시키고, 정치권을(주기적인 선거에 참여하는 권리와 탁월한 대표를 통해 정치적 권리가 위임되는 권리로서) 단지 수동적 존재로 귀결시키고, 사회권을 (개인의 생활권, 기초적 사회보장권, 노동조합법, 환경권 등)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귀결시킨 것은 바로 국가-사회의 분리와 기형화라는 근대적 틀이 가지는 본질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¹⁷⁾ 국가를 단순한 공동체가 아닌 상호성에 기반하는 이익을 위한 통합과 소통의 권력과정에서 나오는 권리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

인권의 정치에서 논의되는 시공간적 인권의 내용은 고정적이지 않다. 어제의 추상적인 권리가 내일은 소중한 인권의 범위로 포함될 수 있으며 오늘의 권리가 내일은 상식이 될 수도 있다. 인권의 내용과 대상은 확장 및 심화되고 있다. 인권 현실과 헌법 규범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로 표현해 규범체계의 불완전성과 미완결성으로 하고 있다. 추상적일지라도 존중될 인권의 내용은 실현되어야 할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하게 헌법은 기본권의 철학적 정당화가 완성된 교범이 아닌 그 정치적 실현을 위한 일시적인 문서다. 그 문서로 모든 정치과정이 정지되는 게 아니라 특정 정치적 의제가 없다면 그 내부의 문제들의 토론과 심의의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이 국가 내부 개인의 존재를 규정하는 구조적인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사소한 채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기회의 보장만으로 규범상의 평등 가치를 구현할 국가의 의무가 종료되지 않는다.

시대나 장소와 상관없이 모든 정치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구성원들 사이의 단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내부의 단결이 전제돼야 국가의 생존과 더불어 외부로의 팽창과 정복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민과 관련된 개념들은 무수히 많은데,¹⁸⁾ 민이 공동체 안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처해 있다 보니 대부분은 그 개념들에는 부정적이고 비하하는 이미지가 결부되어 있다.

재론적 실체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취약성을 매개로 주체개념을 재구성하여 차별금지라는 문서상의 형식적 평등의 차원을 넘어서는 실질적 평등을 평등의 진면목으로 간주해야 한다.

16) 자크 랑시에르/오윤성(역), 『감성의 분할: 미학과 정치』, 도서출판b, 2008.; Jacques Rancière, Who Is the Subject of the Rights of Man? *South Atlantic Quarterly*, 103(2-3), 2004, 299.

17) 박주원, “인권의 ‘정치적’ 재구성,” 『현상과 인식』, 제37권 4호(통권 121호, 2013년 겨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p. 35.

18) 민은 데모스이며 귀족이나 엘리트의 대립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민의 개념 정의를 통해서 민주정치를 고찰하는 논의는 민주정치의 발전과정으로 이해해도 될 듯하다. 신철희, ‘민’(demos) 개념의 이중성과 민주주의(demokratia)의 기원,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2호(2013),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p. 207.

인권의 정치를 위해서 한국 정치의 시공간은 노동관계와 정치관계, 그리고 사회관계에 국한되지 않는 삶의 전체의 공간에서 재조정되어야 한다.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귀족이나 엘리트는 ‘민’의 이름에 경멸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썼고, 또 자신들이 민과 관련되는 것을 꺼렸다.

2) 대의제에서 인권의 정치로

대의제는 대리나 대표에 의한 위임정치다. 이 위임정치는 대표의 공공성과 자기 이익 실현이 아닌 위탁자의 이익 실현을 위해 복무한다는 전제하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항상 옳을 수가 없다.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는 인민의 자기 지배라는 민주정치의 이상에서 볼 때 정치참여의 과소와 책임성의 부재로 사적 지배의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주권에서 인민주권으로, 대표제의 대표에 대한 책임성과 민감성, 그리고 반응성은 결코 실제화하기가 어렵다. 또한, 개인과 집단의 사적 권익의 자유와 평등만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사회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적이지자 귀족제의 또 다른 변형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대의제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인 자기 결정과 자기 지배의 원리를 갖는다는 점이 가장 적절성일 것이다. 국가권력을 실제적으로 누가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관념적인 주권원리가 아닌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원리인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의제가 전제하는 ‘국가이익’과 ‘전체 국민’이라는 관념을 실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안은 불가능한 게 아닐까? 대표자인 엘리트의 사려로부터 공동선을 발견하고 이에 따른 개별이익이나 특수이익의 파당적 횡포로부터 공동선을 보호하려는 대의제의 정당성은 여전히 관념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정치는 국가권력의 담지자로서의 국민과 이에 기초한 정치형태를 의미하며 그 함의는 국민주권을 기초로 하는 사상원리, 기구원리, 방법 원리의 통일체 이상은 아니다. 국민주권에 기초한 대의제는 이러한 원리를 실현하는데 부진하거나 실패했다. 국민 주권적인 형식적인 측면에서 공화주의를 해석한다면 인권에 대한 도구적인 가치관만을 부여하는 되는 경향을 갖게 된다. 공동체 내부에서 요구되는 권리나 담론은 가능한 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합리적 담론의 참여자로서 제한 없이 진입할 수 있는 행동규범만이 타당할 것이다.

이제 민주정치의 과제는 국가영역에 있어서의 자치(공적 자치)와 사적 영역에서의 자치(사적 자치)를 동시에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제 시민사회적 민주정치로 자유롭고 평등한 방법으로 민주정치의 내용을 결정하여 가는 자율사회를 추구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결정 과정에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집행이란 집행이라 할 수 없고, 제정 과정에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법이란 법이라 할 수 없다.¹⁹⁾ 올바른 사회는 올바른 법을 채용한 사회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가 끊임없이 열려진 채로 논의되는 사회다. 공화주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유와 평등은 의회와 같은 기구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의견을 형성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비국가적 공공영역에서의 의사소통의 자유와 평등까지를 의미한다.

이기적 인간을 도덕적 인간으로 유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건 어렵다. 다만 외연을 규범화시켜 제한시키고 억제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더불어 대표와 수탁자의 덕성에만

19) C. Castoriadis, ‘Sur le Contenu du Socialism’, Le Contenu du Socialism, Edition 10/18, 1979, p. 26.; 이경주,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법학』, 18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0, 77쪽에서 재인용.

의존하는 것도 결코 대안이 되지 않는다. 오늘날 지배엘리트들은 정치광고 및 홍보, 그리고 선전물로 상징조작이나 대중조작을 통해서 정치적 이해득실관계를 조작 내지 흥정물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규범적인 접근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사회적 총량을 고려하지도 않는 사유화와 자유방임만의 신념으로 민주정과 맞서고 불평등을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인간을 지배와 약탈, 그리고 예종이라는 사슬로 묶으려 한다. 시민성은 공손한 복종을 위해 육성되는 게 아니라 개체에게 공동체에게로 독립과 참여를 위한 것이다.

대의제의 동태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 대표들만의 획일적인 문제제기와 의사결정과정에서 벗어나 민중적 동력의 지속적 투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일성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과 다양화와 다층화된 개인주의를 사회구조의 이해관계 속에서 표출해낸다는 것은 관념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실제에선 여전히 어렵다. 현상을 설명할 수도 없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는 이론과 제도는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효용성을 상실한다. 대표에게 책임성과 반응성 등을 묻는 제도의 원리는 민주정이라기보다는 공화주의에서 발원하는 것이다. 나아가 인민이 일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일깨울 수 있는 제도의 원리가 개입될 수 있는 게 공화주의다. 탁월한(?) 엘리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투표뿐만 아니라 일상적 정치과정에 상시적으로 인민이 집단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는 인기영합주의를 가져오는 게 아닌 정치적 담론의 획득과정이다.

정치는 삶의 테두리에 대한 이해당사자 모두가 토론과 합의의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합의가 모두가 준수해야 할 규범인 법률이 된다. 소수의 대표들은 기본적으로 지배욕과 위선이 있지만, 인민들은 지배욕보다는 자신의 안전 욕구를 가지기에 그들에게 견제의 힘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인민의 욕망과 필요에 무관심한 대표들이 모든 것을 위임받아 대리하는 것은 차이의 정치와 다원적 정치를 위해서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법치의 원리는 정치를 구체화와 구조화를 한 것이기에 정치 이후의 산물이다. 동시에 정치는 법치에 구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는 동태적이기에 법의 원리는 과거가 내일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 변경과 수정의 대상이 된다.

3. 인민주권과 비지배로서의 공화주의의 실천가능성

인간 및 인권은 선형적으로 규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규정되고 또다시 재규정되는 지속적인 '발견'과 '발명'이다. '이전에 존재했던' 권리들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현재를 보장해주는 본질로 간주할 수도 없다. 어떤 공화주의적 개념에 의존하더라도 그 원리는 덕성보다는 타자에 의한 비지배적 속성을 타파하고 비지배적 속성을 갖는 개인들의 상호의존과 연대다. 예를 들어 로마공화정이 귀족적인 속성을 가졌지만, 제도적, 혹은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은 그들이 상호성의 원칙과 신뢰가 핵심적인 구성요소였다는 점이다.

공화주의 규범적인 이론들은 모든 사회적 기본재들인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자긍심 등은 적어도 자기 몫을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가장 하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인간은 원래 사회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개체적 자본주의사회가 그 사회적 존재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분석과 대안 제시는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공화주의에서 개인들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공화국에서 인간은 공동체와 분리되어 별개로 고립적으로 존재하면서 공동체와 대립하는 이기적인 추상적 개인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보유하고 동시에 다른 동료시민 및 공동체와 변증법적으로 얽

혀있는 인간이다. 공화국의 시민은 공적인 업무 즉 공화국 자체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선슈타인(Cass Sunstein)과 마이켈만(Frank Michelman)²⁰⁾은 공화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정치가 공민적 덕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토의가 필요하다. 둘째, 정치는 참가기회와 영향력에서 평등하여야 한다. 셋째, 정치적으로 평등한 자들에 의한 토의를 통하여 정치가 이루어지면 올바른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넷째, 따라서 시민의 정치적 참가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²¹⁾. 이러한 관점에서 선슈타인은 사법심사를 높이 평가하고 적법절차조항과 평등 보호 조항을 정치적 토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치 지워야 한다고 평가한다.²²⁾

평등의 의미를 갖는 ‘이소노미아’(isonomia)는 민주정/민주주의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이소노미아’는 하나의 정체이면서 동시에 시민권 헌정의 원리라 말할 수 있다. 이소노미아는 공적 영역에서 서로에게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이들의 평등과 자유를 생산해내는 ‘평등한 자유’(equal freedom)이다. 이소노미아는 군주정이나 과두정과는 달리 ‘지배’(archy)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정부 형태로서, ‘비지배’를 그 원리로 한다.²³⁾ 모든 시민들의 ‘자존감과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정치적 평등의 확보는 경제적 평등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이는 공화주의의 고전적인 이상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하는 사회적 평등은 뒤따르는 실현대상이며 공화주의가 개체성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평등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평등과 숙의 및 그에 따른 실천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로 복수성이 구현되는 사회, 즉 다원주의적 사회가 탄생한다

공화주의가 지향하는 정치원리를 종합하면 “인간의 기본권은 천부적이고 전정치적(pre-political)이며 보편적이라는 자유주의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헌법은 절차와 권리의 법적 총체로 인식되고, 그 결과 헌법의 주요한 기능은 국가의 행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자유주의적 헌정주의) 또한 “정치적 권위를 법을 통해 제한하기보다 시민적 견제력을 통해 통제하는 데 초점을 둔다.”(공화주의적 헌정주의) 그러므로 자유주의에서 단점으로 지적받는 공화주의의 공공선과 덕성은 사회와 공동체 존재의 당위성이기 때문에 결코 제한받을 가치나 태도가 아니다. 정치의 구성에서 도덕과 덕성, 그리고 공공성은 배제하는 시도는 정치를 보다 나은 삶에서 나오는 행복추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단지 최소한의 행정적 관리의 규칙으로 전락시킨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국민의 광범위한 논의와 동의를 거쳐 나온 가치와 규범은 그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 가장 권위 있게 존중되는 규범의 표현은 헌법이지만, 권위는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국민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모든 국민일 것이고 모든 국민은 규범의 창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또한, 공화주의의 접근시각 중 중요한 논쟁점 중의 하나인 정치에 관한 법의 우위를 확보하는 제도를 선호하는 자유주의적 시각, 정치로부터 법이 형성된다는 전제하에 민주정치를 수용하려는 논쟁점인데, 이는 헌법을 포함하는 규범은 이란 사회구성원에 의해 발견되는 질서

20) Frank Michelman, ‘Law's Republic,’ 97 Yale L. J.(1988). p. 1502.(Available at:https://digitalcommons.law.yale.edu/yj/vol97/iss8/1)

21) Cass Sunstein, ‘Beyond the Republican Revival’, 97 Yale L.J.(1988), 1541-1542쪽.

22) C. Sunstein의 공화주의에 대하여서는 한상희,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함의,” 『一鑑법학』, 3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1998, pp. 117-126.

23) H. Arendt, On Revolution, London/New York, 2006, 20; H. 아렌트, 『혁명론』, 홍원표 옮김, 한길사, 2015, 97.

이기에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한계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토론과 심의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더불어 변화의 속도와 범위는 주어진 정치제도의 틀 안에서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요구들이 합의된 절차와 방법까지도 바꾸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해야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인민주권’과 ‘참여의 실천’을 위한 상이한 정치적 의제나 시공간을 통시적인 원리로 걸치는 인식론적 이해와 접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각이 필요하다.

대표나 대의하지 못하는 대의제를 교정하는 공화주의가 갖는 원리는 민주성과 법치주의에 그리고 사회국가원칙이 있다. 사회국가원리는 ‘인간 존엄성의 보호’를 통해서 공화주의의 구성원리로서 특별한 가치를 갖게 된다. ‘사회적’이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단순한 집합체적 의미가 아닌, 경제적 정치적 구조와 관련된 사회 내에서의 인간적인 관계를 조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녕과 공공에 기여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서 공동체 내에서 상대적 약자들이 비인간적인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정의란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정치경제 구조 속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러나 국가의 기능은 개인의 자기책임과 사회적 자율성을 우선시하며, 이러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에만 국가가 나서 부차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적 대립을 조정해야 한다.²⁴⁾

IV. 한국에서 ‘인권의 정치’를 위한 공화주의

1. 한국에서 민주공화주의

헌법의 민주공화국이 자유주의 관념만으로 대체되고 있다면 18~19세기적 담론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공화주의 모델이 인민에 의한 ‘사회의 자율기능 존중’과 인민주권에 의한 ‘사회의 국가 지향적 활동영역’의 확대라는 내연과 외연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에 더 그 원리와 멀다. 국가가 공공의 것이며 시민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정당화할 이론은 필요 없다. 시민은 누구로부터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객체도 아니다. 국가에서 시민은 객체가 아닌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헌법은 혁명적 정치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인민의 합의도 아닌 단지 특정 엘리트의 관념만이 반영된 수용의 산물이었다.

한국에선 개인의 인권은 억압되었으며 이는 곧 개인이 개인으로 독립적으로 승인받지 못하는 권력정치의 대상에 불과했었다. 이해당사자인 시민과는 무관하게 법률과 규범은 제정되고 집행된다. 단지 객체일 뿐이다. 민주적 참여 없이 법치가 강제되고 있는 셈이다.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의사소통의 힘이 아닌 강제적인 힘만 잔존하고 있기에 정치적 신뢰는 낮고

24) 헌법 제119조는 대표적인 사회적 국가임을 나타내고 있다. 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치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 의사소통적 권력은 의회 안의 내부적 공공영역과 의회 밖의 외부적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긴장과 협력의 양방향적 토론정치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러한 양방향적 토론정치의 활성화야말로 정치 권력이 생활세계를 침범하는 식민화를 차단할 수 있다. 공화주의의 중핵은 공적 영역에 시민이 참가하는 것이고 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이며 공동체성의 근본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민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선에 호소하여야 하는데 이를 통하여 정치의 도덕화가 이루어지며 민주주의가 달성되기 때문이다.

인권이 권리로서 굴레서 벗어난 인간을 원자화를 승인하고 이에 따른 개인의 불가침의 사적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법치적 인권론이라고 한다면, 공화주의에서 인권은 탈개인주의적 혹은 관계론적 의미에서 파악해야 하는 인간이 인권을 행사하여 비국가적 공공영역을 형성하는 인권이다. 이제 공화주의를 위한 인권은 사적 영역으로서의 인권이 아니라 정치참가의 구성요소의 전제조건으로 이해한다. 권리라는 근대적 언어는 통치의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국가중심적 정치와 분리할 수 없다. 공적인 강제력을 갖는 법 아래 인간의 권리, 이를 통해 각자가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이들의 간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가 권리인 것이다.

국민이 단순히 나라의 주인이라는 이념이 아닌 사실에서 자기에 대한 지배 의지를 갖게 하고 이들에 의해서 작성되는 규범이 정당성을 갖게 하는 게 어떤 근거로도 타당성과 정당성을 가질 것이다. 단지 투표권으로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동일하다는 민주정의 논리만으로 지배자의 독점체제를 제한할 수는 없다. 인권의 정치에서 갖는 정치참여는 단지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게 아닌 정치적 공론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이다. 공론형성을 위한 의사소통적 인권으로 재인식할 것을 주장하는 공화주의는 권리투쟁을 실천적 매개로 삼고 있는 정치사회이론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라는 추상적 인간상에 기초한 시민적인 인권론보다는 자기소외와 계급적 존재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해야 한다. 이제 헌법은 사적인 영역에서의 실제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문서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정치참가와 통치의 절차를 구성하고 제도화한 문서로서 이해한다.

거듭 언급하지만 오늘날 국가형태에 관한 논의는 일정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름의 이념적 정향에 의거하여 형성되는 것임을 고려하는 논리적이거나 이념적 기반이 없다. 인민에게 국가권력의 원천이 있다는 규범론적인 전제는 사라지고 단지 통치원리의 구조성과 질서로서만 공화주의의 필요성만이 전개되어 있다. 민주공화국의 지배적인 관념은 인민들의 자기 지배의 원칙을 바탕으로, 민주국가의 원리, 그리고 법치국가 등의 원리들이 중층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화주의 정치이론은 정치적 참여권을 인권의 중심에 놓고 정신적·물질적 측면에서 비지배자유를 확보하는 제도들을 고안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원리를 규범의 핵심에 두고자 한다. 그러므로 인권을 위한 공화주의적 접근에서는 공사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대화와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이 곧 정치이며 이 과정에 평등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원주의와 대의제의 친화성 때문에 자유주의와 엘리트주의자들에 의해서 비판에 의해 공화주의를 제한 내지 축소시키려는 시도는 인민의 참여라는 기본권이 부재한 상상의 주권만 개입되는 귀족적인 인민배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다수결 제도에서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나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자들의 지배가 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문제 제기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해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공화주의에서 시민의 권한은 선거제도와 견제제도에 의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는 공정하지만 제도 결과가 공정치 못하다면

견제체도로 시민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인민의 동의에 기반하는 집행부가 아닌 인민의 참여와 견제, 그리고 심의에 기반하는 민주정치가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인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면 인권이 정치에 대한 보편적 권리, 즉 정치체에 속하고 정치체를 창설할 권리에 기초한다. 인민이 위임하지 않은 정치적 능력, 그리고 이로부터 인민을 구성하는 개인들에게 수반된 책임이다. 곧 '인권의 정치'는 해방의 정치, 즉 '정치에 대한 보편적 권리'개념을 통해 인간인 한 우리는 모두 조건 없이 시민이며, 정치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역설한다. 인간성은 그 자체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권리 또한 인간 본성이나 초월적 권위에 기초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권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에 의해 획득된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인간만이 시민이다'와 같은 방식으로 인간에 대한 정의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부정성과 호혜성을 그 원리로 갖는 모든 인간이 시민인 시민성이 인간의 본질을 규정한다. 인권은 호혜성의 원리 바깥에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삶의 열망과 진정한 자유와 더불어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인정 투쟁과 승인 투쟁이 이뤄지는 것이 인권의 정치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거대하고도 초과학적인 기술과 자본은 인간을 극단적으로 무기력하고 탈정치화시키게 만든다. 이러한 획일화되고 전체주의와 같은 체계 아래서 시민들은 불신을 통해서 서로 고립되어 있으며 이렇게 의견의 공적 교환이 차단된 모든 정치 질서는 폭력에 기초한 지배의 대상화로 전락한다. 객체화되고 분리되고 탈정치화된 대중을 동원하는 체계가 인권에 기반하는 공화주의다. 또한, 오늘날 고도로 관료화된 행정조직과 대의제와 정당체제가 대중사회에서는 탈정치화된 대중들을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적극적 의미에서 자유는 표현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인데 대의제는 대중들을 사적 관심에 가둬 놓고 사적 행복추구에만 몰두하게 한다. 공적인 자유와 공적인 행복을 소수 대표의 특권으로 만드는 대의제는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에 비취볼 때 규범성을 가질 수 없다.

인권은 규범과 가치, 법과 제도, 저항과 운동 등의 범주가 서로 관계를 맺고 정치적으로 구성되는데, 이 세 분야가 가시화되고 정립되는 영역은 하나의 규범이 투영되는 구성원에게 책임과 의무가 함께 부과되는 동시에 권리가 부여되는 국민국가라는 특정 지역이다. 삶의 경계선에 따라 주어진 전통과 관습이 투영되는 문화공동체와 정치공동체는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적 기대나 가치를 확인하는 것도 인권정치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즉 사회가 가진 상징적 부를 공유할 권리며 누구든지 사회의 문화와 국가의 상징행위 속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가권력이 자기 삶의 형태와 상이한 특성의 공인된 상징을 만드는 행위는 평등과 연대의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권리의 영역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정치경제적 힘의 불균형은 자유의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는 시민들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권이나 청구권의 영역에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당신이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나?"를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자율적인 이념과 그 실천토대가 인권과 공화주의다. 자유로운 행위(action)가 아니라 자유로운 행위가 가능한 조건(condition)이 대립하는 쌍방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정원칙으로서 비지배적 상호성이다. 우리는 인권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한다는 추상적 언명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의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하고, 고쳐야 한다면 새로운 제도적 모색을 위한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 현실 속에서 인권정치는 외부에서 다른 나라의 법적 관계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정치적, 사회적 개혁세력들과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인권개입은 강자가 설정하는 보편성이라는 덫에 걸리는 ‘인권을 이용한 정치’라는 다른 의미의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를 위해서 권리를 가진 개체들에 의한 공동체의 사상적/지향점인 공화주의는 자유 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자유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그 누구도 상위자로서 자의적 권력을 가질 수 없게 연대하고 참여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국가의 과잉발전에 따른 시민사회의 미발전 현상을 보이는 격차 사회이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경우는 서구사회와는 달리 산업자본가들이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정치를 위하여 투쟁한 사례는 없다. 반면에 이들을 위한 지위와 분배는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의 자본가들을 포함한 대표들은 절대권력과 투쟁하면서 성장해온 시민사회 내의 한 주체이거나 공화주의를 실천할 시민과 동맹세력이라고 보긴 힘들다.

2. 한국 인권의 정치 지형과 실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규정은 대한민국의 조지원리와 그 작동의 이념적·실천적 지표를 형성하고 있다. 상해임시정부 임시헌장(1919년 4월 11일)과 제헌헌법(1948년 7월 17일)에서 표현된 ‘민주공화국’은 완결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치적 토의의 출발이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내용물을 결정하는 현재적 원리는 무엇이고 시민의 권능은 무엇인지에 대한 출발이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결과물에 대한 수용밖에 없었다.

단지 서구의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결과물을 체제능력과 의지와는 무관하게 수용함에 불과한 민주공화국의 도입은 불가능함을 행하려는 시도에 불과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상해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은 이상적이지만 실현대상이 부재했다는 현실성이 제한되었고, 제헌헌법의 민주공화국은 이상과 실제의 부적합성이 명백하다. 즉 헌법적 체계는 규범적 전제이자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해야 할 정치적 실체라는 비판이 타당할 듯하다. 오히려 ‘4.19학생의거’와 ‘5.18민주항쟁’에서 그리고 6월 항쟁에서 얻어낸 것은 헌법적 규범에서 벗어난 항거가 얻어낸 결과물이다. 또한 2016년 10월부터 진행된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에 대한 함의는 탄핵결과보다는 중요한 정치적 의제에 대한 대표들의 외면을 시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그 과정이 정치적 결과로 유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민주공화국은 인권이 제기하는 ‘자기 지배’의 원리가 공동체에서 작동될 수 있는 체계 능력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기 지배’는 대의제 지향의 민주정치로 인해서 자치권과 자율권, 그리고 자기 결정권은 유보적이다.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타자와의 관계에서는 자유로운 계약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국가에 능동적인 주권자여야 하는데 과연 한국에서 실정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과 답이 ‘인권의 정치’를 위한 공화주의다. 루소의 표현을 빌리면 “사회가 발생하면 애초에는 공화국의 통치자들이 제도를 만들어내지만, 그 이후엔 제도가 통치자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곧 존재의 규범에 대한 존재의 구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 구성원리는 개개인의 구성원들을 전체로서의 정치공동체 내에 편입하고 그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존재양식을 부여받으면서 동시에 그 진정한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이 주

권의 완성과정이다.

인간의 선호나 취향, 또는 그에 바탕을 두는 이해관계나 의견은 언제나 맥락적이고 상황 관련적이다. 사회는 인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이해적 관계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인간은 다양한 욕망에 비해 개인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자신의 능력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욕망은 사회를 통해, 즉 각자의 상호부조를 통해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사회에 속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친화감을 자신의 마음속에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과 요구를 적절하게 실현시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를 갖는다. 이러한 실현체인 국가는 사회 원리를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특정 세력에 의한 특정 이념만이 반영된다면 사회와 국가는 공동체 구성원의 것이 아닌 도구화로 전락된 것이다. 헌법은 국가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원들 상호 간에 맺은 계약이다. 모든 권력이 헌법 안에 포함되고 이 규범으로 시민을 통제하고 또한 시민은 헌법을 근거로 정부를 통제하므로 통제권과 헌법제정권은 동일하다. 인민주권이라는 정치적 이상의 출현과 함께 대두된 현대적 의미의 공화주의가 민족주의와 자기지배에 대한 열정이 부재했고, 공화주의에서 다원성에 기반을 둔 시민적 덕성이 동일성과 통합만을 강조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전락되었다. 그래서 국가나 정부, 그리고 대표나 엘리트들은 오로지 선재(先在)하는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물로 보는 일종의 필요악으로 간주하기 일쑤다.

이제 정치적 기본권의 확보와 행사가 주된 목표가 된다. 4~5년에 한 번씩 행사되는 선거권의 주권이 아니라 국가권력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주권이어야 한다.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국민표결권을 포함하는 인민(people)주권의 실질적 내용은 인민주권의 내용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영역과 비국가적 공공영역에서의 공론형성을 위한 인권으로 이해되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적 헌법학에서는 간접민주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접민주적 요소의 도입을 정당화하지만,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는 정치참가의 권리로서 정당화되는 것이다. 시민의 정치참가와 권력감시가 좀 더 용이하게 되기 위해서는 분권화가 필수 불가결하다. 분권화에 기초한 지방자치 차원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기본권담지자 시민들의 사회적 교통신식으로 자리잡기 위한 좋은 본보기일 것이다.²⁵⁾ 이제 중앙과 지방이 아닌 지역과 지역으로 구분되고, 대의제를 대의만 하고 마는 대리인에게 주는 과도한 위임권력은 축소되어야 한다.

인권과 주권 간의 내적 연관은 주권의 인권화를 통하여 찾아질 수 있을 것이고, 그중에서도 정치참여의 권리와 의사소통적 인권의 공적 사용을 통하여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주권과 인권에 대한 사고에 의하면 한 이념은 다른 이념의 희생 위에서만 주장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주권과 인권은 의사소통적 자유,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매개되는 것이다. 시민사회적 민주주의는 전통적 의미의 주권과 인권 이념 즉, 정치적 자유는 인민의 주권적 의지를 통하여 법률을 스스로 제정하는 공동체의 자주조직 속에서 구현되며, 다른 한편으로 시민의 사적 자유는 법률의 익명적 지배를 보장하는 기본권 속에서 형상화된다는 이분법을 거부하기 때문이다²⁶⁾. 예를 들어 사적 소유의 권리변동에 대한 갈등은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투쟁이다.

그러나 일방적일 수도 없고 기존의 권리체를 그대로 둘 수도 없다. 우리네 삶의 공간에서 권리투쟁을 권리의 상호승인을 둘러싼 투쟁의 무기는 인권이며 그 원리는 공화주의인 것이다. 공화주의의 중핵은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시민적 자유, 그리고 시민적 권리”를 위해서

25) 국순옥, “민주주의와 헌법실천,” 『민주법학』, 제16호, 관악사, 1999, 142쪽 참조.

26) 이재승, “하버마스의 법철학,” 『민주법학』, 12호, 관악사, 1997, 408쪽.

공적 영역에 시민이 참가하는 것이고 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이며 공동체성의 근본을 이루는 규범의 원리다. 시민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선의 총합임과 동시에 조화로운 선인 공동선에 호소하여야 하는데 이는 곧 정치의 도덕화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것들이 이뤄지는 게 민주정치다. 실현 가능한 정치에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으며, 모든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하나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본 논문이 지향하는 바는 인권지상주의로의 이행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정치의 제도화의 원천으로 인권을 그 원리로 공화주의를 기반하는 것이기에 이는 곧 시민참여를 전제로 한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이다. 인권에 대한 규범과 기구들은 국가에 의해서 혹은 법률적 보장에만 만족해야 하난 '도구화'에 머물고 있는 한국사회에 대한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사람중심적인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태적이고 추상적이지 않는 지금의 문제에 대한 원칙이나 원리를 제공하는 원천으로 인권의 정치를 설정하고 이는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공화주의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단지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에 동의하는 게 한정되는 게 아닌 시민 스스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동시에 모든 의제에 심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세습되거나 기존의 권리로 고착된 상속권으로서의 기존의 원리와 인간의 권리는 양립이 불가능하다. 인권은 특정한 정체성의 담지자인 정치행위자가 자신과 근원적 불일치를 주장할 권리가 열외자로서 자신이 사회 자체의 보편성 주체라고 상정할 권리다.

인권에 대한 전략적 사고에 토대로 한국사회의 정치지향은 국가의 우월적이고 독점적인,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지배체계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공공영역의 확보를 일차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다음으로 경제체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공영역의 확보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노동3권은 지금도 요원한 노동자들의 권리다. 국가와 기업과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강자들만의 이익이 아닌 경제주체 간의 조화와 자율을 승인하는 균형적인 시장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참여와 사적 지배 방지라는 시민 중심적 견제력 행사를 위한 제도기획은 본 논문에서는 다음 작업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헌법의 민주공화국은 단지 제도기획으로 종결된 게 아니라 지속적인 공적 토론과 심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들이다.

V. 결론

언제까지 연구와 토론만 하고 있을 것인가? 실천되도록 제안을 해야 한다. 제도 이전에 이념화와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치가 정태적이라면 인권의 정치는 동태적이다. 지금 분배와 공유를 인간 존엄성에 기반하는 동등성이 즉각적으로 투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의 정치는 자기 몫을 주장하지 못하거나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정치적 이념으로 공화주의를 향하게 하는 '인민주권론'의 토양이다.

지배자가 바라는 대상은 사유능력과 자아의식이 결핍된 신민들이다. 대의제와 참여 없는 공화주의에서 시민은 신민이거나 사유능력이 결여된 신민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인권은 권

력의 개입이 없는 사적 공간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됐으며, 인간의 유적 존재성이야말로 인권을 저해하는 공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개인과 국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을 전제로 하는 자유주의적 헌법학의 이해에 기초한 것으로 인간의 유적 존재성의 부정에 다름 아니다. 이제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에서의 인권론은 시민사회의 공론형성과 공공영역의 확충을 위한 관계적 인권으로 이해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에 의한 자율적 결사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제도화구상을 전망하면서도 현실에 있어서는 우선 국가의 헤게모니적 지배체계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공공영역의 확보와 경제사회로부터 자유로운 사적 공공영역의 확보, 그리고 이를 위한 자율적 주체의 형성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²⁷⁾

인권에 기반하는 공화주의는 치자와 피치자의 관계에서 정치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생활단위들을 그 자체 존재의의를 인정하는 가운데 정치과정 속에 편입시키고 그리고 이후 그들을 공동체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게 하는 공민으로서의 이념적 지표를 갖는다. 이 구성원들은 대의제나 공화주의로 언급되는 공동체적 삶을 통하여 자신의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망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에 따라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순환적 관계를 이루어내게 한다.

공화국에서 인권은 어떤 의제를 결정하는 힘이 아닌 그 성찰적이고 고려해야 할 전제조건이다. 공사 영역에 따른 정치영역이 아닌 시공간에 따른 생활관계에서 연대와 포함을 위한 관계망들에게 투영되는 것이다. 어떠한 결정에 의해 혹은 그 결정에서 나오는 힘에 의하여 자신의 삶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찰의 공간 내지 과정에서 획득되는 자기 자기 삶의 지향으로서 자신의 욕구를 형성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일련의 생활 과정의 지도 이념으로 질서화하는 것이 자기지배의 원리다. 인권에 의한 인권에 토대를 둔 공화주의는 다양한 선호를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결과 중심이 아니라 선호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토론과 숙의를 통하여 스스로를 공동체의 분배와 공유과정 속으로 유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의제도 동일하게 최종적인 제도나 가치가 아닐지라도 지금을 대표하려면 동태적인 맥락이 아닌 과정적이고 중첩적인 다수의 의지가 투입될 수 있는 토의와 심의의 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신의 욕구만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제도나 가치적 접근은 자연상태의 법칙이다. 자신의 욕구 실현이 타자의 욕구의 충돌될 수 있다면 조절과 조화를 이뤄낼 수 있느냐가 삶의 바람직한 공동체 추구의 목표일 것이다. 모든 인민이 자신의 삶을 그때 마다의 관계망 속에서 구성하는 기본적 과정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동시에 또 이 과정을 통하여 구성된 인민의 삶에 의하여 다시 스스로가 재구성되는 일련의 생활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강권적인 국가의 생산물인 주권의 구조는 자연상태의 생성물이 아니라 지배자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창작품이다. 근대사회에도 인민의 이해를 반영하고 존엄을 생성시키는 것은 인권에 기반하는 것이다. 이는 곧 자신과 동시에 관계되는 구성원들 간의 이해를 조절하고 평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토대가 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비판적 지성과 실천적 의지가 요구된다.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중시하는 입장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관용이 무원칙적으로 관찰되며, 인권을 방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근본으로부터 나와 너에 대한 인식의 틀을 만들고 추상적인 것과 동시에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게 정치이고 현실이어야 한다.

본 논문의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인권의 보장과 실현은 공동체 최우선의 목

27) 이경주,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법학』, 18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0, p. 96.

표다. 인권에 의한, 인권을 위한 정치만이 전통적 불평등, 새로운 불평등을 교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회관계에서 비지배적 자유를 목표로 하는 공화주의는 대의제가 갖는 무반응성과 무책임성에 대한 실천적 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적인 추구를 지속적으로 해내야 한다. 비지배적 상호성이 기초하고 있는 고전적 공화주의, 그리고 아테네의 민주정과 로마공화정의 정치적 원칙들은 지금까지 간과해왔거나 아직까지 한국학계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지 못한 내용들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 주체로서 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전제조건이 되는 공동체 추구가 목표다. 세 번째,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추구와 주변에 대한 간주관적 환경에 대한 개선은 타의나 공동체의 덕성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기에 자의지를 향상시키고 '비지배적 자유'와 '공적 심의 영역의 확장'을 통하여 사회관계망을 개선시킬 시민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한국사회의 미래사회의 변혁이 지향할 전략적 지표를 시민참여적 공화주의라면 이를 위한 규범적 실천은 '인민의 자기지배'를 위해서 시민사회의 능력과 다양성의 확충과 이를 위한 다양한 정치참여의 길을 통해서 다원적 가치가 개입되는 인권을 화두로 하여 마련하는 것이다. 인권의 확대라는 운동의 방향은 현존하는 개인들의 자유나 현존하는 '대표나 위임'의 정치적 형식의 활성화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것'의 확대, '사회적인 것'의 확대, '정치적인 것'의 확대가 융합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단순한 권력과정인 아닌 대다수의 권력과정인 '정치화'의 과정이 답이다. 누구나 존중받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과정의 참여에 제한받지 않는 인권의 정치를 위한 공화주의가 한국사회가 가진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하거나 대의제가 갖는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을지라도 열린 자세로 원리를 고찰한다면 지금의 문제해결에 대한 반성력과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준혁,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3호, 한국정치학회, 2005.
- 국순옥, “민주주의와 헌법실천,” 『민주법학』, 제16호, 관악사, 1999.
- 김기곤, “인권정치의 공간적 해석,” 『민주주의와 인권』(제10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0.
- 박기순, “인권의 정치와 인도주의,” 『월간 좌파』, 제18호(2014년, 10월호), 도서출판 박종철출판사
- 박주원, “인권의 ‘정치적’ 재구성: 자유권, 사회권을 넘어 정치적 권리로, 국민주권을 넘어 새로운 정치적 주권을 향하여,” 『현상과 인식』, 제37권 4호(통권 121호, 2013년 겨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신철희, ‘민’(demos) 개념의 이중성과 민주주의(demokratia)의 기원,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2호(2013),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이경주,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법학』, 18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0
- 이재승, “하버마스의 법철학,” 『민주법학』, 12호, 관악사, 1997.
- 이재호, “근대적 인권 이념의 기초와 한계,” 『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3호(통권 10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 이재호, “동북아시아 인권담론: 보편인권과 특수인권, 그리고 동북아인권체제를 위하여,” 『한국동북아논총』, 제12권 제3호(통권 44집), 한국동북아학회, 2007.
- 자크 랑시에르/오윤성(역), 『감성의 분할: 미학과 정치』, 도서출판b, 2008.
- 장은주, “문화적 차이와 인권: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철학연구』, 49호(2000), 철학연구회.
- 정정훈, 『인권과 인권들-정치의 원점과 인권의 영속혁명』, 그린비, 2014.
- 조효제, “한국의 반공주의와 인권,” 김동춘·기외르기 스텔·크리스토프 폴만(외), 『반공의 시대: 한국과 독일, 냉전의 정치』, 서울: 돌베개, 2015.
- 한상희, “민주공화국의 의미-그 공화주의적 실천규범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학연구』, 제9권 제2호, 2003.
- _____,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함의,” 『一鑑법학』, 3권, 건대대학교 법과대학, 1998.
- Étienne Balibar,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평등과 자유의 현대적 변증법,” 『‘인권의 정치’와 성적 차이』, 도서출판 공감, 2003.
- Michelman, Frank ‘Law’s Republic,’ 97 Yale L. J.(1988).(https://digitalcommons.law.yale.edu/yllj/vol97/iss8/1)
- Arendt, H.,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Brace, 1951.
- Castoriadis, C., ‘Sur le Contenu du Socialism’, *Le Contenu du Socialism*, Edition 10/18, 1979.
- Ranciere, Jacques, “Who is the Subject of the Rights of Man?”. in *South Atlantic Quaterly* 103. 2/3., 2004.
- _____, *Aux bords du politique*, Osiris, 1990, 양창렬(역), 『정치적인 것의 가장 자리에서』, 서울: 길, 2008.
- _____, Who Is the Subject of the Rights of Man? *South Atlantic Quarterly*, 103(2-3), 2004.
- Riedel, M., *Materialien zu Hegels Rechtsphilosophie*, 2 Bde. Frankfurt/M. 1974; 황태연(번역), 『헤겔의 사회철학』, 서울: 한울, 1988.

정치사와 사상사에 대한 ‘비교공공성’ 접근

정영훈

한국학중앙연구원

-목차-

1. 머리말
2. 비교공공성 연구의 목표와 방법
3. 공공성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이해
4. 미시적 분석의 틀
5. 거시적 성찰의 주제들
6. 맺음말

1. 머리말

필자는 정치사연구는 단순히 권력을 누가 쥐고 어떻게 행사했으며, 권력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과 역사는 어떠했고 그 배경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들은 어떠했던지 등을 정리해주는 데서 그쳐서는 안된다고 본다. 정치사상사 역시 정치에 관한 생각들을 중립적으로 분석해 주고 개별사상들의 특징이나 주변환경들과의 연관성을 드러내줌으로써 독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학은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성적·실천적 고민과 모색의 최전선에 서있는 학술분야로서, 좋은 세상을 향한 기본조건으로의 좋은 정치에 대한 지혜와 지침을 제공해야만 그 궁극적 존재이유가 확보된다 할수 있다. 정치사와 사상사 연구 역시 그같은 실천적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있다고 본다.

좋은 세상·국가와 좋은 정치에 대한 규정은 보는 입장마다 다르게 진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하고 추구해야 하는 가치의 핵심에 공공성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곧, 좋은 국가와 좋은 정치란 공공성이라는 가치와 목표에 봉사하고 그에 부합하는 국가·권력이고 정치인 것이다. 여기에서 공공성은 사적이익과 취향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익과 복지에 봉사하는 속성이나 가치를 지칭하는 말이다. 공공성은 정치적 정의Justice나 선Good 또는 정당성Righteousness이라 표현되어온 가치의 핵심에 위치해있는 속성이자 요소라 하겠다. 역사에서의 진보는 공공성이 증진·확장되는 방향으로의 변화이고, 퇴보는 그 반대방향으로의 변화를 가리킨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가 추구하고 씨름하는 핵심가치를 공공성이란 말로 집약할 수 있다면 정치사와 사상사 연구 역시 여기에 초점 맞춰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정치사는 공공성 증진 및 확장을 향한 투쟁의 과정이자 전진의 역사로, 그리고 정치사상사는 공공성증진을 위한 지적 모색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그 성격이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치행동이나 선택의 목표 및

가치를 진술함에 있어서는 공공성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정의나 선·정당성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가치나 담론은 공공성이라는 개념으로 번역되거나 대체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정치적 정의나 선·정당성은 공공성이 동반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불의나 악·부당성은 공공성을 결여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보면 될 것이다.

정치사와 사상사를 공공성을 추구하고 모색해온 과정이나 전개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한다 할 때 떠오르는 문제는, 어떻게 시대와 장소마다 다양하게 제기되고 접근되며 내용이 채워지는 공공성관련 실천·추구·모색의 양상을 비교하고 평가해줄지 하는 것이다. 이런 관심사와 관련하여 필자는 비교공공성이라는 분석관점 또는 방법론을 제안한 바 있다.¹⁾ 비교공공성은 말하자면 공공성을 추구·모색해온 역사로의 정치사상사와 공공성이 전진·후퇴해온 역사로의 정치사의 개별 장면들을 비교분석하여, 공공성증진 또는 확장이라는 실천적 과제에 도움되는 지식이론을 정립하는 학술활동이자 연구구상이라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비교공공성연구라는 기획은 본래, 한국사의 전 시기를 통하여 공공성이 모색·실천돼온 과정을 비교·정리하자는 취지하에 한중연이 시행한 큰 연구사업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특히 한국고대사 속의 공공성을 분석하는 2개년 공동과제에 적용되었었다. 필자는 이 비교공공성이라는 관점이 정치사와 사상사를 분석·정리하는 시각이자 방법론으로서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온 바, 이 자리를 빌어 그 개요를 소개하고 논평의견을 구하고자 하였다. 논문은 비교공공성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에 대한 언급에서 시작하여, 공공성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공공성이 추구되고 실천되는 개별 사례들의 양태를 분석하는 분석틀과, 비교공공성연구가 거시적으로 탐구해야하는 질문들에 대해 검토하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비교공공성 연구의 목표와 방법

비교공공성은 공공성과 관련된 현상과 담론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술활동이다. 그것은 공공성이 모색되고 구현되는 양상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공공성과 관련된 현실과 당위에 대한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이론을 정립하고, 공공성증진이라는 실천적 과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특정의 국가나 정부별로, 시대나 문화권 또는 지역별로, 학파나 개인 또는 정치·사회적 실천운동별로, 각각의 환경조건 속에서 다양하게 구현되고 모색된 공공성 관련 양상을 서로 비교하고 그를 통하여 미래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지혜를 찾아내는 연구활동이다. 그것은 공공성의 관점에서 정치·사회적 현상과 역사의 추이 및 사상의 전개과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비교공공성 연구는 1990년대 말에 일본에서 시작되어 각국의 저명한 지성인들의 참여하에 활발한 토론의 장을 지속해가고 있는 ‘공공철학’과는 여러 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할 수 있다. 양자는 공공성증진이라는 실천적 과제를 위한 학문적 모색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공공철학은 공공성과 관련된 사상 및 관념들에 대한 탐구 및 분석을 통하여 공공성을 구현하는 실천행동의 철학적·윤리적 기초를 확보하는 데에 관심을 갖지만,²⁾ 비교공공성

1) 정영훈, [비교공공성연구의 관점과 과제], 정영훈 외, <비교공공성으로 본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이 글은 위의 선행 논고에서 개진한 논의를 보완가필한 것이다.

2) 공공철학은 1998년 일본 교토에서 설립된 공공철학공동연구회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되어 온 일련의

연구는 공공성을 둘러싼 정치·사회적·문화적 현상들을 분석하고 이론화함으로써 공공성 증진이라는 일반과제에 도움되는 지식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은 지성사 속에 제기된 관념이나 사상에 주목하기보다, 역사적 사실과 경험에 대한 분석을 중시하며, 합리적 통찰력과 실천적 상상력의 발휘를 통한 이론화를 추구한다. 비교공공성은 역사를 통하여 인류가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추구·모색하면서 이러저러한 곡절을 겪어온 그 자취와 과정들을 정리하고 비교하며, 그를 통하여 공공성의 진전-후퇴와 관련된 제문제에 대해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과 이론을 정립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비교공공성 연구는 성격상 정치학·윤리학·역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인문학의 여러 분과학문이 협동하는 학제적 공동작업을 통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³⁾

비교공공성 연구는 공동체마다 존재하는 (추구되고 모색되는) 공공성 관련 현상은 서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공공성이 정치사회적 변동과 관계 맺는 양상에 대해서는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비교연구를 통하여 각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드러내고, 나아가 공공성 관련 현상의 본질 및 그의 진전·후퇴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일반이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각각의 시대나 장소마다 표출되고 실천되는 공공성에 대한 요구나 모습들이 가지는 장단점과 한계를 드러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비교공공성 연구는 미시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의 두 수준에서 분석시각과 과제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미시적 분석이라 부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거시적 성찰이라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미시적 분석은 공공성이 추구되고 모색되는 양상을 개별 학자나 학과별·실천운동별로, 또는 정책이나 제도 및 체제별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미시적 분석은 공공성의 내용과 그 추구방법 및 추구양상이 시대 및 장소마다 달리 설정·전개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비교공공성 연구의 미시적 분석은 개별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축적되어야만 일반적 유형화나 이론화가 가능하고, 실천적 질문들에 대한 유효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런 미시적 수준에서의 분석 작업들이 보다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통일적인 분석틀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① 장 혹은 집단의 수준, ② 우선시되는 공익가치의 내용과, ③ 공공성의 구현주체, ④ 공공성의 수혜자, ⑤ 공론장의 양상, ⑥ 공익추구 방법 ⑦ 실천덕목, ⑧ 정당화논리, ⑨ 개별 분석 대상들의 시대적-사상적-사회적 배경, ⑩ 이상 9개 항목에 대해 다른 사례들과 비교 등 여러 측면에서의 분석이 중요하다고 본다.

거시적 성찰은 공공성 관련 현상의 정치·사회적 동태와 관련하여, 좀 더 긴 시간흐름 속

담론들을 가리키는데, 동 연구회는 1990년대 이후 공공철학교토포럼이라는 이름하에 국제적인 토론모임을 개최하면서 공공철학에 대한 학술적 정립을 주도하였고, 그 성과는 2001년부터 동경대학출판부를 통하여 20여 권의 『공공철학 총서』로 발간되었다. 공공철학의 기본관점과 연구사에 대해서는 김태창, 「공공철학이란 무엇인가」; 김태창, 「공공철학의 공동구축」, 중국 길림대학 철학사회과학원 대담록(2006년 5월 15일); 야자키 카츠히코 지음, 정지욱 번역, 『실심실학』, 동방의 빛, 2010 등 참고.

3) 따지고 보면 공공성에 대한 기왕의 연구들 모두는 비교공공성의 관점을 일정하게 공유한 토대위에서 공공성의 현실과 당위에 대해 접근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적 근대세계가 당면한 공공성의 위기를 분석한 하버마스나, 공공영역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논의한 아렌트의 연구가 그러하며, 사회정책의 각 영역에서 공공성의 현황을 진단하고 증진방향을 모색한 실천적 연구들이나, 행정 영역이 추구할 궁극적 목표가치라는 차원에서 공공성에 대해 철학적으로 접근해간 행정철학쪽의 연구들이 모두 그러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공공성이 모든 공동체에서 추구된 가치이자 현상이었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았고, 관련 현상을 비교분석하는 분석틀이나 통일된 질문항목이 부재한 상태에서 논의가 전개되었다는 한계를 보인다. 그리고 이런 한계는 공공철학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에서 상관관계-인과관계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공공성의 구현 상태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연구작업을 가리킨다. 거시적 분석의 관심사는 ① 공공성을 파괴하거나 후퇴-위축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② 공공성을 확장-진전시킨 요인은 무엇인가, ③ 공공성의 추이와 공동체의 (치란홍망의) 운명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④ 인류역사가 거쳐 온 각 시기의 정치와 사회를 공공성 구현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어떤 평가가 가능한가, ⑤ 비교공공성 연구가 공공성의 확장이라는 실천적 과제에 주는 지혜는 무엇인가 등과 같은 질문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공공성을 향한 전진과 후퇴의 기록들로 채워져 있으며, 개인들의 꾸준한 모색과 헌신적 노력들에 힘입어, 그리고 숭한 시행착오를 거쳐 공공성을 향한 진전들이 이룩되었음을 보여준다. 비교공공성이 추구하는 ‘비교’는 시대와 시대의 비교일수도 있고, 나라와 나라의 사례비교일 수도 있으며, 동시대 같은 지역에서의 서로 다른 사례들에 대한 비교일 수도 있다. 물론 비교 이전에 개별 사례들에 대한 일관된 틀에 입각한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개별 사례들을 다른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각 사례들의 특수성을 드러내고,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과 이론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공공성 연구는 역사가 남긴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중시한다. 특히 역사가에 의해 정리되고 기록된 문헌기록들이 비교공공성의 관심사에 접근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본다. 물론 역사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연구자의 주관이 많이 개재될 수밖에 없다. 연구자는 분석과 평가에 착수함에 있어 특정의 선입견을 배제한 객관적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해야 하며,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기 위하여 비판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기록된 역사는 흔히 승자의 입장을 반영한 경우가 많은 바, 패자나 피지배층의 입장과 관점을 찾아내어 인과관계 판단에서 균형을 잡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통하여 공공성 증진이라는 실천적 과제에 접근하는데 도움되는 지식을 찾아내는데 유념해야 한다.

3. 공공성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이해

공공성에 대한 개념규정과 본질이해는 논자마다 약간씩 다르다. 우선 공공성에 대한 영어와 독일어의 번역어는 Publicness나 Öffentlichkeit인데, 이들 개념에는 Common과 Official 및 Open의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 공공성은 편파적이거나 부분적인 것과 대비되고, 사적이거나 자의적인 태도와도 구분되며, 폐쇄적이거나 독선적인 행태와 반대되는 가치이자 상태인 셈이다. 조한상 교수는 이들 용어의 어원과 용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공성의 개념을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과정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속성”으로 규정하고 있다.⁴⁾

그런데 공공성을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과정을 거쳐 만들어가는 어떤 상태라는 의미로 규정하면, 공공성은 민주주의적 시민사회에나 존재하는 가치 또는 관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공공성 개념을 좀더 일반적·중립적 속성으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가령 사이트 준이치는 이 공공성이라는 말에는, ① 국가와 관계된 공적인 (official) 것이라는 의미, ②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이들과 관계된 공통적인

4)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9, 33~34쪽.

(common)이라는 의미, ③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open) 의미 등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이들 세 가지의 지향은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⁵⁾

영어로 ‘Publicness’는 ‘public’의 명사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public’이라는 말에도 다양한 뉘앙스가 동반되어 있다. 가령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에서는 ‘public’의 의미를, [① 전체로의 인민에 관련되거나 속한, 또는 공동체 전체의, ② 모두의 이익이나 소용을 위한, 특히 정부재정에 의해 지원된, ③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관련된, ④ 전체 인민을 대신한 공적 입장에서 움직이는, ⑤ 전체 인민에게 알려지거나 알도록 개방된] 등 5가지로 설명하고 있다,⁶⁾ 사전에서 설명하는 5가지 의미는, ① 전체인민 또는 공동체 모두의 이익에 관련된 성질이라는 의미(common)와 , ② 전체인민을 대신한 정부의 기능이라는 의미(official), ③ 공개적이고 개방된 것이라는 의미(open) 등의 세 가지로 다시 간추릴 수 있을텐데, 이는 그 명사형인 ‘Publicness’의 개념과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비교공공성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개념을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익과 복지에 봉사하거나 관여하는 속성 또는 가치]라 규정하고, 영어로는 통례에 따라 Publicness라 번역한다. 공공성에 대한 이 같은 개념설정은 다른 연구자들이 내놓은 개념들의 핵심적이며 공통적인 부분을 집약한 것이기도 하다. 공공성은 정부 또는 국가의 속성을 의미하는 ‘公’ 또는 ‘公的’이라는 말과는 구분되어야 한다.⁷⁾ 공공성은 2인 이상의 개인들로 구성되어 공동사무나 공동이익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존재하는 속성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공공성이 논의되고 추구되며 행사되는 가장 전형적이며 중요한 장은 국가와 정부이다. 구성원들을 규제하거나 자원을 배분하는 힘으로의 권력이 행사되는 곳에는 어디에나 공공성이 존재하며, 또 존재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공공성연구가 상정하는 공공성 개념은 공개성-개방성-대중참여라는 요소를 필수적으로 수반하거나 강조하지 않는다. 물론 공공성의 내용을 규정할 권한은 특정 사람이나 집단에 독점되기보다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그 같은 요소가 공공성의 개념이나 본질 속에 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⁸⁾

공공성은 모든 유형-수준의 공동체에서 추구되는 가치이며, 공공성의 확장을 위한 모색이나 실천활동은 모든 공동체에서 찾아지는 보편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⁹⁾ 공공성은 2인 이상이 모여서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공과 사의 관계가 형성되면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문제이자 가치이고 현상이다. 그것은 국가나 행정기능에 관련된 개념·현상으로만 국한해선 안 된다. 가족·차지단체·이익집단, 그리고 세계(지구촌·천하) 같은 모든 수준·유형의 인류집단·공동체에서 (심지어 마피아집단에서도) 공공성 문제는 발생한다. 모든 공동체와 체제는 공

5) 사이토 준이치(齋藤純一) ; 윤대석 옮김, 『민주적 공공성』, 이음, 2009, 18쪽.

6)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1984.

7) 행정학에서는 공공성이라는 말을 주로, 정부가 관여하는 업무 또는 국가에 속한 속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소영진, 『행정학의 위기와 공공성 문제』, 『정부학연구』 9권 1호, 2003, 6~8쪽.

8) 공공철학에서는 공공성을 국가나 행정부의 속성이라는 차원에서 보지 않고 시민사회에서의 개인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윤리적 차원에서 이해한다. 공공철학에서 말하는 공공성은 공과 사를 매개하고 소통하는 속성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그때 매개하고 소통하는 주체는 개인이다. (김태창 교수는 공공성의 속성을 Public Common이라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비교공공성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본질과 개념을 국가나 권력의 작용과 기능의 측면과 개개인의 행동윤리의 측면 모두를 설명하고 평가함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개념 또는 가치이자 현상으로 이해한다.

9)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2인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인적 결합체라는 느슨한 의미이다. 가족과 지역, 국가를 비롯하여 특정의 목적 하에 결성된 조직들까지를 망라하며, 구체성은 없지만 하나의 이념적 지표로서 지구촌공동체나 동아시아공동체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이다.

공공성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갖고 있으며, 다만 그 표현과 형식이 명시적·구체적인지 아니면 묵시적·추상적인지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사회에 존재하는 관습·규범·종교·이데올로기·제도·법률 등은 공공성에 대한 일정한 관점과 규정을 수반하고 있다. 이상적인 질서나 정의로운 체제를 추구하는 정치이론이나 이데올로기들은 공공성에 대한 규정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주의만이 아니라 자유주의(개인주의)에도 공공성 관련 담론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역사상 존재했던 종교들 역시 공공성에 대한 일정한 설명을 전개했었다. 발전된 사회일수록 공공성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보유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지의 문제는 별개이다.

공공성은 정치와 윤리영역에서 특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가치-현상이다.¹⁰⁾ 정치적 차원의 공공성은 주로 사적 권력의지와 체제의 편파성이나 무능함 같은 요인과 대립하면서 추구되며, 윤리적 차원의 공공성은 사적 욕망이나 이기심과 대립하면서 추구된다. 정치적 공공성에 대한 최선의 규정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이고, 윤리적 공공성을 가장 잘 집약한 명제는 '선공후사'일 것이다.¹¹⁾ 공공성은 일단 공공의 복리에 봉사할 것을 요구하는 윤리적 덕목이나 당위적 가치로 규정되지만, 도덕성을 촉구하는 데서 더 나아가 실질적 복지를 제공하는 체제능력이나 효율성까지를 요구한다. 특정의 행동·선택이나 정책이 공공성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1) 그것이 구성원의 합의나 동의에 기초하는지와, (2) 법규범이나 제도·관습에 합치하는지, (3) 그 제안자-행위자의 동기가 공공성을 향한 선의지에서 비롯하였는지, (4) 그 결과가 공공복리 증진에 실제로 기여하는지, 등 여러 기준에 의해 판단될 수 있으며, 무엇이 우선적 기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가치관마다 달리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²⁾

10) 공공성이 정치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의 두 국면에서 주로 제기되는 가치이자 현상이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동의될 수 있다고 본다. 임의영교수는 공공성이 윤리적으로는 사회정의 혹은 공익을 의미하고, 정치적으로는 참여와 동의를 강조하는 민주주의(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념적 내용으로 한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 이같은 이해도 필자가 개진한 내용과 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임의영,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조건」, 『정부학연구』 9권1호, 2003 참조.

11) 이때 정치와 윤리 영역에서 공공성구현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당사자(주체)는 국가 및 지배층과, 공동체의 구성원 개개인들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공공성은 흔히 사적 권력의지나 이해관계들과 대립하는 가운데 도모되기 마련이다. (근대세계에서는 시장이나 이익집단들도 자주 공공성과 대립한다.) 그것은 국가나 권력의 통합과 안정 여하에 중요하게 관여한다. 국가나 권력이 공공성을 상실하고 통치자의 개인이익이나 취향을 위한 사적 기구로 전락하거나 구성원들에게 현실적인 복지를 제공하지 못하면, 그것은 분열되거나 붕괴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국가나 지배권력은 이 공공성 개념을 동원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마련이며, 각종의 제도적 장치나 정책을 통하여 최대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윤리적 차원의 공공성은 공동체의 이익(공익)을 위해 사적 이익을 희생하는 결단을 수반하므로, 개인의 욕망이나 사적 이익과 대립하는 가운데 도모된다. 국가나 공동체의 이익을 사적 이익에 앞세우는 선공후사의 덕성은 공동체의 유지-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그 같은 문화가 얼마만큼 존재하며 실천되는지의 추이는 국가나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 윤리 부문의 공공성은 흔히 종교나 문화의 영향 속에 고취되며, 위에서 말한 정치적 공공성의 구현여부와 상관계 속내 강화되거나 쇠퇴한다.

12) 일단은 ① 동의, ② 합법성, ③ 동기, ④ 결과의 4요소를 동시에 확보한 행위-정책이 가장 공공성에 부합하는 행위-정책이라 말할 수 있지만, 이 4요소는 서로 상치되기도 한다. 도덕적 판단이 동반되는 개념으로의 공공성은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시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행위자의 동기를 파악하여 진정성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특히 긴급한 비상상황 속에서의 공공행동은 현존하는 법규범이나 구성원의 동의를 생략한 채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혁명이 그러하였다. 그러한 긴급행동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사후에라도 동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사적 이익이나 입장을 넘어서 공공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실천하는 진정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철학은 행위자의 공공의지라는 동기-목적-실천의 측면을 중시하고, 그 원리를 活私開公-公

공공성이 추구하고 구현되는 양상은 환경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내적-외적 환경이 다르고, 요구나 과제가 다르다. 관여하는 사회세력 분포가 다르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다르다. 정치적·경제적 조건이 다르고 지적·문화적 여건이 다르다. 공동체가 영위할 수 있는 공공성의 양상과 한계는 상대적이고 다양하다. 이 말은 공공성에 대한 완벽한 구현태는 없고, 어디에서나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상통한다. 상황조건마다 적합한 최선의 모색만이 가능할 뿐이며, ‘공공하는’ 노력과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다.¹³⁾

공공성은 확장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한다. 진전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한다. 공공성의 확장과 위축의 정도를 측정하는 보편적 지표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반적인 진술은 가능할 것이다. 공공성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과 복리에 합치되는 속성이다. 그리고 공공성의 확장이란 그런 방향으로 정치와 윤리가 변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곧, 국가나 권력이 구성원 전체의 복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공공성의 증진이다.¹⁴⁾ 정치의 주체나 수혜자의 범위가 확장되는 방향으로의 변화, 독재·독선·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모색되고 정비되는 것, 그 같은 방향으로 공동체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문화가 구성원들 사이에 강화되는 것, 그를 통하여 인민 전체의 행복이라는 방향으로 체제의 도덕성과 능률성이 함께 증대되는 것,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가 공공성의 확장 또는 발전일 것이다.

공공성의 위축이란 그 반대방향으로의 변화를 가리킨다. 국가나 권력이 독재자나 소수 지배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 부정과 부패가 확대되고 공적 기강과 도덕적 규범이 해이되는 것, 권력과 부가 소수에 독점되고 국가가 사유화하는 것, 비판과 토론이 금지되고 공동체 내부의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정화하고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이 약화되는 것, 종교나 이데올로기 또는 사회 전반의 문화가 공동체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제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개혁의 동력으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 그래서 민중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중국적으로는 국가나 권력이 그 존재이유를 상실하는 것,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공공성의 위축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성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체제나 국가에 대해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시기 특정 권력행태의 공공성 구현여부나 정도를 다른 체제나 시기와 비교하여 설명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평가에 상응하여, 국가와 권력 또는 정책이나 정치행동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공공성의 확장·전진은 정치적 정의나 선, 정당성과 정통성의 강화와 동행할 것이다. 공공성의 위축·후퇴는 불의나 악, 그리고 정당성과 정통성의 약화와 동행하기 마련이다.

私共媒-幸福共創이라 제시하는데, 개개인의 주관적 내면에 존재하는 良志의 역할에만 기대하는 것은 불안하다는 문제가 있다.

13) 개개인의 실천행동을 강조하는 공공철학에서는 ‘공공한다’는 동사형의 용어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 같은 용어에는, 공공성은 (그 구현모습이 상대적이고 다양하며 진선진미한 완성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과) 각자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최선을 찾으면서 노력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보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14) 링컨이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의 전환은 그 이상적 모습을 표현한 명제일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최선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체제를 찾으려는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실험하고 모색해온 경험과 성찰의 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공공성을 구현하는 정치나 국가는, 그 권력의 주인이자 주권자가 인민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도 인민이며, 권력행위나 국가의 존재목적 또한 인민의 복지인 정치 또는 국가이다. 공공성의 내용도 공론장속에서 인민이 결정하며, 권력의 공공작용의 진정성과 현실성은 지속적으로 감시되고 검증되며 개혁되고 보완된다.

공공성은 지배·권력·국가의 정당성·정통성을 결정하는 요인이자, 바람직한 정치 및 질서에 대한 사고에서 핵심되는 요인이다. 국가나 권력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핵심적 기준가치가 공공성이며, 기존의 권력에 대한 저항과 혁명행동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 역시 공공성이다. 공적 행위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 역시 공공성이다. 그 같은 공공성 지향이 선의지에 기초한 진정성에 더하여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정치력과 제도적 수단까지 동반하고 있다면 그 통합력과 파급력은 지대할 것이다. 공공성은 또한 공동체의 치란홍망과 통합·분열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공공성의 확장-진전은 통합과 번영으로 나아가며, 위축·후퇴는 분열과 갈등으로 나아간다.

4. 미시적 분석의 틀

미시적 분석은 공공성이 추구되고 모색되는 양상을 개별 학자나 학파, 실천운동별로, 또는 정책이나 제도, 체제별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분석단위는 개별 학자나 학파의 사상과 실천운동, 제도, 특정 사회-시기의 정책이나 제도-체제 등이 될 것이며, 공공성에 대한 우리의 실천적 차원의 관심은 이런 미시적 차원의 분석들이 축적되어야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고대의 율령국가에서, 플라톤의 공화국에서, 조선조 성리학사상에서, 유교국가 체제에서, 일본의 막부체제나 천황제국가에서 사회주의나 자유주의에서, 공공의료나 복지정책·공공행정 같은 제도·정책에서 공공성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접근되며 추구되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에 포함된다. 개별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축적되어야만 일반적 유형화나 이론화가 가능하고, 실천적 질문들에 대한 유효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미시적 수준에서의 분석작업들이 보다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산만하고 중구난방식은 곤란하며, 무얼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한 통일적 지침이 필요하다. 미시적 분석에서 유념해야 할 분석요목 또는 분석틀은 여러 각도에서 가능할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8개 항목은 필수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장 혹은 집단의 수준, ② 우선시 되는 공익가치의 내용과, ③ 공공성의 구현주체, ④ 공공성의 수혜자, ⑤ 공론장의 양상, ⑥ 공익추구방법 ⑦ 실천덕목, ⑧ 정당화논리 등 8개 항목이 그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⑨ 개별 분석 대상들에 대해 그가 출현한 시대적-사상적-사회적 배경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어야 하며, ⑩ 이상 9개 항목에 대해 다른 사례들과 비교를 통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석되고 일반화될 수 있는 이론을 찾아내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¹⁵⁾

①의 장(집단)의 수준은 공공성이 논의되는 집단이나 장의 수준을 가리키는 것으로, 공공성이 모든 수준의 공동체에서 추구되는 가치라는 점에 착안하여, 분석대상이 되는 공공성 관련 담론이나 행위가 어느 수준-유형의 공동체에서 제기되고 실천되었는지를 구분해내는 작업이다. 국가 수준에서 논의된 것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지역·이익집단·정당·교회·시민사

15) 김동노교수는 공공성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에서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두 사상이 이해하고 추구하는 공공성을 구현주체와 절차, 그리고 내용이라는 세 각도에서 비교 분석한 바 있는데, 이같은 작업은 비교공공성연구에서는 미시적 분석의 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설정한 세가지 분석항목 중, '주체'는 필자의 ③ 공공성의 구현주체에 해당하며, '내용'은 ① 장 혹은 집단의 수준, ② 우선시 되는 공익가치의 내용, ④ 공공성의 수혜자, ⑦ 실천덕목 등을, 그리고 '절차'는 ⑤ 공론장의 양상과 ⑥ 공익추구방법 등을 포함하는 항목이라 각각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노,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한국사회의 공공성」, 『사회이론』 제45호, 2014 참조.

회 등 비국가적 공동체수준에서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¹⁶⁾ ②의 추구되는 공익가치는, 각 공동체나 사상이 추구하는 공동이익이나 복지로의 공공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공동체마다 구성원의 복지-행복은 달리 규정될 수 있으며, 특히 그를 제약하는 요인 역시 다르다. 공공성은 정치적-사회적 방면의 가치일 수 있고,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의식주생활의 현실문제나 안보문제 등일 수도 있고, 평등이나 자유·평화 같은 추상가치일 수도 있다. 공동체가 설정하는 공익가치는 공동의 복지를 위협하거나 공공성에 대항하는 요인(반공익적 요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내용이 채워지기 마련이다.

③의 공공성 구현주체는 공공성을 구현하거나 실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공공성의 내용을 규정하고 관리하며 담당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가리킨다. 국가나 군주·사대부·시민·국민·계급 등 다양한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데올로기나 사회의 세력관계에 따라 사회의 모습이나 관점이 다르며, 공공성을 구현하는 주체에 대한 설정도 다를 수 있다. ④의 공공성의 수혜자는 해당 사회에서 규정되는 공공성의 내용이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지, 그로부터 혜택 받는 자가 누구인지 하는 문제이다. 군주나 귀족계급에 한정될 수도 있고 시민 또는 국민으로 확대될 수도 있으며, 명목상 수혜자와 실질적 수혜자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권력분포에 따라 혜택 역시 차등적으로 배분될 수도 있다. ⑤의 공론장의 양상은 공공성의 내용과 구현방법을 결정하는 장 또는 과정에 관한 것이며, 참여자(범위)나 개방성·확실성의 정도, 제도 및 소통매체 등이 문제될 것이다.¹⁷⁾ 사회의 권력분포나 국가나 공동체의 선진화 정도에 따라 공론장의 양상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관습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고, 명문화된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⑥의 공익추구방법은 공익-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공동체의 우선과제나 정치적 요구, 그리고 동원 가능한 수단이나 자원 및 문제에 대한 파악방식에 따라 다양한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복지정책이나 토지정책, 조세정책, 산업소유정책 등 다양하며, 가령 근대국가에서는 사회주의적 방법이나 자유주의적 방법, 조합주의적 방법 등의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⑦의 실천덕목은, 공공성이 강조하는 실천덕목 또는 삶의 양식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으로, 공동체의 유형이나 전통, 그리고 기반하는 이데올로기에 따라 다르게 제기된다. 충·효나 애국심, 인·의·사랑·봉사·참여·절제 등 다양할 수 있다.¹⁸⁾ ⑧의 정당화논리는 공공성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하는 것으로, 가령 신의 의지나 이기론철학 등에 기댈 수도 있고, 사회계약설·공리주의·맑시즘 등을 동원하여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⑨의 시대적·사상적·사회적 배경은, 해당 분석 대상되는 사안이 어떤 시대배경 속에서 어떤 사상적 사회적 영향관계나 맥락 속에서 출현하였는지를 살피는 것이고, ⑩의 다른 사례와의 비교는 이상의 9개 항목별로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드러내주는 과제이다.

16) ‘Common’으로의 공공성은 특정인이 아닌 모두에게 관련된 속성을 가리키는데, 이 경우 Common은 집단을 특정하지 않고 어떤 유형의 집단-공동체에서이든 사용될 수 있다. 또 ‘Official’로의 공공성은 흔하게는 정부(국가나 자치단체)와의 관련성에 초점 맞춘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거시적 주제를 다루는 특성의 사상이 거론하는 공공성은 복수의 수준에 걸쳐있다는 점이다. 가령 유교사상이 논하는 도와 덕은 가정과 국가에서 천하에 이르는 다양한 국면에 미치고 있는 바, 유교의 공공성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교의 공공성을 논함에 있어서는 어느 수준의 장에서의 공공성담론인지를 먼저 한정할 필요가 있다.

17) ‘Open’으로의 공공성은 주로 공론장과 관련된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할 수 있다. 공공성은 공동체와 관련된 사무가 공개된 장 속에서 구성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가리킨다.

18) 忠은 전통사회의 국가공동체 안에서의 공공성을 도모하는 덕목이라 할 수 있고, 孝는 가족공동체 안에서의 공공성에 관계된 덕목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하게 전개되고 실천되는 공공성 양상에 대해 우열의 평가를 내림에 있어서도 8개의 항목별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 평가 부분은 연구자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론 기반에 따라 달리 진단될 있을 것이나, 필자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진술이 가능하다고 본다. 먼저 ①의 장의 수준 또는 집단수준과 관련해서는, 자기의 집단에만 적용되는 논리가 아니라 상대집단에게도 같은 논리나 기준이 적용되는 공공성 담론에 대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¹⁹⁾ 또 ②의 가치내용과 관련해서는 관념적이거나 구호상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행복을 가져다주는 공공성이 우수하다고 할 것이다. ③의 구현주체와 관련해서는 권력자 한두 사람의 시혜에 의한 공공성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이들이 정치의 주역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달성되는 공공성이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다. ④의 수혜자의 측면에서도 특정의 세력-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범위 면에서 좀 더 많은 이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공공성이 우월할 것이다.

⑤의 공론장의 측면은 보다 제도화된 틀 속에서 개방적인 참여와 토론이 가능한 공공성방식이 좋을 것이다. ⑥의 공익추구방법의 측면은 진정성 있고 실천 가능한 정책수단에 기초하여 접근되는 공공성이 우수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 ⑦의 실천덕목 측면에서는 일방적이거나 관행에 기초한 덕목보다는 쌍방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덕목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⑧의 정당화논리 측면에서는 추상성-관념성이 최소화되고 경험적 사실에 기초한 설명이 뒷받침되는 경우를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⁰⁾ 여기서 말한 우-열의 전개양상들은 공공성의 확장과 위축에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고 생각된다. 곧, 우월한 방향으로의 발전은 공공성의 확장으로, 그 반대는 공공성의 위축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5. 거시적 성찰의 주제들

거시적 성찰은 공공성 관련 현상을 국가적 수준의 정치·사회적 동태와 관련하여, 좀 더 긴 시간흐름 속에서 상관관계·인과관계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공공성의 구현 상태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연구 작업을 가리킨다. 비교공공성의 거시적 연구주체들은 공공성 관련 정보의 축적에 머물지 않고, 공공성의 확장·구현이라는 실천적 과제에 도움되는 지식을 생산하는 데에 궁극적 관심이 미쳐있다. 여러 수준의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질문이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곧, ① 공공성을 파괴하거나 후퇴·위축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② 공공성을 확장-진전시킨 요인은 무엇인가, ③ 공공성의 추이와 공동체의 (치란홍망의) 운명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④ 인류역사가 거쳐 온 각 시기의 정치와 사회를 공공성 구현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어떤 평가가 가능한가, ⑤ 비교공공성 연구가 공공성의 확장이라는 실천적 과제에 주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시대나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 우선적 요인이 다를 수 있고, 각 요

19) 가령, 지배집단 내에서만 적용되는 공공성이 아니라 피지배집단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공공성논리, 자기 민족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상대 민족의 복지까지 고려하는 공공성담론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며, 대내도덕과 대외도덕의 일치라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 전제군주체제 하에서 구현되는 공공성 보다 민주체제에서의 그것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로는, 수혜자나 정치주체가 전체 인민으로 확장되어 있고, 제도화된 공론장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우선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인들이 작용하는 양상이 또한 다를 것이다. 비교공공성 연구는 서로 다른 사례들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이들 요인과 양상에 대한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을 찾는데 유념한다. 비교공공성 연구는 이들 5개 질문 중 앞의 3개와 관련해서는 그 대답에 대하여 일정한 가설을 세울 수 있다고 본다.

첫 번째 질문은, 공공성을 파괴하거나 후퇴-위축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또 여러 요인이 있다면 영향을 끼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자연상태는 공공성의 확장과 구현을 방해하는 요인들로 가득 차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성을 저해하고 파괴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대개 다음의 네 가지를 가설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①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악마적 본성이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 존재이다. 나의 안전과 행복을 남보다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며, 남보다 많은 권력과 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 그 욕망은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욕·권력의지로 나아가면서 타인이나 공동체와 충돌하게 된다. 인간의 내면에는, 자기의 편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남을 학대하고 지배하며 남의 고통 받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을 얻는 병적 심리까지 존재한다.²¹⁾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들이 이 같은 악마적 심성에 의해 절제되거나 억제됨이 없이 지배되고, 그를 제약하고 개선하기 위한 외적 장치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공공성은 여지없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인간사회가 발전시켜온 규범문화나 제재장치들, 그리고 교육활동은 이러한 반공공성적 본성을 억제하고 공공성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데 중요한 의도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② 힘을 가진 자들의 무절제한 방종과 횡포이다. 공공성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주체는 사람이며, 특히 힘을 갖고있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엘리트이론가들의 말처럼 사회는 과두화하기 마련이며, 전체 공동체의 운명은 사회를 지배하는 소수의 역량과 도덕성에 의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힘을 가진 자가 앞에서 말한 악마적 요인에 의해 휘둘리게 되면 사회의 공공성은 여지없이 파괴되게 된다. 지배자나 권력층, 사회경제적 강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달성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불편해하고 배척한다. 사회에 존재하는 규범이나 법규, 상호간의 합의까지도 무력화시키면서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일쑤이며, 공공성을 훼손하고 구성원들을 고통에 빠뜨린다. 특히 사회적 장치에 의해 견제되지 않고 자제력마저 상실한 권력은 폭정으로 이어지면서 저항과 혁명을 초래하였다. 정치사를 통하여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켜 온 것이나, 각종의 종교가 통치자들의 자기수양과 절제를 강조한 것은 이 점에서 출발한다 하겠다.²²⁾

③ 조직이나 국가의 보수화 및 자기관철 경향이다. 인간사회의 조직이나 국가 같은 인위적 기구들은 결성될 때는 구성원의 복지구현 같은 공공성 명분을 앞세우면서 대중을 동원하지만, 이 인위적 고안물이 일단 정착하여 작동되기 시작하면 구성원의 복지라는 고유적 존재이유에 충실하기보다는 조직이나 구조 자체의 논리나 이익을 쫓아서 움직이게 된다. 일단 만들어진 제도나 구조는 안팎의 환경이 변화하는데 적응하여 스스로를 개혁해야만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한번 자리 잡은 제도나 구조는 자체로 정당성을 독점하면서 보수화하고 자기혁신을 방해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혁명에 의한 근본적인 체제변혁의 위기를 초래하기 마

21) 프로이드가 말한 새디즘과 마조키즘의 심리는 에릭프롬이나 아도르노 같은 학자들에 의해 파시즘과 권위주의체제를 출현시킨 배경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맹자(「공손추」편)가 인간에게 공유되어 있다고 한 측은지심(동정심)-시비지심(정의감)-수오지심(양심)-사양지심(양보) 같은 덕목은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보다 희망이나 당위로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22) 유교는 끝까지 통치자의 역할에 의지하여 內聖外王論을 주창하고 있지만, 플라톤은 철인군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하에 법률에 의한 통치를 차선으로 선택하게 된다.

런이다. 국가는 국가이성을 내세워서 스스로를 절대화하며, 구성원의 복지나 공공성은 방기되거나 목적 아닌 수단적 가치로 전락하게 된다. 중국적으로는 통치자나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위한 사적 기관으로 전락하고, 기존질서와 이익체계를 유지-강화하는 일에 봉사하며, 결과적으로 공공성을 제약하고 그에 대립하게 된다. 국가나 제도에 대한 민주적 감시와 통제의 필요성이나 개혁과 혁신에 대한 요구는 이런 배경 속에서 제기된다.

④ 외침이나 자연재해 같은 공동체 외적 요인이다. 공공성은 사회의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조정되는 사안인데, 그러나 많은 경우 외침이나 자연재해 등 공동체 외적 요인에 의해 공공성이 논의되는 장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이 초래된다. 공공성은 밖으로부터의 적과의 싸움에서 패하거나 대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천적으로 그 존립환경을 상실하게 된다. 전쟁은 인간성의 말살까지 정당화하며, 특히 고대의 전쟁은 패자의 모든 것을 박탈하여 공동체 전체를 파괴한다. 자연재해도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며 공공성에 대해 배려할 여유를 박탈한다. 이러한 위기들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필요성은 리더십과 국가권력의 개입을 요구하기도 한다.

두 번째 질문은, 공공성을 확장·진전시킨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또 여러 요인들이 관여한다면 그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다) 공공성은 그를 방해하는 힘들을 규제하는 인위적인 노력과 행동의 결과로서 달성되었다. 정치적으로는 특히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억제하는 처방 및 행동들과 함께,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개개인의 이기적 욕구를 억제하는 사회적·문화적 장치들과 함께 확장되었다. 공공성의 확장과 진전에 기여한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4가지를 가설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① 피지배층 또는 소외세력의 저항과 압력이다. 지배자나 기득권세력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거나 양보하여 공공성을 확장한 경우도 있지만, 역사적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많은 경우는 피지배층이나 공공성에서 소외된 계층이 폭정이나 불공정성에 반대하고 행동으로써 항의해야만 치자나 지배층이 비로소 절제하고 배려하는 행동에 나섰으며, 그 과정에서 공공성도 개선되었다. 급격한 정치적 변동(정변)의 많은 부분은 권력갈등에 본질이 있고 지배자의 교체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공공성의 획기적 개선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과정에는 피지배층이나 피해당사자 및 양심세력들의 참여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²³⁾

② 둘째로, 관습과 법률 같은 규범문화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견제장치이다. 사회가 발전시킨 관습과 법률 및 제도들 속에는 치자나 기득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피치자의 편에서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억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도 있다. 이들 규범과 제도들은 사회가 오랜 시간 내적 갈등을 거쳐 오면서 경험한 시행착오를 반영하고 있으며, 공존과 평화를 위하여 사회구성원 또는 갈등 당사자들이 절충하고 타협한 결과물이기도 하다.²⁴⁾ 이들 규범과 제도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행동원칙과 정의의 모습 및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하고 사회의 평화와 공공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

③ 셋째로, 이데올로기나 종교이다. 이데올로기나 종교를 계급적 지배의 도구라 보는 견

23)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의 발전은 유혈충돌과 희생을 수반한 피치자들의 저항과 요구, 특히 시민혁명의 결과로서 이룩되었다.

24) 사회제도나 규범에 대한 맑시즘의 관점은 그가 지배계급에 봉사하는 측면에만 주목한다. 그러나 상부구조 속의 제도나 문화가 지배계급의 이니셔티브 속에 작동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피지배계급의 복지가 일정하게 배려되고 있다고 본다.

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나 종교는 정의와 진리에 대한 보편적 규정에 토대하여 이상적 공동체에 대해 진술하기 마련이며, 그 안에는 바람직한 공공성 모습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기 마련이다. 이들은 약자나 피치자에게만이 아니라, 강자와 통치자들에게도 그 역할과 의무에 대해 제시한다. 종교가 제시하는 인-사랑-자비 등과 같은 덕목이 그것이며, 치자나 강자들에게는 더욱 강화된 절제와 실천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데올로기나 종교가 제시하는 공공성 규정은, 공공성 담론의 당사자, 곧 개인과 공동체, 통치자와 민중의 입장이 절충된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넷째로, 통치자 및 기득권자의 양보와 솔선수범이다. 역사 속에는 가진 자들의 약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 및 도덕적 솔선수범으로 공공성을 진전시킨 모범사례들이 찾아진다. 피치자의 저항이나 압력에 밀려서 불가피하게 피동적으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지위나 이익을 내려놓고 공동체나 약자를 위하여 양보하고 헌신하며 공공성을 진전시키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선도하는 것이다. 그런 행동은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있는 선한 본성의 산물일 수도 있고, 종교나 이데올로기의 감화나 후천적 교육의 결과일 수도 있다. 그리고 강자나 승자에게 기대되는 도덕적 의무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에 의해 공공성은 전진해왔다 할 수 있다.

비교공공성 연구가 탐구해야 할 거시적 수준의 질문 중 세 번째의 것은 공공성이 확장-위축되는 추이와 공동체가 治亂興亡하는 동태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 질문은 공공성 문제가 왜 중요한지, 또는 비교공공성연구가 실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는 것을 부각시켜 줄 것이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공공성의 확장-진전은 공동체의 통합과 평화를 결과하고, 그 후퇴와 위축은 분열과 갈등을 결과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²⁵⁾

비교공공성 연구가 관심 갖는 네 번째의 주제는 특정시기의 정치와 윤리를 공공성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각각의 국가나 권력이 공공성을 구현하는 기관이자 기제였던가, 정치적 주역들의 사고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해당 시대는 공공성증진이라는 인류사적 과제에 대해 어떤 진전을 이루었던가, 이런 질문들이 해당할 것이다.

공공성의 위축과 확장은 앞에서 말한 미시적 분석항목들이 발전되고 후퇴하는 추이와도 관련 있다 하겠다. ① 장 혹은 집단의 수준, ② 우선시 되는 공익가치의 내용과, ③ 공공성의 구현주체, ④ 공공성의 수혜자, ⑤ 공론장의 양상, ⑥ 공익추구방법 ⑦ 실천덕목, ⑧ 정당화논리 등 8개 항목에서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공공성의 확장이 결과되고, 후퇴하면 공공성의 위축으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물론 8개 요소들의 발전·후퇴양상과 공공성의 확장-위축의 관계, 더 나아가 통합-분열과의 관련성 역시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검증되어야 할 사항이다.

6. 맺음말

25) 공공성의 확장이 통합과 평화를 결과하고, 위축과 후퇴는 분열과 갈등을 결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동의될 수 있지만, 그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 어느 요인이 공공성의 확장과 위축에 우선적으로 작용하는지 하는 문제 역시 답변이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공공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성의 확장을 위한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우선요인에 대한 자료축적은 매우 중요하다. 비교공공성 연구는 공공성의 추이와 공동체의 치란흥망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공공성은 공동체의 복리에 봉사하는 속성이며 가치이다. 그것은 권력과 국가의 정당성의 근거이며,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 역시 공공성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진다. 공공성은 모든 공동체에서 추구되기 마련이며, 다만 그 추구하고 진술되는 구체적 내용과 양상은 시대환경에 따라, 그리고 지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비교공공성 연구는 역사가 공공성을 향한 전진과 후퇴의 기록으로 채워져 왔다고 전제하며, 여러 주체들의 꾸준한 노력과 헌신에 힘입어, 그리고 숭한 시행착오를 거쳐오면서 공공성을 향한 진전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대와 장소마다 다양하게 추구되는 공공성의 양상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공공성 증진이라는 일반과제에 도움되는 지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상정한다.

비교공공성 연구는 미시적 수준에서의 분석에서 적용할 10개의 분석항목과, 거시적 차원에서 씨름해야 할 5가지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미시적 차원의 분석항목은, ① 장 혹은 집단의 수준, ② 우선시 되는 공익가치의 내용과, ③ 공공성의 구현주체, ④ 공공성의 수혜자, ⑤ 공론장의 양상, ⑥ 공익추구 방법 ⑦ 실천덕목, ⑧ 정당화논리, ⑨ 개별 분석 대상들의 시대적-사상적-사회적 배경과, ⑩ 다른 사례들과의 비교 등이다. 그리고 거시적 차원에서 씨름해야 할 질문들은, ① 공공성을 파괴하거나 후퇴-위축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② 공공성을 확장-진전시킨 요인은 무엇인가, ③ 공공성의 추이와 공동체의 (치란홍망의) 운명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④ 인류역사가 거쳐 온 각 시기의 정치와 사회를 공공성 구현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어떤 평가가 가능한가, ⑤ 비교공공성 연구가 공공성의 확장이라는 실천적 과제에 주는 지혜는 무엇인가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시적 차원의 분석틀은 공공성이 추구되는 다양한 양상들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데 적용해야 할 일반적 분석항목들이며, 각 항목별로 우열의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곧 장의 수준 또는 집단수준과 관련해서는, 자기의 집단에만 적용되는 논리가 아니라 상대집단에게도 같은 논리나 기준이 적용되는 공공성 담론에 대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며, 가치의 내용에서는 관념적이거나 구호상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행복을 가져다주는 경우에 대해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구현주체와 관련해서는 권력자 한두 사람의 시혜에 의한 공공성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이들이 정치의 주역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달성되는 공공성이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수혜자의 측면에서 보면 특정의 세력-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범위 면에서 좀 더 많은 이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공공성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론장의 측면은 보다 제도화된 틀 속에서 개방적인 참여와 검증 및 토론이 가능한 공공성방식이 좋을 것이며, 공익추구방법에서는 진정성 있고 실천 가능한 정책수단에 기초하여 접근되는 공공성이 우수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천덕목에서는 일방적이거나 관행에 기초한 덕목보다는 쌍방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덕목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정당화논리의 측면에서는 추상성-관념성이 최소화되고 경험적 사실에 기초한 설명이 뒷받침되는 경우를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월한 방향으로의 발전은 공공성의 확장-진전으로 나아가며, 그 반대는 공공성의 후퇴나 위축을 결과할 것이라 보지만, 이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검증되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거시적 주제들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연구자들이 각자의 분석과 성찰을 통하여 찾도록 요구된다. 다만 공공성을 위축시키는 요인과 진전시키는 요인에 대해서는 각각 4개씩의 중요한 요인들을 먼저 가설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논의와 탐색의 작

업을 이끌도록 하였다. 곧 공공성을 파괴-위축시킨 요인으로는 ① 인간내면의 악마적 본성과, ② 강자들의 무절제한 방종과 횡포, ③ 조직이나 국가의 보수화경향, ④ 외침이나 자연재해 같은 외적 요인 등의 4가지를, 공공성을 증진-확장시킨 요인으로는 ① 피지배층의 저항과 압력, ② 규범문화나 합의된 견제장치, ③ 이데올로기나 종교, ④ 기득권자의 양보와 솔선수범 등 4가지를 우선적으로 상정하였다. 비교공공성연구는 이상에서 제기한 변수요인들을 검증하는데서 머물지 않고, 가설에서 상정하지 않은 요인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상사회를 위한 노력은 두 방향에서 경주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체제나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제도우선론자들은 평화와 변형을 가능하게 해줄 제도와 체제의 원리를 발견하는 데 힘을 쏟고, 현실을 그에 입각하여 개혁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제도와 체제는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고,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그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이 이상적이라 해도 평화와 정의 및 변형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이에 사람을 바꾸는 과제가 부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을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철학원리나 덕목들을 던져준다고 해서 그가 받아들여지고 실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공성을 증진시키고 확장시키는 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찾아내고 조성하는 노력도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이상사회의 개념과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든 공공성은 그 핵심가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비교공공성 연구는 역사적 경험과 사실들에 기초하여 공공성의 진전과 후퇴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찾아냄으로써 공공성 증진이라는 실천적 과제에 기여하고자 한다. 역사를 통해 구현된 공공성의 추이와 그를 향한 모색의 역사는 정치사와 사상사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이 아닐 수 없다. 비교공공성연구 구상이 갖고있는 연구목적은 정치사와 사상사 연구자들이 갖고있는 그것과 궁극적으로 상통한다고 보며, 비교공공성연구가 제안한 미시적 분석틀과 거시적 질문들도 정치사.사상사연구를 좀더 생산적이면서 의미있는 것으로 만드는 과제와 관련하여 참고되는 바 있으리라 생각한다.

***** 표 : 조선정치철학과 유교·자유주의·공산주의의 공공성지향 비교**

아래의 표는 안재홍이 [신민족주의와 신민족주의](1945)에서 제기한 조선고유의 정치철학과, 그가 조선고유의 정치철학과 차별적이라고 본 세가지의 정치이론, 곧 주자학과 자유주의·공산주의가 갖고있는 공공성 관련 지향들을 본 논문에서 제시한 비교공공성연구의 미시적 분석틀에 맞추어 비교한 것임.

	조선정치철학	유교(성리학)	자유주의	공산주의
장의 수준	국가 / 세계	가족 / 국가 / 세계	사회 / 국가	국가 / 세계
공익 가치	** 주로 정치사회적 가치 : 대중공생.만민총언(다사리), 계급협조(통합), 평화, 민족적 자주성. 개인과 국가의 공동발전.	** 주로 도덕적 가치 (인-의-예-지, 삼강오륜, 충효) ** 반공익적 요인 : 반인륜, 패도정치, 무	** 주로 정치사회적 가치 : 자유, 평등, 인권, 민주주의 ** 반공익적 요인 : 독재, 폭정,	** 주로 정치사회적 가치 : 계급해방 및 무계급사회건설. 평등 ** 반공익적 요인 : 사유재산제, 자본계급

	** 반공익적 요인 : 독점. 불평등.독선.분열.갈등	절제.		의 착취와 억압.
구현주체	명시하지 않음. 공동체구성원 전체, 특히 지도층,	군주와 사대부	시민(부르주아) 대의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계급 공산당과 국가
수혜자	명시하지 않음. 공동체구성원 전체, 특히 피지배층 및 약자에 배려	民 (실제로는 지배층) 신분계층별로 차등적 수혜	시민(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공론장	다사리 = 다 사된다 = 萬民總言	지배층 내부의 소통과 견제 (민은 소외됨)	자유시장 의회제도. 언론자유	민주적 중앙집중제 공산당독재
추구방법	개합회통 (공식주의배격)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적정조합 초계급적 국가론	개인수양 교육 덕치.예치	자유경쟁.다수결.의회민주주의.법치주의	프롤레타리아혁명 프롤레타리아독재
실천덕목	다사리 개합회통	충.효.예.인의. 삼강오륜 성왕론, 군자론.	자유경쟁 준법정신 관용	혁명의 이익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정당화	조선고유정치철학 (물심양원론, 지속발전의 역사관, 圓眞美善을 추구하는 가치관, 개인과 국가의 조화합일을 지향하는 국가관, 다사리사상과 개합회통론)	대일통론 계서적 질서관 천명과 인륜 법치보다 人治-德治를 선호	자연권사상. 사회계약론. 계몽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 보이지않는 손	유물사관 (유물변증법) 계급투쟁론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
배경	안재홍이 주창 국학운동과 대종교 좌우익 분열, 자주독립의 미완성	공자. 주자 종법제.군주제.신분제 사회(사농공상) 중국의 정치.군사.문화적 지배	존로크. 루소. 밀. 아담스미스 부르주아계급의 성장 절대주의의 모순 자본주의의 성장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자본주의의 모순 계급착취와 인간소의 유토피아사상

국호(國號) 및 국가승계에 대한 한·중 비교분석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가·정부 논쟁 해명

Dissolving the Debates over whether the ‘Republic of Korea’ is a State or a Government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Title of a State and Succession of States between Korea and China

박병석
서울사이버대학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년 11월 3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고시한 바 있다. 이후 학계, 정계 및 언론계에서는 좌우파 간의 극단적인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1월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1948년 8월 15일을 정부수립이 아닌 건국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11월 3일 “.....(기존 검정교과서가)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왜곡 전달한다.”고(남윤서·백민경, 2015.) 발언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건국절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좌파는 “한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일파를 건국의 주인공으로 포장하려는 것”이라며(이재훈, 2015: 2/3)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성과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민족반역자인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려는 ‘역사세탁’이 바로 건국절 주장의 본질”이라고(역사학계, 2016) 극단적으로 비판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설’은 심지어 “여러 층위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동반한 현실적 권력투쟁”(廉武雄, 2015: 30)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16년 후반에 이르러 일부 학자와 언론인들이 언론과 학술지를 통해 관련 논쟁을 치열하게 전개했다(姜圭炯, 2016; 柳錫春, 2016; 朴明林, 2016; 宋平仁, 2016; 池秀傑, 2016; 신용욱, 2016; 최혜성, 2016; 양동안, 2016 등). 이 논쟁은 사실 10여 년 전인 1998년 8월 15일을 ‘건국 50년’으로 규정한 좌파 정권에서 제기된 바 있고, 이어서 2006-2009년 간 건국절 제정을 둘러싸고 정부수립 60주년인 2008년에 1919년 4월 11일(또는 13일)이 건

국일이냐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냐에 대한 좌우파 간 진행된 논쟁의 연장선이다(李榮薰, 2006; 金孝善, 2008; 韓永愚, 2008; 金三雄, 2008; 歷史批評編輯部, 2008; 韓詩俊, 2008/ 李完範, 2009).

2008년 이후 진행된 논쟁 중 절충파의 입장도 있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완범(李完範) 교수(한국정치사)는 “여론을 수렴해 국가가 기념하는 기념일은 하나로 정비하되 민간의 다양한 입장까지 하나로 통일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李完範, 2009: 86) 하면서 “광복절을 개칭하려 하지 말고 정부수립기념일(혹은 건국절이 아닌 건국일, 신건국일, 대한민국건국일)을 같이 병기하여 함께 기념”할(李完範, 2009: 88)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하면 “1919년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져왔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는 합법성-정당성(legality)을 가져왔다고 하면 양자간의 갈등관계도 화해되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의 합법성으로 계승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李完範, 2009: 88)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편의적인 절충설일 뿐 체계적이거나 이론적인 접근이 아니다. 그리하여 그는 남쪽이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1948년 대한민국을 국호로 채택하였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범이 건국이고 19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국가재건)일 뿐”이라고(李完範, 2009: 74) 하였고, 또한 건국의 기준을 국민·주권·영토 등 근대국가 3요소에 들지, 입법·사법·행정의 국가조직 성립에 들지를 따질 때 “1919년이나 1948년 모두 건국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1919년의 부족한 점이 1948년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라고(李完範, 2009: 78) 납득하기 어렵게 주장하게 된다.

경희대 서희경(徐希慶) 연구교수(한국정치)는 2008년 8월 건국절 제정 논쟁과 2004년 이래 교과서 논쟁의 핵심은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오늘날 좌파(진보)와 우파(보수) 간의 대립은 기본적으로 1948년 제헌 시기 김구의 대한임정 세력과 이승만 한민당의 대한민국 건국 세력 간의 대립의 계승이며, 이념적으로는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립으로, 민족주의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분단을 수용하고 철저한 친일파 숙청을 유보했다는 주장으로(徐希慶, 2015: 2) 논쟁을 이념 대립으로 단순화했다. 서희경은 같은 글에서 통일지향적 민족주의와 반독재적 민주주의라는 도덕주의에 의한 역사 재단이나 도덕주의적 판단을 지양하고 역사·정치·생활의 헌법 원리의 관점에서 재성찰해야 한다고(徐希慶, 2015: 8-9) 주장했다.

동국대 황태연(黃台淵) 교수(서양정치사상)는 1945년 8월이 정부수립이 맞냐 건국이 맞냐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5000년 전부터 정치 체제만 바뀌어 왔을 뿐 오랜 세월 동안 국민국가가 형성된 나라에서 언제 나라가 생겼는지 따질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굳이 따져야 한다면 1897년 대한제국 선포를 건국 시점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申俊奉·黃台淵, 2015) 주장했다.

연세대 박명림(朴明林) 교수(한국/북한정치)는 “우선 ‘대한민국은 모든 나라에 있는 건국절이 없는 나라’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모든 나라는 고사하고 건국절이 있는 나라 자체가 극히 드물다. 오랜 역사를 갖는 문명국가 중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특정 국가 정체성의 출발을 기념하는 건국절, 건국기념일이 있는 나라를 찾기 힘들다. 자기들 문화·문명·공동체·민족·국가의 유구한 역사에서 근대·현대의 특정 정체성의 등장 시점으로 건국 기점을 삼을 경

우 자신들의 연면성(連綿性)과 통합성, 역사성과 계속성에 대한 자기부정이기 때문이다.”라고 건국절 제정과 건국절 기념을 반대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건국 정신과 원칙, 헌법과 철학을 고구하여 오늘에 되살리려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朴明林, 2016: 35) 주장했다. 박명림은 일견 건국절 제정과 기념을 반대하는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아울러 ‘대한민국 건국 정신’을 말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백범사상연구소 부소장 최혜성은 좌파의 1919년 건국설과 우파의 1948년 건국설을 모두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지 국가수립일, 즉 건국일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는 역사의 단절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최혜성, 2017). 이는 올바른 판단과 이해를 보여준다.

2015년부터 2017년 동안 제기된 좌우파 및 절충파의 주장은 나름의 특색을 드러냈다. 크게 보아 독립운동사 중심의 한국근현대사 전공자인 좌파는 1919년 건국설을, 일부 정치학 전공자인 우파는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하였다. 절충파도 대부분이 정치학 전공인데 이완범과 서희경은 ‘건국’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황태연과 박명림은 건국 및 건국절을 부정하는 전향적인 입장이었지만 그 이상 학술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다. 좌우파나 절충파의 공통적인 취약점은 그들은 국가건립과 정부수립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 포함)이 국명(國名)인지 국호(國號)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이에 이 연구는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좌파에게 다음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1919년에 건국되었다면, 대한제국 더 나아가 조선과 고려 등은 우리의 국가가 아닌가?
-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가라면 일제하의 한반도는 어떠한 곳인가? 단순히 일본의 식민지인가? 잠시 상실한 영토인가?
- 정부수립을 포함하고 있는 1919년에 건립된 국가가 어떻게 1948년에는 정부로 변신했는가?
- 1948년 한반도 북부에 세워진 정체(政體)는 무엇인가?

그리고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우파에게는 다음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1948년에 건국되었다면,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제국 더 나아가 조선과 고려 등은 우리의 국가가 아닌가?
-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1948년에 건국되었다면, 1919년 출범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은 누구를 위한 독립운동인가?
-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1948년에 건국되었다면, 같은 해 수립된(또는 건국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민족과 상관없는 별개의 분리된 국가인가?
- 남북이 분열된 현 상태는 ‘두 개의 국가’인가? 아니면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정부’ 또는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인가?

그리고 좌우파에게 동시에 다음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 대한민국이 1919년이나 1948년에 건국되었다면 그 이전(고조선 이하 대한제국까지)은 우리의 나라(국가)가 아니라는 것인가?

- 1919년이나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하면 그 이전의 우리의 것이라고 배워온 역사와 영토 및 민족은 누구의 것인가?

-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1919년이나 1948년 이전의 우리의 역사를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떠한 근거로 반박할 것인가?

이러한 여러 문제들은 국명과 국호의 차이, 국가건립과 정부수립,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 정통론 등 주제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본다. 이는 역사학, 정치학, 국제법학, 중국정치사상 등의 학제적인 분석과 중국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본다.

2. 선행연구의 한계와 극복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건국절 논쟁은 주로 대한민국 건국일이 1919년인가 아니면 1948년인가, 또는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한민국이나 1948년의 대한민국이 정부인가 국가인가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주로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Peace of Westfalen)으로 시작된 짧은 역사를 다룬 표피적인 서구 국제법의 관념과 시각으로만 분석한 때문으로서, 그 결과 서구 국제법을 수용하기 이전의 우리의 역사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역사단절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서구 국제법의 이론과 관념을 적극 수용하고 활용하는 동시에 전통 동아시아 역사 사례와 관념을 도입하여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은 건국절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대한민국'이 국명인지 국호인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대한민국'의 탄생이 '국가건립'인지 '정부수립'인지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을 진행하고, 나아가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에 대한 국제법적 이해를 진행하여 우리 민족 역사의 계속성이 담보되도록 기존의 논쟁의 해법을 찾고자 한다.

먼저, 영어에는 국명과 국호에 대응하는 어휘가 없어 국명과 국호가 한자권(漢字圈) 특유의 어휘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각각 국가의 칭호와 정부의 칭호라는 점에서 엄연히 구분해야 하고 그리해야 동북아, 특히 한국과 중국의 역사와 현실의 문제를 푸는 열쇠를 찾을 수 있다.

국내의 국호 및 국명 관련 선행연구로서 안희천(1989), 이완범(2008), 이충우(2001), 허열(2004), 이선민(2013) 및 황태연(2015) 등이 대한민국 국호를, 임대식(1993), 신명호(2011)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의 분리를, 정구복(2013)이 통일 이후의 국호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국호와 국명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전혀 없었다. 이들은 전통시대 왕조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의 명칭이 국호인지 국명인지, 전통시대 왕조명과 근현대 정부 명칭이 국호인지 국명인지, 남북한의 유엔 가입 명칭이 국호인지 국명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조동걸(2003)만이 국명(國名)에 국체(國體) 또는 정체(政體)를 함께 나타낸 국호(國號)와 국명의 차이, 즉 정부와

국가 명칭의 차이를 정확히 언급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1919년 대한민국 건국설과 1948년 대한민국 건국설 논쟁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입장은 국호와 국명을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한 중국 하문대학(廈門大學) 교수 진동(陳動, 2006)의 연구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가의 건립과 정부의 수립은 국가의 승계(succession), 동일성(identity)과 계속성(continuity) 등의 문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국가의 승계와 관련하여 박기갑(1996)과 이근관(2009)이 남북한 국가승계 문제를, 박배근(2006), 백봉흠(1984) 및 Soonchun Lee(2011)가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을, 박배근(2003; 2004; 2006)과 이병조(1972)가 국가 동일성을 연구했다. 이러한 기존의 헌법학과 국제법학계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 이후의 국가와 정부 등의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 글은 결국 ‘대한민국’은 국체 또는 정체가 내포된 정부의 명칭, 즉 국호(國號)이고,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가가 아닌 정부이고,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도 역시 정부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의 역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보다 정통성(正統性)을 더 많이 계승하고 담지한 정부로서 미래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정당하다는 가설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증을 통해 현재의 건국 논쟁은 해소할 수 있으리라 보지만, 우리의 국명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영문으로는 KOREA라는 점에서 공감할 수 있지만 한글이나 한자로의 명명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II. 국명(國名)과 국호(國號)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정체

여기서는 먼저 조선 및 대한제국 시대에 국호와 국명이란 어휘를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사료를 근거로 살펴보고, 이어 현대 ‘대한민국’ 국호 제정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 학계의 국호 및 국명에 대한 이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리고 국호와 국명에 대한 정명(正名)을 통한 ‘대한민국’의 정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선 및 대한제국 시대 국명과 국호 인식

조선 초기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은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상권에 「국호」(國號) 편을 마련하여 “해동(海東)의 나라는 그 호(號)가 일정하지 않았다.”(海東之國, 不一其號.)고 하여 국호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 황경원(黃景源, 1709-1787)에 따르면 홍무(洪武) 25년(1392) 가을에 조선은 명(明)에 “국호를 내려줄 것을 청하였는데, 천자가 말하기를 옛날 은나라 태사(太師)가 처음 조선에 봉해진 바 그 유래가 깊다고 했다. 이에 국호를 내려 조선이라 일렀다.”(請賜國

號. 天子曰: ‘昔殷太師始封朝鮮, 其來遠矣.’ 乃賜國號曰朝鮮. 黃景遠, 『江漢集』, 卷23, 「跋尾: 賜國號詔」)고 하였다. 그러나 황경원은 같은 글에서 “지금부터 고려 국명을 폐지하고 조선의 호를 준용할 수 있다.”(可自今除高麗國名, 遵用朝鮮之號.)고 하여 국호와 국명을 혼용하였다.

조선 후기 이규경(李圭景, 1788-?)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경사편: 논사」(經史篇: 論史)에서 “단기위국호변증설”(檀箕爲國號辨證說)을 지어 “무릇 국호를 두 글자로 하는 것은 오랑캐 후예의 풍속에 가깝고 중국에는 이것이 없다.단과 기는 국호이다.그리고 진과 한도 역시 국호이다.”(凡國號以二字, 乃近夷裔之俗, 中國無此也.則檀 `箕乃是國號.且辰與韓, 亦是國號.)라고 주장했다. 이규경은 이 글에서 기(箕)를 국명(國名)이라 표기하기도 하여 일관성을 결여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국호가 주로 사용되면서 국명이 혼용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근현대까지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앞선 광무 원년 10월 11일 고종은 대신에게 국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상이 이르기를,

“경 등과 의논하여 결정하려는 것이 있다. 정사를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에 모든 예(禮)가 다 새로워졌으니 원구단(圓丘壇)에 첫 제사를 지내는 지금부터 마땅히 국호(國號)를 정하여 써야 한다. 대신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기자(箕子)의 옛날에 봉(封)해진 조선(朝鮮)이란 이름을 그대로 칭호로 삼았는데 애당초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라는 오래되었으나 천명이 새로워졌으니 국호를 정하되 응당 전칙(典則)에 부합해야 합니다.”

하였다. 조병세(趙秉世)가 아뢰기를,

“천명이 새로워지고 온갖 제도도 다 새로워졌으니, 국호도 역시 새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억만 년 무궁할 터전이 실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곧 삼한(三韓)의 땅인데, 국초(國初)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 지금 국호를 ‘대한(大韓)’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또한 매번 각 국의 문자를 보면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韓)이라 하였다. 이는 아마 미리 징표를 보이고 오늘이 있기를 기다린 것이니, 세상에 공표하지 않아도 세상이 모두 다 ‘대한’이라는 칭호를 알고 있을 것이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삼대(三代) 이후부터 국호는 예전 것을 답습한 경우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바로 기자가 옛날에 봉해졌을 때의 칭호이니, 당당한 황제의 나라로서 그 칭호를 그대로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이라는 칭호는 황제의 계통을 이은 나라들을 상고해 보건대 옛것을 답습한 것이 아닙니다. 성상의 분부가 매우 지당하니, 감히 보탬 말이 없습니다.”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각 나라의 사람들이 조선을 한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상서로운 조짐이 옛날부터 싹터서 바로 천명이 새로워진 오늘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또한 ‘한’ 자의 변이 ‘조(朝)’자의 변과 기이하게도 들어맞으니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년토록 태평 시대를 열게 될 조짐입니다. 신은 흠양하여 칭송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국호가 이미 정해졌으니, 원구단에 행할 고유제(告由祭)의 제문과 반조문(頒詔文)에 모두 ‘대한’으로 쓰도록 하라.”

하였다.(『고종실록』 광무(光武) 1년 10월 11일)

아울러 『고종실록』 광무(光武) 1년 10월 13일의 반조문(頒詔文)에 ‘대한’을 국호로 정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봉천승운황제(奉天承運皇帝)는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린다. 짐은 생각건대, 단군(檀君)과 기자(箕子) 이후로 강토가 분리되어 각각 한 지역을 차지하고는 서로 패권을 다투어 오다가 고려(高麗) 때에 이르러서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을 통합하였으니, 이것이 ‘삼한(三韓)’을 통합한 것이다.

우리 태조(太祖)가 왕위에 오른 초기에 국토 밖으로 영토를 더욱 넓혀 북쪽으로는 말갈(靺鞨)의 지경까지 이르러 상야, 가죽, 비단을 얻게 되었고, 남쪽으로는 탐라국(耽羅國)을 차지하여 굴, 유자, 해산물을 공납(貢納)으로 받게 되었다. 사천 리 강토에 하나의 통일된 왕업(王業)을 세웠으니, 예악(禮樂)과 법도는 당요(唐堯)와 우순(虞舜)을 이어받았고 국토는 공고히 다져져 우리 자손들에게 만대토록 길이 전할 만석같은 터전을 남겨 주었다.

짐이 덕이 없다 보니 어려운 시기를 만났으나 상제(上帝)가 돌봐주신 덕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 군사들과 장사꾼들이 한목소리로 대궐에 호소하면서 수십 차례나 상소를 올려 반드시 황제의 칭호를 올리려고 하였는데, 짐이 누차 사양하다가 끝내 사양할 수 없어서 올해 9월 17일 백악산(白嶽山)의 남쪽에서 천지(天地)에 고유제(告由祭)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정하고 이 해를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삼으며,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의 신위판(神位版)을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으로 고쳐 썼다. 왕후(王后) 민씨(閔氏)를 황후(皇后)로 책봉하고 왕태자(王太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하였다. 이리하여 밝은 명을 높이 받들어 큰 의식을 비로소 거행하였다. 이에 역대의 고사(故事)를 상고하여 특별히 대사령(大赦令)을 행하노라.”

1899년(광무 2년) 8월 14일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근대적 헌법이라 할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는 국호나 국명을 언급하지 않고 정체(政體)로서 전제정치와 국체(國體)로서 제국을 명시했을 뿐이다.

이렇게 대한제국 초기에는 ‘대한’ 또는 ‘대한국’이 국호로 불리었고, ‘대한제국’이 국호인지 국명인지는 불분명하였다. 동 시기의 『독립신문』 광무 원년(1897) 10월 16일 자 논설에는 “금월 13일에 내리신 조칙을 인연하여 조선 국명이 변하여 대한국이(大韓)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조선 인민이 대한국 인민이 된 줄로들 아시오.”라고 하여 조선과 대한국을 모두 국명으로 규정하여 국호와 국명의 혼동은 여전하였다.

2. 현대 대한민국 국호 제정 과정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회의 기사록[제1회집: 1919년 4월 11일, 『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院文書』, 대한민국국회도서관편, 1974: 39)에 따르면 “四月 十一日에 國號 官制 國務員에 關한 問題를 討議하자는 玄奘의 動議와 趙素昂의 再請이 可決되어 討議에 入할새 先히 國號를 大韓民國이라 稱하자는 申錫雨의 動議와 李洪根의 再請이 可決되니라.”하여 ‘대한민국’이 국호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같은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과 1919년 9월 11일 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법」에는 ‘대한민국’이 국호인지 국명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1948년 6월 3일 헌법기초위원회 회의에서 국호에 대한 이승만의 뜻을 받든 독촉계(獨促系) 위원들의 ‘대한민국’ 안과 한민당의 ‘고려공화국’ 안 외에 ‘조선공화국’ 안, ‘한국’ 안 등 여러 대안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표결한 결과, ‘대한민국’ 안이 17표, ‘고려공화국’ 안이 7표, ‘조선공화국’ 안이 2표, 그리고 ‘한국’ 안이 1표를 얻음으로써 ‘대한민국’ 안이 채택되었

다고(조용중, 1990: 155; 柳永益, 2006: 122; 권경희, 2008: 3/8) 한다. 헌법기초위원회 서상일 위원장은 “조선 후기와 대한민국임시정부, 국회가 처음 열릴 때 이승만 의장의 식사에도 ‘대한’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며 ‘대한민국’을 국호로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1948년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호 문제가 재론되었을 때 이승만 의장이 “곧 국호문제 토론이 시작될 모양인데 국호가 잘 되지 않아서 독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니 3·1운동에 의하여 수립된 임시정부의 국호대로 대한민국으로 정하기로 하고 국호 개정을 위해서 토론으로 1분이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라고 ‘대한민국’ 안 이외의 토론을 봉쇄하였고, 이어 실시된 표결에서 재석 188명 중 찬성 163표, 반대 2표로 ‘대한민국’ 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大韓民國國會編, 1987: 349; 柳永益, 2006: 122 재인용).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월 16일 자 관보에 국무령고시 제7호 「國號 및 一部地方名과 地圖色 使用에 관한 件」을 발표하여 “우리나라의 正式 國號는 「大韓民國」이나 使用의 便宜上 「大韓」 또는 「한국」이란 略稱을 쓸 수 있으나 北韓傀儡政權과의 確然한 區別을 짓기 爲하여 「朝鮮」은 使用하지 못한다.”(띄어쓰기 - 필자)고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가 되고, ‘대한’과 ‘한국’은 ‘약칭 국호’가 되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호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국명(國名)과 국호(國號)의 구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李忠雨, 2001: 42)일 수도 있지만 국호와 국명이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3. 한국 학계의 국명 및 국호 이해

현재 한국 학계도 여전히 국명(國名)과 국호(國號)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의견을 주로 제시한 한국사(국어교육 포함) 전공자들의 시각을 살펴보기로 한다.

역사문제연구소 임대식(林大植) 연구원(한국현대사)은 조선, 대한제국, 대한을 국호로 보았고, 그 중 대한제국과 대한은 삼한정통론(三韓正統論)을 배경으로 한다고 했다(임대식, 1993: 37). 임대식은 해외의 부르주아민주주의=(종속적)자본주의 노선을 걸은 임시정부는 국호로 ‘대한민국’을 택하여 1919년을 ‘건국기원’으로 했다고 하였고, 사회주의자들은 국호로 ‘조선’에 집착하여 단군조선을 건국기원으로 표기하기도 했다고 한다(임대식, 1993: 39-41).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해방이후에도 지속되었다고 한다(林大植, 1993: 43-48). 임대식은 우파는 대한민국을 좌파는 조선을 국호로 보았고, 이에 따라 각각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단군조선을 ‘건국기원’으로 삼았다는 특이한 주장을 폈다. 그가 지적한 우파의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설이 현재 좌파의 전유가 된 점이 흥미롭고, 좌파들이 단군조선을 건국기원으로 보았다는 점도 흥미를 끈다.

관동대 이충우(李忠雨) 교수(국어교육)는 1950년 「국무령고시」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국호(name of country)로 규정하고 ‘대한’과 ‘한국’은 그 약칭이라 했다(李忠雨,

2001). 그는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대한제국 → 대한민국임시정부 →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왔는데,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정할 당시 ‘한국’은 주로 우파에서, ‘조선’은 주로 좌파에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李忠雨, 2001: 46). 그에 따르면 제헌 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함으로써 국호, 국기 및 국가(國歌)가 모두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같게 되었다고 한다(李忠雨, 2001: 46). 그러나 이충우는 대한민국이나 대한을 모두 국호로 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약칭으로 삭제(clipped word) 현상에 의한 대한(大韓)과 두자어(頭字語, acronym)인 한국 및 단축(短縮, contraction) 현상에 의한 대한국(大韓國)을 모두 대한민국의 약칭으로 보기도 하였고(李忠雨, 2001: 48-50), 심지어는 대한제국을 국명으로 이해하는 등 국호와 국명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호의 영문 표기인 ‘Korea’나 ‘Republic of Korea’는 우리나라의 국호가 ‘고려’로 불리는 것으로서 고려 이후의 조선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 현재의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인상을 줄 수도 있으므로 ‘Republic of Daehan’을 공식 영문 국호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李忠雨, 2001: 60-61). 이충우의 이러한 주장도 역시 국호와 국명을 구분하지 못한 때문이다.

국민대 조동걸(趙東杰) 명예교수(한국근대사)는 전통시대에는 국명과 국호가 동일했는데, 근대 국민국가 성립 후에는 국명에 국체(國體) 또는 정체(政體)를 함께 나타낸 국호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조선, 한(韓) 등은 국명이고,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은 국호이다. 중국의 경우 하은주 ~ 원명칭은 국명이자 국호이고,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국호라고 한다(趙東杰, 2003: 187-189). 조동걸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명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그의 논리에 따르면 대한과 조선을 국명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대한’ 대신 ‘한국’을 국명으로 보았고, 중국의 경우 ‘중화’ 대신에 ‘중국’을 국명으로 보았다. 조동걸은 일제 강점기인 1910년 8월 29일 일왕은 칙령제318호(勅令第三百十八號)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 칭하는 건」(韓國ノ國號ヲ改メ朝鮮ト稱スルノ件)에서 “한국(韓國)의 국호(國號)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朝鮮)이라 칭한다.”(韓國ノ國號ハ之ヲ改メ爾今朝鮮ト稱ス)고 한 것에서 조선이 일본의 땅 이름으로 전락되었다고 보았다(조동걸, 2003: 191). 그리고 조동걸은 통일 후의 국호를 국체를 명시하지 않은 ‘코리아’로 하자고 했다(趙東杰, 2003: 199). 이렇게 조동걸은 한국 학자 중 거의 유일하게 정확히 국호와 국명을 분리하여 이해하였지만 전통시대에는 국명과 국호가 같았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부산대 허열(許烈) 강사는 국호를 name of country로 표기하고, 앞의 입대식과 같이 민족주의 진영은 ‘한’(韓)을 주로 사용했고, 사회주의 진영은 ‘조선’을 주로 사용했다면서(許烈, 2004: 353) 조선과 조선민주공화국 및 조선인민민주공화국, 대한과 대한민국을 모두 국호로 보았다(許烈, 2004: 356-364).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완범(李完範) 교수(한국정치사)는 남북 양측 간에 민국과 인민공화국 간의 국체 논쟁과 조선과 대한의 국호 논쟁이 잠복해 있음에 유의하였는데, 논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국호로 규정하면서도 아울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분열된 두 정부로 보았고, 또한 ‘대한’과 ‘조선’을 대립된 국호로 보는(李完範, 2008) 등 일관성을 잃었다. 즉 그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이 국가의 명칭인지 정부의 명칭인지 제대로 이해하

지 못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3.1운동으로 상하이에서 탄생한 임시정부의 국호로 처음 등장했다고 하면서 1919년 4월과 1948년 5-7월 국호 제정 과정 및 논쟁을 소개했다.

1948년 8월 15일을 정부수립일로 보는 단국대 한시준(韓詩俊) 교수(한국독립운동사) 역시 정부와 국가를 혼동하였다. 그는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로 수립한 정부였다.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주권·영토라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임시’로 수립한 것이고, 독립을 쟁취한 후 ‘정식’으로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고(韓詩俊, 2008: 240) 주장했다. 그는 또 “한민족은 5,000년 가까이 역사를 유지해오면서 여러 번 국가를 수립하였지만, 똑같은 이름을 사용한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데 1919년과 1948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고(강조점은 인용자. 韓詩俊, 2008: 241) 하였는데, “여러 번 국가”와 “두 차례 대한민국 정부”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즉, 과거 세워졌던 신라, 고구려, 백제, 고려, 조선은 ‘국가’이고 대한민국은 ‘정부’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한시준은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한 직후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 즉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다.”라고(韓詩俊, 2008: 238) 하여 “국호 = 대한민국 =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등식을 제시했는데, 이 역시 국호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호칭인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호칭인지 구별하지 못한 결과이다.

부경대 사학과 신명호(申明鎬) 교수(조선후기사)는 승계론 입장에서 “이처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는 광복 후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열망 속에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의 중심점이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의식에서 채택되었다.”고(申明鎬, 2011: 220) 주장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정구복(鄭求福) 명예교수(조선전기사)는 조동걸 교수가 근대 국민국가 성립 후에는 국명에 국체(國體) 또는 정체(政體)를 함께 나타낸 국호가 발생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호란 정식명칭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鄭求福, 2013: 312) 오해하고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지증마립간 4년」 조의 기사에 국명과 국호가 함께 나온 사실에 근거하여 “국명은 국호보다 개념이 일반적이고 넓지만 정식으로 정한 이름이 국호”라고 하면서 “엄격히 말하면 전근대의 국가나 왕조의 이름은 국호가 있었을 뿐이다. 분명한 사실은 나라가 건국되면 전통시대나 현재까지도 나라이름을 국호라 칭하였다는 사실이다. 전통시대 역사서에서 국호를 무엇으로 했다고 나오지 국명을 무엇으로 정했다고 하는 기록은 찾기 어렵다.”고(鄭求福, 2013: 312) 하여 ‘역사적인’ 이해에 머물렀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명을 조선, 고려, 대한(韓)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 이 국호들이 여러 번 반복하여 사용되었다는 의미와 동시에 역사계승의식을 가졌다는 점을 들고 있다.”고(鄭求福, 2013: 313) 하여 국명과 국호를 혼동하였고, “나라 이름을 정할 때에는 국호라는 용어를 한국과 중국, 일본의 옛 역사기록에서는 오랫동안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왔다.”고(鄭求福, 2013: 312) 주장했다. 그는 또 조선, 고려, 대한 등 정식 명칭은 국호이고, 해동(海東), 동국(東國), 대동(大東), 청구(靑丘) 등 비정식 명칭은 국명이라고 주장하였다(鄭求福, 2013: 324). 그는 영문초록에서 국호는 country name으로, 국명은 nation name으로 표기하였는데, 이 역시 국명과 국호, 국가 명칭과 정부 명칭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과 조선이라는 이름 중 한 글자를 따서 한조 또는 조한 이름 뒤에 연

방국가나 민주공화국이라 붙"인 남북통일 국가의 국호를 제안했다(鄭求福, 2013: 327).

한편, 서양정치사상 전공자인 동국대 황태연(黃台淵) 교수는 '대한민국'(Daehanmingook)을 국호(country name)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국호의 기원은 대한제국기 일간신문들에서 전통적 '민국'과 대한제국의 '대한'을 결합하여 익명적으로 집단창제한 '대한민국'이다."라고(黃台淵, 2015: 82) 특이한 주장을 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국체'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기에 계몽전제정(군주정)을 '정체'로 택했으나, 신한민국·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서 명시된 대로 민주공화정을 '정체'로 택했다."고(黃台淵, 2015: 83)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본인의 실토대로 영자 표현 'Republic of Korea(ROK)'가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에 그는 '대한민국'의 영자 표현을 'Nation State of Great Korea'로 제시하였다(黃台淵, 2015: 83). 이러한 표현은 그가 제시한 '대한민국'은 국호와 국명을 구별할 경우 국명에 해당하게 된다. 다시 말해, 대한제국이나 현재의 대한민국의 영자 표현은 모두 그가 밝힌 '대한민국'의 영자 표현과 같아진다. 이러한 주장은 통시적이고 독창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국호와 국명, 정부 명칭과 국가 명칭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는 거리가 멀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교양교육대학) 윤명철(尹明喆) 교수(한국고대사)는 '한국' 국호의 어원과 의미를 분석하면서 국호를 영어로 national name, country name 및 title of nation 등으로 혼용했다(윤명철, 2017: 14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의 모든 한국 학자들에게 국호와 국명에 대한 차별적이고 일관된 이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호와 국명의 차이를 인식하는 듯했던 국민대 조동걸 교수마저 전통시대의 국호와 국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인식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러한 혼선은 아무래도 전통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통시적인 이해, 국가 명칭과 정부 명칭, 그리고 국가건립과 정부수립에 대한 정치적인 이해와 국제법적인 이해가 부족한 때문으로 보인다.

4. 국명 및 국호의 정명과 파생 문제들

1) 동아시아 학계의 국명 및 국호 이해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오제본기」(五帝本紀)는 “황제로부터 순·우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이 같으나 국호를 달리하여 밝은 덕을 드러냈다.”(自黃帝至舜、禹, 皆同姓而異其國號, 以章明德.)고 했다. 이에 따라 황제(黃帝) 정권의 국호는 유웅(有熊), 전욱(顓頊) 정권의 국호는 고양(高陽), 제곡(帝嚳) 정권의 국호는 고신(高辛), 요(堯) 정권의 국호는 도당(陶唐), 순(舜) 정권의 국호는 유우(有虞), 우(禹) 정권의 국호는 하후(夏后), 설(契)의 국호는 상(商), 기(棄)의 국호는 주(周)였다. 그 이후 중국사에서 국호는 역대 조대의 명칭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정되었다. 이와 달리 국명(國名)은 춘추전국시대 제후국의 이름을 가리킨¹⁾ 뒤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춘추전국시대까지 국호는 중앙정권의 이름을

1) “霍者, 國名也. 武王封弟叔處於霍, 後世晉獻公滅霍公, 後世爲庶民, 往來居平陽.” 『史記』 「三代世表」.

가리켰고, 국명은 제후국의 이름을 가리켰다. 진나라 통일 이후 중앙정권이든 분열정권이든 정권 또는 왕조의 명칭은 모두 국호로 통일되었고, 국호는 역성혁명(易姓革命) 또는 역족혁명(易族革命)에 의해 늘 바뀔 수 있는 것이었다. 종번제도 체제하의 번속국의 명칭도 모두 국호로 통일되었다. 중주국으로부터 번속국 취급을 받았던 전통시대 한국과 일본 및 월남도 내부적으로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에서 ‘중국’(中國)은 춘추시대에 처음으로 ‘사방’(四方)에 상대되는 지리적 개념으로 나타나(“民亦勞止, 汙可小康. 惠此中國, 以綏四方.” 『詩』 「民勞」) 사용되다가 청대 말기 국가의 ‘국명’(國名)으로 변화되었다. 예를 들어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Treaty of Nerchinsk, 尼布楚條約)에서 ‘중국’(中國, la: Sinici, 滿: Dulimbai Gurun = 中央之國, ru: X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이 청의 국명으로 등장했다.

1911년 12월 3일 통과된 「중화민국임시정부조직대강」(中華民國臨時政府組織大綱) 본문에 국호가 언급되지 않은 채 1912년 1월 1일 ‘중화민국임시정부’가 성립되었고 그 뒤 3월 11일부터 시행된 「중화민국임시약법」(中華民國臨時約法)에 정체(政體)가 첨가된 ‘중화민국’이 국호로 명기되었다. 이 ‘중화민국’ 중앙정부는 1949년 12월 8일 국제법적으로 아직도 지위가 미정 상태인 대만으로 이전되었다. 한편, 중국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1949년 9월 29일 통과시킨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은 그동안 건립되었거나 제기되었던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중화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중화소비에트인민공화국’, ‘중화민주공화국’, ‘중화인민민주공화국’, ‘중화인민민주국’, ‘중화연방민주국’, ‘중화연방공화국’, ‘중화민주공화국연방’ 등을 배제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국호로 정하였고, 모택동은 이에 근거하여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그 이후 중화민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 어느 일방도 ‘중국’을 국명이라고 규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정부가 ‘중국’의 대표라고 주장하였고, 1971년 10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을 대신하여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유엔 조직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대표가 되어 기존 회원국 ‘중국’(中國, China, Chine, К и т а й)을 대표하게 되었다.

현재 동아시아 한중일 3국의 헌법(「대한민국헌법」,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일본국헌법」) 어디에도 ‘국호’나 ‘국명’이란 어휘가 없다.

동아시아 학계에서 국명과 국명에 국체 또는 정체를 부가한 국호를 제대로 구분한 사람은 일본 지리학자 이노마 슈사부로(猪間收三郎, 1940), 한국 국민대 조동걸(趙東杰) 명예교수(2003) 및 중국 하문대(廈門大) 진동(陳動) 교수(2006) 등 극히 일부이다. 세 학자는 서로 아무런 인용 관계가 없이 독자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일치된 논리를 갖고 있다. 조동걸 교수의 견해는 앞서 소개하여 생략하기로 한다.

일본 지리학자 이노마 슈사부로(猪間收三郎)에 따르면 국호(國號)는 그 나라가 제정한 공식 칭호로서 혁명을 계기로 이를 바꾸면 상대국이 승인하여 외교문서에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 지리학도가 국명을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국명은 대체로 지명이며 종종 인종의 이름이기도 하다면서 본국인이 명명하는 것도 있고 타국인이 불러 관용화된 것도 있다고 한다. 국명은 국호와 일치하기도 하고 전혀 다를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국호는 그 나라에서 결정하여 그 나라에서 사용하지만 타국에서는 공문서 외의 사용 여부는 임의이다.”, “국명은 타국에서 적당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본국인의 승인 여부는 관계없다.”, “요컨대 국호는 자칭이고, 국명은 타칭이라 해도 된다.”고(猪間收三郎, 1940: 47) 하였다.

하문대(廈門大) 진동(陳動) 교수(법학)는 국명은 국가의 이름(名字)이고 국호는 국가의 칭호로서, 국명이 국가를 대표하고 국호는 다만 정부가 국가를 위해 지은 관방의 칭호일 뿐으로서 특정 시기에 국가를 대표하지만 대표하는 것은 주로 정부라고 한다(陳動, 2006: 26). 그에 따르면 국명은 지속적인 것이고 국호는 한시적이며, 국명은 유래가 깊은 이름이고 국호는 해당 정부가 스스로 지은 잠정적인 이름이다.

진동 교수의 의견을 좀 더 보기로 한다. 그에 따르면 국명은 해당 국가의 지리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단어이며, 국호는 국가기관 또는 통치권을 장악한 기관인 넓은 의미의 정부(government)가 국가를 위해 지은 관방 칭호이다(陳動: 2006: 27). 유엔 회원국 중 일본과 같이 극히 일부 국가만이 영문 국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국호 중 가장 일반적인 형식은 연방(United), 왕국(Kingdom), 민주(Democratic), 공화(Republic) 등 국가 구조형식과 국가 관리형식(정체)을 명기한 것이다. 그 외에 종교(예: Islamic), 민족(Arab), 이데올로기(Socialist) 등 어휘를 붙이기도 한다. 아무튼 국호는 핵심적이고 기초가 되는 국명에 정부의 특징을 설명하는 수식 부분이 결합된 것이다(陳動, 2006: 27).

진동에 따르면, 국명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인민의 명칭을 결정하며, 영토의 범위를 결정하며, 정부 명칭의 핵심이 되며, 주권 독립을 상징한다. 국명은 세 가지 의의를 지닌다(陳動, 2006: 27-30). 첫째, 국명은 영토 범위를 알리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국명은 유일하고 배타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국가의 분열·분리·합병·소멸 등의 현상에 따라 변화한다. 둘째, 국명은 민족 독립을 알리는 의미를 지닌다. 민족 독립 후 식민이나 침략 의미를 지닌 옛 지명과 국명을 교체하여 새로운 국명을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국명은 각 민족의 총칭(統稱)이며 전체 주민의 총칭이 된다. 셋째, 국명은 국가주권을 알리는 의미를 지닌다. 국명에는 대외적으로 주권이 독립되었음을 반영하며, 대내적으로는 유일의 최고 권위를 부여하여 이에 대립하여 할거하는 지방성 정부의 존재를 반영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정부가 국가를 위해 붙이는 공식 호칭으로 정부를 대표하는 국호(國號)는 첫째 특정 시기에 국가의 칭호가 되어 정부가 대내외에서 국가의 대표가 되거나 국가행위인 주권 행사자일 때 국가의 호칭이 된다. 둘째 국호는 정부(정권)가 비정상적으로 교체될 때 바뀔 수 있다. 셋째 국호의 변경이 국가의 국제인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부(정권)가 어떻게 바뀌든 국호가 어떻게 변경되든 국제법상 하나의 국가로 본다는 것이다(陳動, 2006: 30-31).

이와 같은 이해를 통해 국명(國名, national name)은 국가의 정식 명칭이고, 국호(國號, title of a state, name of country, country name)는 국명에 국가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정부(government) 또는 정체의 명칭이 가미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명은 일상생활에서 사람의 성명에 비유되고, 국호는 성명 외의 호(號)에 비견된다. 따라서 국명은 변하지 않고(않아야 하고), 국호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명과 국호를 구별하여 이해하면 다음의 문제들을 보다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

- 조선왕국과 대한제국: 대한제국은 조선왕국의 무엇을 단절하고 무엇을 승계하였는가? 대한제국은 국가인가 정부인가?
- 대한제국과 식민지 조선: 대한제국의 식민화는 국가의 소멸인가 정부의 소멸인가? 일제강점시대에 한민족의 국가는 멸망하였는가?
- 식민지 조선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식민지 조선의 백성(주민)들을 대표하는가?
-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은 (임시)정부수립인가 아니면 국가건립인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제승인을 받았는가?
-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을 승계하였는가?
-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을 이은 것인가? 그렇다면 이는 국가승계인가 정부승계인가?
- 대한민국정부: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은 정부수립인가 아니면 국가건립인가?
-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후자는 반란단체인가 합법정부인가? 남북은 분단 국가(정부)인가 분열국가(정부)인가, 남북이 유엔에 가입한 정의는 국가 명칭인가(국명) 정부 명칭(국호)인가? 한민족의 역사에서 남북 중 누가 정통성이 높은가?
- 통일 한국: 통일 한국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 통일 한국의 국명과 국호는 무엇이어야 할까? 통일 한국은 기존의 어느 주체를 정통으로 승계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국명과 국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법상의 국가승계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III. 국가승계 문제로 본 ‘대한민국’의 정체(正體)

사람들은 과거 한반도 120여 년을 조선 - 대한제국(1897.10.12. ~ 1910.8.29.) - 일제강점 식민지(1910.8.29. ~ 1945.8.15.) - 미소군 점령지(1945.8.15. ~ 1948.9.9.) - 분열(대한민국(1948.8.1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948.9.9.))이라는 굴곡의 역사로 보기도 하고, 조선 - 대한제국 - 대한민국임시정부(1919.4.13. ~ 1948.8.15.) - 분열이라는 또 다른 굴곡의 역사로 보기도 한다. 이 가운데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의 전환은 전통적인 동아시아질서로부터 현대적인 국제법질서로의 편입으로서 이견 없이 정당한 승계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두 납득할 만한 정설이 없다.

여기서 각 실체의 승계를 보는 이유는 각 실체 사이의 승계가 국가승계인가 정부승계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각 실체의 관계를 승계가 아닌 단절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신생) 국가건립과 국가분열 등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기존의 정설은 인용하고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대한민국’의 정체를 해명하고자 한다.

1. 국가건립과 국가승계, 그리고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

중국 고대(사)에서 ‘건국’(建國)이란 개념은 ‘국가의 건립’이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 서기 8년 신(新) 왕조를 창업한 왕망(王莽)은 연호를 ‘시건국’(始建國, 9-13년)이라 했고, 북위 시조 탁발십익건(拓跋什翼犍)은 연호를 건국(建國, 338-376년)이라 했다. 또한 개국(開國)은 제후국을 건립하거나 새로운 왕조를 여는 것을 의미하였다. 즉 전통시대 건국이나 개국은 모두 새로운 왕조나 정권을 건립하는 것을 의미하였고, 오늘날 국제법에서의 건국 개념과는 전혀 달랐다. 이는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전통적인 ‘건국’과 ‘개국’ 개념이 현대의 ‘건국’(nation building) 개념과 혼동되어 우리나라의 ‘건국’ 연도가 1919년이나 1948년이나에 대한 논쟁, ‘대한민국’이 정부 명칭이나 국가 명칭이나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게 되었다.

현대 국제법에 따르면 국가성립 또는 국가건립, 즉 건국(建國)에는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무주(無主) 지역에서 신 국가가 형성되는 경우, 국가의 일부(주로 식민지)가 독립하여 신 국가를 건설하는 경우, 하나의 국가가 분열하여 복수의 신 국가를 형성하는 경우, 복수의 국가가 결합하여 하나의 신 국가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李丙朝·李仲範, 2008: 118-119). 다른 학자는 국가의 출현 방법으로 신생독립국(newly independent state), 합병(merger), 분리독립(secession), 분열(dissolution, disintegration)을 들기도 한다(김대순, 2019: 432)

그리고 『오픈하임 국제법: 평시법』에 따르면 국가승계(succession of states)는 한 국가가 국제인격(international person)을 상실하거나 일부 영토를 상실했을 때 그의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국가(일국 또는 수개 국)에 이양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가승계를 야기한 국가영토 변경 상황은 일반적으로 영토 취득과 영토 상실 두 가지이며, 자연작용 외의 영토 취득 방식으로는 할양, 점령, 멸망 및 시효 등이 있고, 영토 주권 상실 방식으로는 할양, 포기, 멸망, 시효 및 반란으로 인한 분리 등이 있다(Jennings, R. and Watts, A., ed., 1996: 208-237). 한편, 1978년의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Property, Archives and Debts, 재산승계협약) 제14-18조는 국가승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영토 일부의 이전(transfer of part or parts of the territory of a state), 신생독립국(newly independent state), 국가통일(uniting of states), 분리(separation of part or parts of the territory of a state), 분열(dissolution of a state) 등 다섯 가지를 들었다(United Nations, 2005.). 그 외에 Glahn과 Taulbee는 국가승계의 범주를 3가지를 들고 있다: 영토상의 독립 달성(다른 국가에 의한 주권보호, 위임 mandate, 신탁통치 및 다른 형태의 피지배로부터); 국가 지위의 상실(다른 국가에 의한 강제합병annexation, 흡수합병merger, 보호령 부과); 다른 국가에의 영토 할양(cession)에 따른 주권 변화. 첫째 범주의 조약은 전임국과 신생국 간의 승계협정(devolution agreement)으로 불리고, 둘째 범주의 조약은 승계국의 국내법 또는 당사국 간의 합병전 협정(premerger agreement)이라 불린다. 셋째 범주에서는 승계국이 사라진 전임국의 권리의무의 운명을 결정한다(Glahn and Taulbee, 2007: 172-173).

국제법에서 ‘국가의 동일성(identity)’이란 “국가의 구성요소에 관한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가를 소멸시키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동일한 국제법 주체로 인정되는 것”이다(朴培根, 2006: 253). 그리고 ‘국가의 계속성(continuity)’은 ‘국가의 동일성’과 호환적으로 사용되면서 “시계열 속에서 파악한 국가의 동일성”(K. Marek)이라거나 “국가가 일시적으로 소멸하는 일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적 면모를 가지는 국가가 다시 수립된 경우에는 ‘동일한’ 국가이다”라는(J. Crawford, 2006; 朴培根, 2006: 254 재인용) 시간성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된다.

많은 국제법 학자들은 1933년 「몬테비데오협약」(Montevideo Conven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States) 제1조에 규정된 국가의 자격(qualifications) 중 외교능력(capacity to enter into relations with the other states)을 제외하고 주로 영구한 주민(a permanent population, 국민), 명확한 영역(a defined territory, 영토) 및 정부(government) 등 세 가지로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을 논한다(朴培根, 2003: 81-82). 이 중 우리의 경우 일제강점시대는 정부의 문제가 관련된다. 합헌적인 방법에 의한 정부의 변경이나 국내법 질서의 변경은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혁명 또는 쿠데타 등 비합헌적인 방법에 의한 정부의 변경이나 국내법 질서의 변경도 국민과 영토가 동일하면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Grotius이래 “정부의 형태가 변하더라도 국가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forma regiminis mutata non mutatur ipsa civitas)는 국제법 원칙이 확립되어왔다. 한편, 위법화된 침략과 정복 사이의 법적 상태인 군사점령은 조약의 체결이나 정복과 같은 별개의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는 주권의 이양이나 변동을 초래할 수 없다고 한다(朴培根, 2006: 262). “‘실효적 정부’의 존재에 일시적인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에 의하여 국가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朴培根, 2003: 83), “영토가 외국의 전시점령 하에 놓임으로써 외국으로 탈출한 정부가 실효적인 통치를 행할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에 의하여 국가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朴培根, 2003: 83), “망명정부가 실효적 통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실효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국가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망명정부가 반드시 합헌적인 정부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朴培根, 2003: 83) 한다.

한편, 정부승계는 동일한 국가가 계속 존재하는 상황에서 혁명이나 정변으로 인해 정권이 변동되어 그 국가를 대표하는 옛 정부가 새 정부로 바뀌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이양을 가리킨다. 단순한 혁명이나 정변에 따른 국내법의 연속성은 중단될 수 있지만 국제법의 연속성은 그렇지 않다. 국가를 국제적으로 대표하는 정부는 정부 형태가 군주국에서 공화국으로 또는 공화국에서 독재국으로 변경될 수는 있으나, 타국에 병합되거나 일개 이상으로 분열되어 소멸되지 않는 한 국가의 동일성은 유지된다는 것이 국제법의 일반적인 이해이다.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이래 “정부의 형태가 변경되어도 그것에 의해서 국가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국제법에서 오랫동안 인정된 원칙이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동일성’ 원칙이다.

부산대 박배근(朴培根) 교수(국제해양법)의 말대로 “국제사회의 현실은 반드시 기존의 국제법이 규율하기 적합한 방식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국제법에 비추어 모순 없이 이

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생하지도 않는다.”고 본다. 또한 “기존의 국제법으로써 규율하기 어렵고 기존의 국제법적 틀 속에서 이해하기 힘든 현실은 실은 새로운 국제법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실이 선행하고 국제법이 뒤를 따르는 경우이다.”(朴培根, 2006: 274).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이 국제법의 규정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가장 적합한 해석과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본다.

한편, 중국 학자들도 청제국을 이은 중화민국 성립에 대한 건국(建國)과 건정(建政) 담론을 전개한 바 있다(吳杰, 2014: 123 註2, 123-124). 중국 화중과기대학(華中科技大學) 법학원 강사 양양(楊昂)은 “1912년 중화민국의 ‘건국’이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은 실제로는 모두 ‘건정’(建政, 정부 건립)으로서 그 실질은 중국을 건립한 ‘새로운 정권’이며 중국의 ‘새로운 정부의 건립’이지 「청국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난 ‘중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국가」는 아니다.”라고(楊昂, 2011: 10)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청국과 중화민국의 관계를 국제법상의 정부승계 문제라고 본 것이다. 또한 1949년 10월 1일 모택동이 천안문 문루에 올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가 오늘 성립되었다”(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今天成立了)고 선포한 것도 국가 건립 즉 건국이 아닌 정부승계를 명백히 밝힌 것이다. 당시 사용된 행사 명칭인 ‘개국전례’(開國典禮)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성립 행사를 의미할 뿐이다(胡大牛, 2010: 163).

이러한 국가건립과 국가승계에 대한 국제법적 이해를 전제로 그동안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에서 본 ‘대한민국’

1905년 을사보호조약, 1907년의 정미7조약 및 1910년의 한일합병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대한제국이란 국가가 소멸되었다고 상정한다면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대한민국의 법통(legal legitimacy) 및 정통성(legitimate succession)을 논할 여지가 없어지며, 또한 1948년의 대한민국은 조선,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단절된 하나의 신생국가가 된다. 그렇게 되면 민족적 정체성(national identity)도 상실되고 문화의 전통성도 상실되고 나아가 민족사의 소멸로 이어진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이론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1)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동일성과 계속성

국제법과 소원한 좌파 성향의 전남대 김상봉(金相奉) 교수(철학)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뜻을 역사학의 한계 속에서 해명할 수 없듯이 법학이나 정치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나 정부의 개념을 통해서도 온전히 해명할 수 없다고(金相奉, 2010: 33-34) 했다.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제국주의 시대가 낳은 일탈로서 역사적 에피소드”로 보고 ‘역사철학’을 동원하여 해결하려 했다.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식민지 조선이란 국가에 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귀속하는 정부였고(金相奉, 2010: 33-34), 아울러 수립했다고 선포한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그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국가였으나 미래에 끝내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에서 정부라는 이름을 누릴 수 있고,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金相奉, 2010: 39) 이중적 존재라고 한다. 그는 또 식민지 조선과 대한민국이라는 두 개의 국가가 모두 같이 귀속하는 공동체를 전제하면 국가의 단절과 무관하게 나름의 연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서 그 공동체를 민족 또는 겨례로 규정했다(金相奉, 2010: 46). 이에 기초하여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 수많은 ‘국가’들이 있어왔지만 그것을 모두 같은 우리‘나라’의 역사로 보면서 “하나의 나라가 여럿의 국가들로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나타난 것이 한반도에서 국가들의 역사였다고 한다(金相奉, 2010: 47). 그는 나라의 연속성을 민족 또는 겨례 공동체에 근거하고, 역대의 여러 왕조 및 정권을 국가로 규정하고 이들의 역사를 ‘나라’의 역사로 보았다(金相奉, 2010: 48). 김상봉 교수의 ‘역사철학’과 결론은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만 국명과 국호,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 등 국제법적인 이해가 부족한 분석으로 흔쾌히 동의하기 어렵다.

아주대 이헌환(李憲煥) 교수(법학)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관계에 대해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통성과 규범적 국가성이 대한제국으로 이전된 것”이며, “대한제국은 명백히 조선을 승계한 국가인 것이다”라고(李憲煥, 2010: 11) 단정하였다. 이헌환 교수는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과 1910년 병합조약은 불성립 내지 부존재인 무효라고 하면서(李憲煥, 2010: 11-13) “비록 1910년 병합에 의하여 대한제국이 사실상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말 그대로 사실상의 소멸일 뿐, 언제든지 그 국가성이 전면에 드러나 다시 사실상의 강점 상태를 극복하고 국권을 회복한다면, 이는 마땅히 이전의 국가성을 회복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사실상 소멸된 후 새로이 창설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李憲煥, 2010: 14) 하였다. 그는 나아가 “불법이자 무효인 조약에 의해 사실상 강점당한 대한제국은 비록 현실에서 강점된 지역과 인민들에 대한 지배권을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규범적 국가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李憲煥, 2010: 14) 하였다. 그는 또한 강점 후 9년 만에 대한제국을 승계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등장하여 대한제국의 정통성과 규범적 국가성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이전되었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헌환 교수의 이러한 해석은 겉으로는 합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역시 국가와 정부를 혼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제국정부와 대한민국임시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관계가 부정될 수 있지만, 임시정부 헌법 제5조의 황실존중 조항에 근거하면 그 정통성이 헌법적으로 계승되었다고(金明基·劉夏榮, 1993:9) 볼 수 있다. 김명기·유하영(金明基·劉夏榮)에 따르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제한받은 국가로서 조선과 동일성을 갖는 국가였고, 그리고 1919년의 대한민국도 대한제국과 동일성을 갖는 국가”였고 “다만 정부만이 변경되어 온 것”이다(金明基·劉夏榮, 1993: 12). 그리고 “1905년·1907년·1910년에 한일간에 체결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조약은 조약의 체결권자에게 강박을 가해 체결된 것으로 오늘의 국제법(1945년 「국제연합헌장」, 1945년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1항 제4호, 1945년 Draft Convention of the Harvard Research on Treaties 제32조, 1965년 12월 21일 국제연합 총회결의, 1969년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25조 -필자)에 의해서는 물론이고 당시의 국제법(1919년 「국제연맹규약」, 1928년 「부전조약」, 1932년 1월 7일 Stimson Doctrine, 1932년 3월 11일 국제연맹 총회결의 -필자)에 의해서도 이들 조약은 국제법상 무효”였고, 이는 결국 “1965년의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 의해 확인·선언되었다.”는(金明基·劉夏榮, 1993: 16) 것이 일

반적인 이해이다.²⁾

이와 같이 을사조약과 병합조약의 불성립 내지 부존재는 국가의 소멸과 성립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보다 정부의 붕괴(소멸)와 수립의 근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일본 강점시대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로서 대한제국이 일본에 완전 흡수되어 일본의 지방정부가 되어 일본의 법이 조선에 적용되어 조선인이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상태는 아니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제국 정부의 존재만 상실되었지 국가로서의 위치와 존재는 상실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럼 점에서 정부로서의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승계된다. 전제군주제 정부로부터 민주공화제 정부로의 승계인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한민국 건국설은 성립되기 어렵다.

2)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승인과 국가 동일성 및 계속성

일반적인 망명정부는 “타국에 의하여 점령되었거나, 국내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본국정부의 수뇌부가 외국에 망명하여 그곳에서 정부를 조직하고, 국권회복을 위한 요구를 계속 주장하며, 오랫동안 그들의 행동에 의하여 실효적 통치를 회복키 위하여 노력하면서 동시에 망명국(주재국) 또는 몇몇의 국가들에 의하여 정통정부로 승인되는 정권”을 의미한다(H. J. Schlochauer, 1960; S. 498; 金榮秀, 1980: 17 재인용).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이와 달리 특이한 형태의 망명정부(government in exile, absentee government, Exilregierung)로 이해되고 있다.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金相奉) 교수(서양근대철학)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기존의 국가 내의 정부도 아니고 이전의 국가를 승계한 정부도 아니며, 현존하는 국가가 전쟁이나 다른 특수한 조건 속에서 국가의 경계 밖에 세운 망명정부도 아니”라고(김상봉, 2010: 31)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국가 없는 정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국가 속의 국가라고 볼 수도 있다”고(金相奉, 2010: 31) 했다. 그에 따르면 임시정부가 창립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국가의 구성요소 중 주민과 영토는 당시 식민지 조선, 즉 일본이라는 국가 속에 건립된 국가였다는 것이다. 김상봉의 문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합법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과 아울러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창립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제적인 승인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표방한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무런 합법성도 얻지 못한 ‘국가 속의 국가’였”다고(金相奉, 2010: 33)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도 국가이고 대한민국도 국가라는 김상봉의 양시론(兩是論)은 국가의 승계와 연속성을 해명하려는 시도로는 가치가 높지만, 국가와 정부 개념의 혼동에서 출발한 논리는 학술적인 가치를 확보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본국의 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외국으로 망명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국가질서였던 대한제국 정부를 승계한다거나 회복하려하지 않았고,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

2) 강릉대 나인균 교수는 시제법(時際法)에 따라 당시의 법을 근거로 1919년 합방조약의 국제법적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합방조약의 효력을 인정한 반면(羅仁均, 1999: 135-136), 김명기·유하영도 마찬가지로 행위 시의 법에 따라 판단해도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1905년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과의 1910년의 조약체결은 결국 일본제국과 일본제국 간의 조약체결이므로 무효라고 한다(金明基·劉夏榮, 1993: 15-16).

구하고 정식으로 세계 여러 국가들에 의한 우리 임시정부의 승인은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金榮秀, 1980: 62) 일반적인 망명정부로 인정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충남대 김영수(金榮秀) 교수(법학)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국제법상의 승인에 관한 이론요건에는 합당치 못한 것이었으나, 형식적으로는 특수한 범주에 속하는 망명정부적 성격을 지니는 임시정부라 할 수 있”다고(金榮秀, 1980: 67) 하면서 제6의 K형으로 분류하였고, 그 성격을 “단절된 구본국(舊本國)의 정통(법통)을 회복·계승하는 동시에 타국하에 있는 본국 영토를 광복하려고 임시적인 정부를 형성하는 경우”로(金榮秀, 1980: 21-22 표) 규정하고, 망명(임시)정부의 정통성(legitimacy)을 “구본국(舊本國)의 정통성 희구(希求), 창설적(新생독립국)”에서 찾았다(金榮秀, 1980: 21-22 표).

망명정부에 대한 국제법상의 승인은 일반적으로 국내법상의 합헌성과는 관계없고, 본국의 통치권을 회복하려는 통상의 노력이 계속되는 한 승인으로 인해 국가적 ‘동일성’(identity)과 ‘실효성’(effectiveness)을 승인받는다(金明基·劉夏榮, 1993: 9 재인용).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된 본국의 영토를 회복하려는 ‘통상의 망명정부’의 성격과 식민국의 통치에서 해방 독립하려는 소위 ‘임시정부’의 성격을 가진 특수형태의 망명정부라고 할 수 있다(金明基·劉夏榮, 1993: 9).

이와 같이 김명기·유하영의 말대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비록 일반적인 수준의 국제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본국의 통치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한 특수형태의 망명정부로서 국가적 계속성은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대한민국임시정부 - 대한민국의 동일성과 계속성

표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해방 이후 국내(남북한)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 구상을 1948년 제헌헌법에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당성과 승계권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본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제법상 인정 요건을 문제 삼은 미군정과 국내에 이미 기반을 잡은 정파의 임시정부 배제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상세 내용은 鄭相宇, 2007 참조).

그러나 1948년 5월 31일 초대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이승만(李承晩)은 국회 개회식에서 “이 民國은 기미년 3월 1일에 우리 13道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大韓獨立民主國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불행히 世界大勢에 緣由해서 우리 혁명이 그때에 성공하지 못했으나 우리 愛國男女가 海內外에서 그 정부를 지지하며 많은 생명을 바치고 혈전고투하여 이 정신만을 지켜온 것이니 오늘 여기에서 열리는 국회는, 즉 대한국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己未年에 서울에서 樹立된 民國 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만의 民國의 復活日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民國年號는 己未年에서 起算할 것이요, 이 국회는 全民族을 대표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되는 民國정부는 완전히 韓國 전체를 대표한 중앙정부임을 공포하는 바입니다.”라고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국민대회의 계승이며, 곧 성립될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계승임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전문에서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명기하였는데, 이 중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가리킨다. 1948년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그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의사와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이는 1960년 제4차 개정헌법까지 유지되다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이 삭제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부정되어오다 1987년 10월 29일에 9차 개정된 현행 헌법 전문에 이르러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金榮秀, 1980: 205-208; 2008; 表明煥, 2007; 張永洙, 2010; 주익중, 2018 등 참조). 여기서의 ‘법통’(法統)이 ‘법적 정통성’을 의미하고, ‘법통 계승’이 ‘정통성의 계승’을 의미할 뿐 “실정헌법질서상 적법성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成樂寅, 2007: 115) 주장하는 것은 그리 의미가 없다고 본다.

한편, 북한은 1948년 9월 3일 헌법 이후 2012년 4월 13일 개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 대한제국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계에서 스스로를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안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또 다른 합법정부임을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4) 대한제국 - 대한민국의 동일성 및 계속성

위의 제헌헌법과 1987년 개정헌법의 규정은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였고, 1948년 8월 15일의 정부수립에 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대한민국과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사이의 동일성 또는 계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나아가 1948년의 대한민국과 대한제국 사이의 동일성 또는 계속성과도 연결된다(朴培根, 2006: 251).

강릉대 나인균(羅仁均) 교수(국제해양법)는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을 부정한다. 그에 따르면 한일합방 당시의 국제법에 근거하면 첫째 1910년의 한일합방은 국제법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카이로 선언에서 연합국이 병합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았고, 둘째, 연합국은 한반도를 아직 자치능력이 없는 식민지로 간주함으로써 전 국가와 동일시되고 중단 없이 존속한 것처럼 간주되는 새로운 국가를 재수립하려(wiedererrichtete) 않았고, 셋째 일본에 의한 대한제국(한반도)의 지속적인 병합은 1910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장기간 어느 국가에 의하여도 부인되지 않아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재수립되었다고 수긍하기 어렵고, 넷째, 한국과 관계를 갖는 국제법 주체가 한국을 대한제국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약에서도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다섯째,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망명정부라면 대한제국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한국과의 동일성도 인정될 수 있지만 연합국과 그 밖의 어느 국가도 입장을 망명정부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한국(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원상회복하여 재수립된 국가에 속하지 않고 북한과 마찬가지로 대한제국과 법적 동일성이 없는 일본으로부터 ‘분리’의 형태에 의한 국가승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羅仁均, 1999: 134-140).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국제법을 기계적으로 도입하여 국가 재수립을 부정하기 위해 국가 재수립에 긍정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대부분 국제법학계로부터 부정되었다. 특히 강원대 김명기(金明基) 교수(법학)는 이미 오래 전에 “1905년·1907년·1910년에 한·일간에 체결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 조약은 조약의 체결권자에게 강박을 가해 체결된 것으로 오늘의 국제법에 의해서는 물론이고 당시의 국제법에 의해서도 이들 조약은 국제법상 무효이다.”라고(金明基, 1980: 148) 단정하였고, 아울러 이는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에 관한 조약」 제2조에 의해 무효임이 확인 선언되었다고 한다(金明基, 1980: 148). 특히 제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민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하다.”는 것은 한국의 정부수립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는 “정부 수립에 의하여 이미 무효인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효력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한다(金明基, 1980: 152). 그는 나아가 “대한민국에 정통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의 현대적 실존체이고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에 의하여 그 존재가 계속되며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은 국제법상 동일한 법인격자로 파악된다.”고(金明基, 1980: 158) 했다. 다만 김명기의 이러한 주장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건너뛰어 1948년의 대한민국이 직접 대한제국을 승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이나 제5차, 7차, 8차 개정헌법 및 현행 헌법의 각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3·1운동과 그 결과로서 임시정부를 정부로 하여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과 계속성을 지닌다는 인식을 보여주고”(朴培根, 2006: 270) 있다는 점에서 정부승계의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법적 동일성에 관한 구체적인 헌법의 규정이나 정부의 입장 표명을 찾기 힘들지만, 한국이 일본과의 국교 수립 과정에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법적 동일성을 주장하였고, 한일합방조약의 무효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또한 대한제국이 가맹한 기구의 회원 자격 회복과 가입한 조약의 효력 확인 조치 등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법적 동일성을 명확히 했고(구체적인 내용은 朴培根, 2006: 270-271; 朴培根, 2004: 63-65), 또한 “임시정부가 정부로서의 ‘실효성’을 구비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권을 탈환하고 실효적 지배를 회복하여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버린 적이 없고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는(朴培根, 2004: 61-62) 점에서 국가의 계속성이 확인된다. 이렇게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국가 동일성과 계속성이 모두 확인되며, 아울러 국가승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박배근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 하나의 한계는 1910년의 대한제국이 1919년의 대한민국으로 변경된 법적 근거에 대한 인식이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시대를 부정하면 대한제국과 1948년 대한민국의 사이의 계속성은 담보되지만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배제될 소지가 있다. 논리적으로 정부의 계속성은 배제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국가적 동일성과 계속성에 집중한다면, “한국을 언제나 ‘외지’로 취급하여 온 ‘식민지 통치’의 실정에 비추어 한국은 일본과는 별개의 민족적·정치적 단위로 존속하였으며, 대한민국과 대한제국 사이의 국가적 동일성을 인정할 근거가,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라는(朴培根, 2006: 273) 판단은 타당하다고 본다.

한국정부는 1986년 8월 4일 대한제국이 1910년 한일 합방이전에 가입한 다자조약 중 현재까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2개의 조약과 관련 1개 조약 등 3건의 다자조약이 현 대한민국에도 효력을 갖는다고 확인하였다. 이 효력 확인은 “대외적으로 한국과 대한제국의 동일성 및 계속성 인정, 대한민국의 정통성확보 등의 효과가 있고 대내적으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최초의 사례”라고(중앙일보, 1986: 2) 평가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대한제국의 승계가 국가승계가 아닌 정부승계라는 것을 말해준다. 서울대 정인섭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한제국 정부의 승계를 1991년 독립한 발트 3국의 사례와 같이 ‘원 국가(original state)로의 복귀’ 또는 ‘구 국가의 재생’이라고 주장하였는데(정인섭, 2018: 609-610) 이 역시 국가의 계속성을 가리키는 것임이 확실하다.

5) 국제법상의 대한민국 정부승인과 남북관계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1948년 대한민국의 문제는 사실 정부수립과 정부승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다. 이에 1948년 대한민국정부의 정부승인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인민, 영역, 통치조직(정부), 국제(외교)관계 설정 권능 등 요소로 구성된 국제법 주체인 국가가 성립되면 그 구성요소의 하나인 통치조직, 즉 정부의 승인이란 문제가 발생한다. “신 국가의 승인은 동시에 신정부의 승인을 포함하고 신정부의 승인은 신국가에 승인을 의미하는 이중성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李丙朝·李仲範, 2008: 132). 그러나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승인은 형식적으로는 정부의 승인이었다(李丙朝·李仲範, 2008: 132).

대한민국은 1948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연합 특별총회 결의 제195호에 근거하여 법적 정통성을 주장해왔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남북 양쪽에서 모두 실시되었다는 억지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괴뢰성을 주장해왔다. 이는 남북 양측이 상대방을 국가가 아닌 정부로 보아 정통의 계승을 자임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안 195호(UN Resolution No.195)에서 언급된 “a lawful government(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는 ‘합법적인 정부(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정부’를 의미하며 따라서 정부승인이자 국가승인은 아니다. 따라서 ‘the Republic of Korea’가 국가 명칭 즉 국명인지 정부 명칭 즉 국호인가에 대해 진일보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헌환은 유엔총회 결의안 195호 중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한국 내에서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는 것은 “자유주의적 합법성을 획득하는 방식에 의한 합법적 정부라는 표현이지 소위 ‘국제법의 분열’(die Aufspaltung des Völkerrechts)에 따른 다른 합법성의 획득방법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李憲煥, 2010: 20) 보았다.

이중에서 1948년 8월 15일 성립된 ‘대한민국’이 국가에 해당하는가는 깊이 분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국가 성립을 선언하면 그대로 국가로 인정된다는 선언적 효과설(declaratory theory)과 기존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국가로 인정

된다는 창설적 효과설(constructive theory), 그리고 절충설 중 어느 설에 의해 국가로 인정되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헌법학에서 남북한의 관계에 대해 국가설, 반국가단체설, 사실상의 정부설, 특수관계설(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서의 성격을 점유한다는 설) 등이 있다(李憲煥, 2010: 23). 그리고 조선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와의 연속성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남북한 정부 각각이 과거의 조선과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정과 현재의 남북한정부와의 사이에 연속성이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는 불연속의 단독정부론(단정론)이 있고, 또한 조선과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와의 연속성을 인정하면서 남북한 공히 각각의 정부만의 정통성 및 합법성을 주장하는 연속의 단독정부론(단정론)이 있고, 그 외에 남북한정부 공히 조선과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공통적으로 승계하고 있다고 보는 연속의 2정부론이 있다(李憲煥, 2010: 23). 첫째의 불연속의 단독정부론은 조선 - 대한제국 - 대한민국임시정부론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한민족의 국가와 민족사를 부정하는, 역사와 단절된 새로운 국가와 민족의 성립을 주장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결여되어있다. 여기서는 둘째 연속의 단독정부론 중에서 연속의 대한민국 단독정부론과 연속의 2정부론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계한 것으로 이미 확인되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헌법 어디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계한다고 표명하지 않았다. 대한제국이나 조선은 물론이다.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제헌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북한에서는 별도의 영토 규정이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이다.”(제103조)라고 규정하여 대한민국 제헌헌법과 간접적으로 같은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1948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국제연합 소총회는 연합국총회결의 제195(III)호를 통해 “한국 인민들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 한정된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적 정부로 선언하였다. 결의안 제2조³⁾ 마지막에 “Korea에서 유일한 그러한 정부”(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는 표현은 Korea에는 당시의 대한민국 정부 외에 추후 또 다른 합법 정부가 존재할 수 또는 수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지만, 제2조에서 언급된 3가지 정부(a lawful government(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Government,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는 동일한 정부, 즉 “Korea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3)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UN Resolution No.195”, 1948.12.1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호와 국명을 떠나 헌법과 국제사회에서는 한반도에는 하나의 Korea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李根寬, 2009: 159-164). 1948년 유엔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되어 분열된 Korea의 정통정부가 되었다. 그 후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이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명의로 161번째와 160번째로 유엔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남북한의 유엔 가입은 하나의 국명 KOREA로 가입하여 의석을 분점한 것이 아니라 각 정부의 명칭, 즉 국호로 가입한 것이다. 이는 남북한이 서로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한 '정부의 분열'을 의미하지 '국가의 분열'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남북이 서로 외교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통일의 대상으로 삼아 '하나의 국가'라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은 1971년 중화민국을 유엔에서 축출하고 유일한 '중국' 대표가 된 바 있다.⁴⁾ 이는 정부승계에 해당되지만 중화민국이 아직도 17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완전한 승계'에 해당한다.

앞에서 본 연속의 2정부론은 "조선과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승계된 국가성이 현재의 남북한정부의 상위에 존재하고, 그 하부정부로 남북한정부가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이다(李憲煥, 2010: 25).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추구하였던 통일대한민국이라는 규범적 국가 아래에 현재의 남북한 정부가 잠정정부 내지는 과도정부로 존재하며, 두 정부는 통일대한민국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정부라고 인식하는 방법으로 1국가2정부론 혹은 1국가2체제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李憲煥, 2010: 25) 한다.

국제법학이나 헌법학에서는 이러한 이해가 가능함에도 북한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1991년 유엔 가입 때까지 유엔총회로부터 합법정부로 인정받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남북관계는 1국가1합법정부1불법정부론 또는 1국가2체제론(일국양제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1991년 남북한 유엔 가입 이후에는 1국가2정부론 또는 1국가2체제론(일국양제론)으로 볼 수 있다.⁵⁾ 이는 국제법이나 국력의 우월성과 정당성(또는 정통성)을 점유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추진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남북한을 각각 별개의 국가로 보고 연방제나 국가연합이니 하는 통일론이나 북에 의한 흡수통일 또는 "1:1의 동등한 합병으로 인한 새로운 국가의 탄생(fusion)"은(朴基甲, 1996: 126-127) 사실적인 근거나 이론적인 근거가 취약하다.

강원대 김명기(金明基) 교수는 일찍이 정통성론에 근거하여 남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되 정통성은 대한민국에 있으며, 북한정권은 교전단체(belligerency) 또는 반도단체(insurgency)에 불과하며, 국토의 분단은 국제법상 '분열'과 '분리'도 아니며, 북한정권은 불법 점거만 있을 뿐이며, 통일이란 국제법상 '병합'도 '합병'도 아니며 오직 실지회복을 의미할 뿐이라고(金明基, 1980: 160) 설파한 적이 있다. 이러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앞에서 제시한 여러 문제들이(제II장 끝 부분) 해결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한민족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4) 대부분의 중국 학자들은 1949년 10월 1일을 '정부승계' 일로 본다. 王鶴亭, 2009: 33.

5) '일국양제'(一國兩制)는 1983년 6월 26일 '대만독립'을 제어하기 위해 덩소평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서 한반도에 존재하는 '일국양제', 국가승계 및 정부승계 문제 등의 내용이 다르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다음을 참조: 王鶴亭, 2009; 成正, 2009; 范宏云, 2010.

IV. 결론

20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이 열린 다음 날 열린 좌파 역사학계(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의 학술회의(“국가정통론의 동원과 ‘역사전쟁’의 함정”)에서 ‘임정법통론’을 지지하거나 동조했던 좌파 학자들이 “우파의 반공주의적 1948년 건국설과 문재인 정부 및 일부 ‘진보’학계의 ‘임시정부 법통론’에 기반을 둔 1919년 건국설 모두를 두고 ‘서로 다른 기원을 근거로 양자가 벌이는 정통성 경쟁은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역사전쟁’이라고 비판했다.”는(김지훈, 2019) 사실은 긍정적 현상이다. 그러나 그들의 논의나 이해에서 국가와 정부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발견할 수 없는 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한민족(韓民族)의 국가 명칭, 즉 국명(國名)이 아니고 한반도에 존재하는 한민족의 하나의 정부 명칭, 즉 국호(國號)이다. ‘대한민국’은 현재의 정부 명칭으로서, 오래 전부터 존재해온 한민족의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였던 고조선(위만조선 포함) - 삼한(마한·진한·변한) - 삼국(고구려·백제·신라) - 통일신라·발해 - 고려 - 조선 - 대한제국 -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이은 정통 정부이다. 이러한 승계 관계를 본다면 정부(정권)의 변화에 따른 국호의 변경은 발생했지만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은 유지되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바로서야 제3국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고 앞으로 남북통일, 즉 정부통합을 추진할 당위성을 얻게 된다. 따라서 조선을 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정통(僞統, 潤統, 偏統) 정부(정권)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역사의 정통 또는 법통과 정부는 조선 이후에는 대한제국으로 다시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승계되었고 현재에는 대한민국에 귀속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로서의 동일성과 계속성은 부정되지 않았고 부정될 수 없다. 다만, 통치권이 분단되어 일국양부(一國兩府) 또는 일국양제(一國兩制) 상태인 현재, 정통성이 결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결국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 또는 통합의 대상으로 존재할 뿐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1919년 4월 13일, 1948년 8월 15일, 1948년 9월 9일은 모두 건국일이 아니고 정부수립일일 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두 국가 명칭, 즉 국명이 아니고 정부 명칭, 즉 국호일 뿐이다. 『조선통사』(하)도 1949년 9월 9일을 ‘공화국 창건’일이라 하지 ‘공화국 건국’일이라고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계는 중화인민공화국이란 국호를 가진 정부와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진 정부가 ‘하나의 중국(China)’(一個中國)이란 국명을 갖고 서로 정통성 경쟁을 벌이는(一中各表: 一個中國, 各自表述) 것과(成正, 2009) 께를 같이 한다. 다만 정통성 문제에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덧붙이자면 우리나라의 건국일 또는 건국절은 개천절(開天節)인 10월 1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좌파 성향의 공주대 역사교육과 지수결(池秀傑) 교수는 “건국절 제정을 찬성하

는 측이건 반대하는 측이건 정통론 혹은 색깔론 프레임(Frame)을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지수결, 2016: 17) 있으며, “단군조선 이래 한반도에는 우리 민족이 세운 여러 형태의 국가가 존재했다”고(지수결, 2016: 22) 지적하여 단군조선을 ‘우리나라’ 혹은 ‘조국’의 시원으로 보고 있다. 지수결 교수가 우리 국가의 기원을 단군조선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그가 ‘대한민국’이 국가인지 정부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은 피하지 못했다.

1948년 9월 25일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라는 「연호에관한법률」이 공포된 후 9월 28일 「관보」 6호부터 단기(檀紀) 연호를 사용한 바 있다. 단기 연호와 개천절의 결합으로부터 건국일이나 건국절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천절은 영어로 National foundation day of Korea이다. 이는 다시 번역하면 건국일 또는 건국절이다. 두 개의 건국절이 있을 필요는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일인 10월 1일은 건국절이 아니고 국경절(國慶節)이고 영어로는 National Day이다. 전 세계 160개 국가 중 건국절(National Foundation Day)이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그것도 사실은 10월 1일 개천절을 가리킨다(中國外交部, 2017). 65개 국이 국경일을 쓰고, 34개 국이 독립일을 쓴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백범사상연구소 부소장 최혜성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제대로 된 나라에 건국절이 없다고 걱정하는 것은 “역사의 단절을 우려하기 때문”(최혜성, 2017: 279)이지만, 1919년 4월 13일이나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정한다면 “단군 이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100년도 안 되는 신생독립국가가 되어 버리게 되는”(최혜성, 2017: 280-281) 것은 확실하다.

남은 것은 우리나라의 올바른 국명은 무엇이며, 그 국명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외국어로의 국명은 Korea 또는 Corea라는 점에 이의가 없을 테지만 한국어나 한자로서의 국명은 한, 대한, 한국, 고려 및 조선 등으로 나뉘는 상황이다. 많은 지혜가 필요한 문제이다.

〈참고문헌〉

- 姜圭炯. 2016. “1948년 건국’이라 하지 못할 이유 없다.” 『조선일보』, 2016.8.29., A34.
- 金大淳. 2019. 『국제법론』. 제20판. 서울: 삼영사.
- 金明基. 1980. 『국제법상 남북한의 법적 지위』. 서울: 화학사.
- 金明基·劉夏榮. 1993.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38권 1호(6월).
- 金三雄. 2008. “‘建國節’이 위험한 7가지 이유: 느닷없는 ‘건국절’ 추진 배경이 의심스럽다.” 『오마이뉴스』 (OHMYNEWS), 2008.7.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51387.
- 金相奉. 2010. “국가 속의 국가(Imperium in imperium): 뜻으로 본 대한민국임시정부.” 『철학연구』, 제88집.
- 金榮秀. 1980.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론』. 서울 삼영사.
- 金孝善. 2008. “‘건국절이 위험한 7가지 이유’에 반박(1): 이승만의 건국을 폄하하려는 좌익 세력의 허튼 수작.”(2008.7.31.), 조잡제닷컴, http://chogabje.com/board/view.asp?C_IDX=23907&C_CC=BB.
- 金植鍵외. 2010. 『국제법』. 서울: 박영사.
- 김지훈. 2019. “진보 역사학계 ‘문제인 정부 ‘입정 정통론’은 냉전의식 강화’비판.” 『한겨레신문』, 2019.4.14.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889942.html>.
- 羅仁均. 1999.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은 법적으로 동일한가? 국가의 동일성 내지 계속성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44권 제1호.
- 남윤서·백민경. 2015. “황교안 ‘북한에 국가 정통성 있는 것처럼 왜곡.’” 『중앙일보』, 2015.11.04. <https://news.joins.com/article/18999118>.
- 大韓民國國會圖書館編. 1974. 『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院文書』. 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 大韓民國國會編. 1987. 『제헌국회속기록 1』. 서울: 대한민국국회.
- 獨立紀念館 韓國獨立運動史研究所. 1992. 『島山安昌鎬資料集』, 3.
- 朴基甲. 1996. “일반국제법이론에 비추어 본 남북한간 가능한 국가승계형태론.” 『한림법학 FORUM』, 5(10월).
- 朴明林. 2016. “건국절 논란을 중지하자.” 『중앙일보』, 2016.8.26.
- 朴培根. 2003.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법적 지위와 대한민국의 국가적 동일성(상).” 『법학연구』 (연세대), 제13집 4호.
- 朴培根. 2004.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법적 지위와 대한민국의 국가적 동일성(하).” 『법학연구』 (연세대), 제14집 1호.
- 朴培根. 2006. “국제법상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 『저스티스(JUSTICE)』, 제90호(4월).
- 白奉欽. 1984. “국제법상에서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 『국제법학회논총』, 제29권 2호(12월).
- 徐希慶. 2012.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한국 헌정사 만민공동회에서 제헌까지』. 파주: 창비.
- 徐希慶. 2015.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 정통성 논의: 1948년 건국헌법과 1987년 헌법을 중심으로.” 『법과 정치』, (사)한국정치사상학회·일본정치사상학회 공동 주최 2015 한일정치사상학회 공동학술회의, 2015.12.19., 성균관대학교.(미발행)
- 成樂寅. 2007. 『헌법학』. 파주: 법문사.
- 宋平仁. 2016. “건국절은 없다.” 『동아일보』, 2016.9.7.

- 宋平仁. 2018. “건국 100주년도 건국 70주년도 그만두자.” 『동아일보』, 2018.8.15.
- 申明鎬. 2011. “국호: 국호 속에 담긴 국가의 정체성.” 『한국사를 읽는 12가지 코드』 (파주: 茶山草堂).
- 辛容玉. 2016. “대한민국 제헌헌법과 ‘건국절’ 논란: 헌법 전문과 중앙정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제65호(11월).
- 신준봉·黃台淵. 2015. “‘대한민국’ 네 글자, 1899년 독립신문 논설에 있다.” 『중앙일보』, 2015.12.11., 25.
- 安熙天. 1989. “북방외교정책에 비춘 우리나라 이름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논문집』 (서울교대), 22(2월).
- 梁東安. 1998. “‘건국’을 기념하지 않고 ‘정부수립’을 기념하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한국논단』, 108권(8월).
- 梁東安. 2016. 『대한민국 ‘건국일’과 ‘광복절’ 고찰』. 백년동안, 2016.
- 역사비평편집부. 2008. “‘건국절’ 철회를 촉구하는 역사학계의 성명서.” 『역사비평』, 통권84호(가을).
- 역사학계. 2016. “위기의 대한민국, 현 시국을 바라보는 역사학계의 입장.” 2016.8.22.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608221657001#csidxff857b83c2a56b4a9492b30e0e6338d.
- 柳錫春. 2015. “광복70주년, 건국 논란.” 『조선일보』, 2015.12.21.
- 柳錫春. 2016. “대한민국 건국 = 항일 + 반공.” 『조선일보』, 2016.9.4., A34.
- 柳永益. 2006. “李承晚 國會議長과 大韓民國 憲法 制定.” 『역사학보』, 189(3월).
- 俞鎭午. 1980. 『憲法起草回顧錄』. 서울: 일조각.
- 俞炯錫. 2009. “국가승인이론의 재검토.” 『법학연구』, 제33집(2월).
- 尹明喆. 2017. “‘한국(韓國)’ 국호의 어원과 의미 분석.” 『고조선단국학』, 제37호(12월).
- 廉武雄. 2015.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 누구인가.” 『한겨레신문(韓民族日報)』, 2015.11.27., 30쪽.
- 李根寬. 2009. “1948년 이후 남북한 국가승계의 법적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제16권 1호(6월).
- 李萬烈. 2000.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法統繼承’ 문제.” 『島山思想研究』, 6.
- 李丙朝. 1972. “정부의 변경과 국가의 동일성.” 『새法政』, 제17호(7월). 참고
- 이선민. 2013. 『‘대한민국’ 국호의 탄생』.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李榮薰. 2006.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 『동아일보』, 2006년 7월 31일. <http://news.donga.com/3/all/20060731/8335196/1>.
- 李完範. 2008. “국호 ‘대한민국’의 명명.” 『황해문화』, 2008 가을(9월).
- 李完範. 2009. “건국 기점 논쟁: 1919년설과 1948년설의 양립.” 『현상과 인식』, 제33권 4호(12월).
- 이재훈. 2015. “‘1919년 임시정부 법통’ 헌법 조항 박정희가 삭제했다.” 『한겨레신문』, 2015.1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16275.html.
- 李哲承. 1998. “정부수립 50주년이 아니라 건국 50주년이다.” 『한국논단』, 108권(8월).
- 李忠雨. 2001. “국호 ‘대한민국’.” 『인문학연구』 (關東大), 제4집(2월).
- 李憲煥. 2010.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 헌정의 연속성과 남북한정부의 관계.” 『법학연구』 (全北大), 제31집(12월).
- 林大植. 1993. “일제시기·해방 후 나라이름에 반영된 좌우갈등.” 『역사비평』, 23(여름).
- 張永洙. 2010. “임시정부헌법의 역사적 의미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고려법학』, 제57

- 호(6월).
- 鄭求福. 2013. “우리나라 국호고: 한반도 통일 이후 국호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藏書閣』, 29(2013.4).
- 鄭相宇. 2007.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과 1948년 헌법.” 『법과사회』, 32.
- 鄭印燮. 2018.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제8판. 서울: 박영사.
- 趙東杰. 2003. “국호·국가·국가·국화는 언제, 어떻게 만드는가.”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7집(2003.12).
- 趙庸中. 1990. 『미군정하의 한국정치현장』. 파주: 나남.
- 朱益鍾. 2018.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文 정부, 북한 의식해 슬그머니 ‘건국 100주년’ 주장 후퇴.” 『월간조선』, 2019년 4월호.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904100028>.
- 중앙일보. 1986. 「대한제국 국제조약 효력확인」. 1986.8.5. <https://news Joins.com/article/2062840>.
- 池秀傑. 2016. “건국절 논쟁의 지형 바꾸기.” 『내일을 여는 역사』, 63(9월).
- 崔惠成. 2017. “과연 우리나라에 건국절이 필요한가?” 『철학과 현실』, 통권112호(3월).
- 表明煥. 2007.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헌법이념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37:1.
- 韓詩俊. 2008. “대한민국 ‘건국60년’, 그 역사적 모순과 왜곡.”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6집(9월).
- 韓永愚. 2008. “대한민국 건국60년의 인과적 이해.”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 학술회의: 대한민국 건국 60년, 과거-현재-미래』, 국사편찬위원회·동아일보 공동 주최, 2008.7.11.
- 許烈. 2004. “건국과정에서의 국호논쟁에 대한 분석.” 『한국민족문화』(부산대), 제24호(2004.10).
- 黃台淵. 2015. “‘대한민국’ 국호의 기원과 의미.” 『정치사상연구』, 제21집 1호(2015.5).
- 丘宏達. 2017. 『現代國際法』. 修訂三版. 臺北: 三民書局.
- 范宏雲. 2010. 「國際法的繼承理論與兩岸關係」. 『特區實踐與理論』, 2010:3.
- 成正. 2009. 「從國際法‘主權、承認、繼承’來探討一個中國」. 『重慶社會主義學院學報』, 2009:5.
- 王鶴亭. 2009. 「兩岸政治定位的分歧處理及建議」. 『臺灣研究集刊』, 2009:2.
- 吳杰. 2014. 「傳統‘天下’與現代‘民族國家’的對接: 對《清帝遜位詔書》憲法意義的反思」. 『甘肅政法學院學報』, 2014:1.
- 楊昂. 2011. 「清帝《遜位詔書》再中華民族統一上的法律意義」. 『環球法律評論』, 2011:5.
- 中國外交部. 2017. 「各國國慶日(National Days)」. 2017年 8月 17日 更新. http://www.fmprc.gov.cn/web/fw_673051/lbfw_673061/fgzl_673083/t527088.shtml.
- 陳動. 2006. 「論國名與國號」. 『廈門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6:3.
- 胡大牛. 2010. 「略談‘建國’: 國際法角度的分析」. 『探索』, 2010:1.
- 猪間收三郎. 1940. 「國號と國名」. 『地學雜誌』, 52:7.

- Crawford, James. 2006. *The Creation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lahn, Gerhard von and Taulbee, James Larry. 2007. *Law among Nations: an Introduction to Public International Law*. New York: Pearson/Longman.
- Jennings, R. and Watts, A. 1996.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Vol. I: *Peace*, 9th ed. London: Longman.
- Lee, Soonchun. 2011. "Identity and Continuity of States: The Case of the Balric States and Korea." *Korea University Law Review*, Vol.10:149(Fall).
- Schlochauer, H. J. 1960. Die Exilregierung, in *Wörterbuch des Völkerrecht*, Bd. I.
- United Nations. 2005.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Property, Archives and Debts." http://legal.un.org/ilc/texts/instruments/english/conventions/3_3_1983.pdf.